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범위) 2
 제3조(정의) 2

제2장 공항안전검사관

제4조(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요건) 8
 제5조(교육훈련) 8
 제6조(교육훈련 이력관리) 8
 제7조(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 8
 제8조(공항운영검사팀 구성) 9
 제9조(검사관 등의 의무) 9
 제10조(검사관 등의 권한 등) 9
 제11조(검사의 종류) 9

제3장 공항운영검사

제12조(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12
 제13조(검사방법) 12
 제14조(검사계획의 통보 등) 13
 제15조(긴급조치) 13
 제16조(확인서 등의 청구) 13
 제17조(검사결과 보고) 13
 제18조(검사결과 심의) 13
 제19조(시정명령 등) 14
 제20조(기록유지 등) 14
 제21조(일상점검 등) 14
 제22조(점검결과 조치 등) 15
 제23조(규정제정) 15

제4장 공항운영증명업무

제24조(일반사항) 17
 제25조(공항운영증명 과정) 17
 제26조(공항운영규정 심사) 17
 제27조(공항운영증명 신청서 평가) 19
 제28조(군시설 이용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21
 제29조(공항운영증명서 발급 또는 거부) 21
 제30조(항공정보간행물 수록) 22
 제31조(공항운영증명서 양도) 22
 제32조(공항운영증명서 포기) 22
 제33조(공항운영증명서 수정) 23
 제34조(공항운영증명서 취소절차 등) 23
 제35조(기준적용 면제 또는 예외) 24
 제36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24
 제37조(기록유지 등) 25

제5장 공항안전 자체점검

제1절 책임

제38조(자체점검) 28
 제39조(점검주기) 28
 제40조(점검기록) 29
 제41조(후속조치) 29

제2절 점검기법

제42조(점검기법) 30

제3절 자체점검 지식 및 장비

제43조(자체점검 지식 및 장비) 30

제4절 자체점검의 구성요소

제44조(자체점검의 구성요소) 31

제5절 정기점검	
제45조(개요)	31
제46조(포장지역)	32
제47조(착륙대 및 유도로대)	32
제48조(표지)	33
제49조(표지판)	33
제50조(항공등화)	34
제51조(항행안전시설)	35
제52조(장애물)	35
제53조(항공기 급유)	35
제54조(제설작업)	36
제55조(이동지역 작업)	36
제56조(구조 및 소방업무)	37
제57조(대중 보호)	38
제58조(야생동물 위험관리)	38
제6절 지속적인 감시점검	
제59조(일반사항)	38
제60조(이동지역 차량)	38
제61조(항공기 급유)	39
제62조(제설작업)	39
제63조(이동지역 작업)	40
제64조(대중 보호)	40
제65조(야생동물 위험관리)	40
제66조(이물질)	41
제7절 주기적인 상태점검	
제67조(일반사항)	41
제68조(포장지역)	41
제69조(표지)	41
제70조(표지판)	41
제71조(분기별 급유시설 점검)	41
제72조(항행안전시설)	43
제73조(항공등화)	43
제74조(장애물)	44
제75조(구조 및 소방업무)	44

제8절 특별점검	
제76조(일반사항)	44
제77조(포장지역)	44
제78조(표지 및 표지판)	44
제79조(착륙대 및 유도로대)	44
제80조(제설작업)	45
제81조(이동지역 작업)	45
제9절 상태보고	
제82조(상태보고)	45
제6장 공항 내 위험물취급	
제1절 공항의 연료 저장시설 배치	
제83조(일반사항)	48
제84조(안전 주의사항)	48
제2절 공항 내 연료 저장, 취급, 분배에 관한 최소 기준	
제85조(일반사항)	49
제86조(연료 저장시설 및 저장구역)	49
제87조(접지 가능 여부)	51
제88조(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51
제89조(급유 담당자)	53
제90조(급유차량 기록)	57
제3절 항공기 급유 안전관리	
제91조(일반사항)	58
제92조(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조치)	58
제93조(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하는 경우 추가 예방조치)	60
제94조(급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61
제4절 급유시설의 관리·운영	
제95조(관련 근거)	63
제96조(안전관리자)	63
제97조(세부 관리·운영지침)	63

제5절 기타 유통저장시설의 관리·운영

제98조(관련근거) 65
 제99조(안전관리자) 65
 제100조(세부 관리·운영지침) 65

제7장 보칙

제101조(유효기간) 68
 부칙 68

[별표 1]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시간 69
 [별표 2] 공항운영검사 점검표 71
 [별표 3]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 118
 [별표 4] 일상점검 점검표 151
 [별표 5] 공항운영검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157
 [별표 6]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158
 [별표 7] 정기점검 점검표 160
 [별표 8] 지속적인 감시점검 점검표 164
 [별표 9] 주기적인 상태점검 점검표 167
 [별표 10] 특별점검 점검표 견본 170
 [별표 11] 분기별 점검표(급유차량) 173
 [별표 12] 분기별 점검표(항공유 저장시설) 175
 [별지 1] 항공안전감독관증 177
 [별지 2] 자료제출 요구서 178
 [별지 3] 확인서 179
 [별지 4] 검사보고서 180
 [별지 5] 시정결과 확인서 181
 [별지 6] 시정명령서 관리대장 182
 [별지 7]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183
 [별지 8]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184
 [별지 9] 공항운영증명 기록부 185
 [별지 10] 공항별 공항운영증명 정기(수시)검사 기록부 186
 [별지 11] 공항별 공항운영증명 변경(신고)처리 기록부 18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안전검사관) 및 제3장(공항운영검사)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9조 및 제69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 및 일상적인 공항안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제4장(공항운영증명업무)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발급하기 위한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절차 등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제5장(공항안전 자체점검)은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증명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연방항공청(FAA)에서 발간한 권고회보(AC 150/5200-18C) “공항안전 자체점검”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4. 제6장(공항 내 위험물취급)은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증명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규정 및 매뉴얼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에게 적용하며 공항시설법령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우선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류장(Apron)”이란 공항,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공항운영증명(Certified Airport) 대상 공항(이하 “증명 공항”이라 한다)
 - (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
 -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을 공항

- 나. 일반 공항 : 제가목 이외의 공항
3.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
4.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련의 검사 및 점검 활동을 말한다.
5.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공항운영검사”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말한다.
7.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이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인력·시설·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8.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10.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2. “비행안전 확인”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이하 “비행안전 확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
13. “수시검사(Non-periodic Inspection)”란 정기검사 외에 공항운영체계의 적합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4. “시정”이란 시정명령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이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15. “시정명령”이란 공항운영검사 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16. “안전저해요소”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
1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 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장비·항공기·차량·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 감독 활동을 말한다.
27.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공항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말하며, 조직구조, 책임사항,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다.
28.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 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 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
29.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0.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
31.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
32.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이란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한다.
33.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이란 항공기의 자동 진입이나 자동 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진입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4.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5. “진창(Slush)”이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줌 쥐었을 때 물이 빠져 나오거나 힘차게 밟았을 때 튀는 눈을 말한다.
36. “착륙대(Runway strip)”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7. “통보”란 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위반 정도가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 부적합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자율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검사결과 처리기준을 말한다.
38.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
39.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
40.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
 - 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
4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2항에 의한 항공교통업무를 말한다.
42. “항공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3. “비행안전 확인(Aeronautical Study)”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장 공항안전검사관

제2장 공항안전검사관

제4조(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요건)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항의 개발·설계·건설·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공항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2. 항공운항,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관리 등 항공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3. 공항 소방 또는 구조업무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4. 항공·토목·건축·전기·기계분야 3년 이상 근무(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항안전검사관이 되려는 사람이 공항운영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만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검사 참여 기간은 공항운영검사 항목 중 안전관리시스템(SMS) 분야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방법, 평가방법 등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따른다.

제6조(교육훈련 이력관리) ①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실적을 통합항공안전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자료를 별지 8의 교육훈련 실적기록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항안전검사관의 임명 및 신분증 발급)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하고 별지 1에 따른 공항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을 따른다.

③ 공항안전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받은 날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 1 제4호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공항안전검사관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공항운영검사팀 구성) 지방항공청장은 증명 공항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 소속공무원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4조에 따른 전문가(이하 “검사관 등”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항운영검사팀을 운용할 수 있다.

제9조(검사관등의 의무) ① 검사관등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항운영자(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등은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신분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등은 공항안전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등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등 검사를 수행할 때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관등의 권한 등) ① 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2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관등은 검사를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의 종류) ①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증명 공항별로 연 1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1. 공항 내에서 항공기 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지상안전사고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종전의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거나 보완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공항운영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
4. 공항조직의 변동 또는 공항시설이나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항운영체계 중 특정분야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공항시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공항운영검사

제3장 공항운영검사

제12조(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증명 공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계획(이하 “검사계획”이라 한다)을 연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 받은 검사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보완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보고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증명 공항에 대해 실시한 해당 연도의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방법)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계획 이외의 사항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등은 해당 공항에 처음으로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시에는 별표 2의 점검표를 사용하고,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는 별표 3의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를 사용하되 안전관리시스템(SMS) 분야 점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목적과 특성에 맞게 점검표 내용을 가감(加減)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사전브리핑(공항관제탑 요원과의 협조사항을 포함한다)
2. 공항운영자 인터뷰
3. 공항운영·관리 등에 관한 각종 규정, 문서 및 기록에 대한 검사
4. 공항의 물리적 특성·시각지원시설·야생동물관리·작업 및 차량통제 등에 대한 검사
5. 구조·소방분야 및 비상대응 상태 검사
6. 연료시설 운영 및 관리 상태
7. 각종 등화시설에 대한 야간검사
8. 검사결과 브리핑

제14조(검사계획의 통보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공항운영검사팀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대한 검사계획의 실시 및 변경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조치) ① 검사관등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련 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 등의 징구) 검사관등은 검사 중에 공항운영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물증을 확보하거나 공항운영자로부터 별지 3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사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검사결과 보고) 검사관등은 검사 종료 후 별지 4의 검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결과 심의) ①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안전검사관의 검사기간 중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공항운영검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과별 전문적 식견을 가진 5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공항안전검사관은 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검사결과 브리핑 자료와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의견을 공항운영검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공항운영검사팀장은 세부심의 안건 및 그 밖의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부 소속 공항안전검사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 운영절차는 별표 5와 같으며, 심의결과는 시정요구 및 통보로 처리한다.

제19조(시정명령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시정명령 또는 통보)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명하는 경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집행이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시정 후 제출한 내용을 검사관등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 ⑤ 검사관등은 별지 5의 시정결과 확인서에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내용을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시정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유지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해 검사와 관련된 자료(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다.)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6의 시정명령서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공항의 안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류 확대 및 공항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관련 안전 화보집·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21조(일상점검 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관할 구역에 위치한 공항에 대해 연 단위의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공항안전감

독의 중복·편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4의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특성, 특별 안전관리수행 등을 고려하여 지방항공청장이 그 점검내용을 가감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4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에 대해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공항안전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 관련 업체 및 그 밖의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공항안전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항안전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7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 제정) ① 지방항공청장은 일상점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상점검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1. 일상점검 세부 시행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일상점검 결과 보고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업무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항운영증명업무

- 제24조(일반사항)** ①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함으로써, 정부가 공항을 증명하는 공항운영증명 절차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인가된 공항운영규정은 운영증명서의 부속서로서 이행되어 진다.
- ② 항공교통서비스는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공항규제와 연계하여 공항운영증명과정에서 고려되어 져야 한다.
- ③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시에는 안전한 항공기 운영 확보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AIS), 항공교통관제기관, 기상청, 보안기관 등 여타의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공항운영증명업무

- 제25조(공항운영증명 과정)** 공항운영증명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공항운영증명 신청자에 의한 신청의사의 접수
 2. 공항운영규정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신청서를 평가하는 것
 3. 공항시설과 장비를 평가하는 것
 4. 운영증명서의 교부 및 거절하는 것
 5. 공항의 승인된 상황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요구된 세부사항

- 제26조(공항운영규정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심사에 앞서 다음 각호의 신청의사 접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신청의사 접수에 대한 검토 후 이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거부 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군용 공항을 포함하여 다른 공항이나 착륙지로부터의 거리, 장애물과 지면, 과도한 운항제재 조건, 관제구역, 계기비행절차 등 항공기 운항평가
 2.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완료여부 확인
- ② 공항운영규정의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4호의 서식이여야 하며, 이에 첨부되는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의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공항운영자에 의해 수립, 인쇄되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
 2.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3. 페이지의 현 상태를 기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개정일 지 기록을 위한 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개정 및 승인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 ③ 공항운영규정을 심사하는 공항안전검사관은 제2장에 따라 심사하되,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규정 수립 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와 사전 검토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을 시행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규정 중 일부내용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준이나 이행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 등 관련대책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동사항은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 ⑤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 ⑥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기 ④항의 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 대체시설 또는 대체 운영절차와 ⑥항의 자문결과 반영사항은 공항운영자의 공항운영규정에 이의 이행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할 시에는 국지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ATS)관련요소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ATS)규정 또는 절차와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항공분야와 연계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⑧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할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검인을 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검인된 공항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공항운영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 ⑨ 공항운영규정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7조(공항운영증명 신청서 평가)** ① 공항운영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은 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와 공항운영증명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
- ②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0호의 양식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가 신청한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접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명백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충족여부
 2.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 유무
 3. 필수항공정보 유무
 4. 공항운영능력
 5. SMS 적용여부
 6. 공항운영증명신청서 적정여부
- ③ 공항운영증명 신청서의 적부여부를 검토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접수하고, 공항안전검사관 지정 등 검사계획 수립과 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한다.
- ④ 공항운영증명 신청서의 평가는 공항의 운영체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검사하고 현장점검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2장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 제1단계 : 서류 및 각종 기록검사
 2. 제2단계 : 현장검사
 - 가. 공항자료의 현장 확인
 - 나. 다음을 포함한 공항시설과 장비의 확인
 - (1) 면적과 표면 상태
 - (가) 활주로
 - (나) 활주로 갓길
 - (다) 착륙대
 - (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 (마) 정지로 및 개방구역
 - (바) 유도로 갓길
 - (사) 유도로대

(아) 계류장

(2) 공항 및 공항 주변지역의 장애물제한표면 저축 장애물 존재 유무

(3) 비행검사 기록을 포함한 다음의 항공등화

(가) 활주로와 유도로 조명(표지판 포함)

(나) 진입등시스템

(다) 진입각지시등(PAPI/APAPI)

(라) 계류장조명등

(마) 항공장애등

(바) 조종사에 의해 점등되는 등화가 있는 경우 그 등화

(사) 비행장등대

(아)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4) 예비 전원

(5) 풍향지시기(Wind Direction Indicator)

(6)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7) 공항 표지 및 표시물

(8) 이동지역내 표지판

(9) 항공기 고정지점(tie-down points)

(10) 지상 접지지점

(11) 구조 및 화재진압 장비와 설비

(12) 공항 유지보수 장비, 특히 활주로 표면 마찰 측정을 포함하는 에어사이드 시설정비를 위한 공항 장비

(13) 활주로 청소 및 제설 장비

(14) 기동불능 항공기 제거 장비

(15) 야생동물 관리절차와 장비

(16) 이동지역에서 공항운영자에 의해 사용될 차량에 설치된 쌍 방향 무전기

(17) 항공기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조명

(18) 연료시설

⑤ 공항운영증명의 현장검사에 사용되는 점검표는 별표 2를 사용하여 검사하되, 부적합 사항의 처리방안은 검사결과 보고서에 명기하여 공항정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⑥ 공항운영증명 현장검사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기준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건을 부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개선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처리절차는 개선계획이 포함된 공항운영규정을 변경인

가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⑦ 공항운영증명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군시설 이용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① 군시설을 이용하는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검사는 항공법령 및 민과 군 간에 체결된 군비행장사용협정서(MOU)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 검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군시설에 대하여는 민기준과 차이점을 조사하여, 민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조사결과 민기준과 차이점이 있는 군시설 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발급 시에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증명서 발급 또는 거부) ① 공항운영증명의 발급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승인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공항 시설, 서비스 및 장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국가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명시된 표준 및 이행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공항의 운영절차는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4.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규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5. 공항운영증명신청자는 공항을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항운영증명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항공교통업무담당부서(ATS Provider) 등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항정책관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결과 공항의 안전체계 유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항운영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증명서는 규칙 별지 제21호와 같이 공항명, 공항운영자, 인증조건, 발급일자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공항인증기간은 변경, 취소, 운영중지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는 공항운영자가 신청한 공항운영증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 공항운영

자에게 운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항운영자에게 거부되는 사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과 장비가 항공기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인지되는 경우
2. 공항 운영과정 평가결과가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나오는 경우
3. 공항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의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서 정해진 세부사항과 일정목록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위의 사항 및 다른 요소의 평가결과 신청자가 적합하게 상기 ①항에 따른 공항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 된 경우
- ⑤ 공항운영증명 발급 시 공항사용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가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부가 승인 내용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포함(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등) 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30조(항공정보간행물 수록) 공항운영증명과정의 성공적인 완료에 맞추어 공항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표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증명 현황에 대한 항공정보업무기관(AIS)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공항 세부사항의 정보 제공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처리한다.

제31조(운영증명서 양도) 운영증명서는 규칙 제34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운영증명서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

제32조(운영증명서 포기) ①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포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60일전에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증명 포기의사를 접수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취소를 요청하는 운영자가 자격을 갖춘 공항운영증명 소지자인지를 확인한다.
 2. 공항운영자의 통지가 포기의사의 사전 제출일(60일전)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3. 공항운영자에 의해 제공된 다음의 정보를 확인한다.
 - 가. 공항을 개방하고자 한다면 상황의 변화를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가 발행되어야 한다.

나. 공항을 폐쇄하고자 한다면 풍향지시기·표지의 제거나 적절한 폐쇄 표지의 제공, 사용불가 표시물, 필요한 시각지원시설의 제공과 같은 필요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만약 운영증명서 취소 신청이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증명서 소지자에 의해 제출된 통지에 명기된 일자부터 운영증명서 효력을 취소하는 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④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않은 공항으로서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 ⑤ 공항운영증명 받지 못한 공항과 폐쇄된 공항에 대해서는 ICAO 조약부속서 제15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33조(운영증명서 수정) 운영증명서의 수정은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인가(신고사항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유권 및 경영권의 변화(법률로 지정되어 해당없음)
2. 공항의 사용 또는 운영의 변경
3. 공항지역 경계의 변경
4. 운영증명서 소지자의 수정요청(공항운영규정 변경신청으로 처리)

제34조(공항운영증명 취소절차 등)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때
2. 제111조의4제2항의 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
- ②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6에서 정한 공항운영정기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 ① 일반적으로 특별한 심사없이 적용되는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사항은 다음사항으로 한다.

1.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칙의 특례
 2.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당해 공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비행안전 확인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되는 사항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항안전환경과장은 면제 또는 예외사항의 기록관리를 해야하며, 또한 면제사항에 대하여 법령,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항운영증명의 정기검사 시 검사관에게 해당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①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당해 공항운영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4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서는 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양식이어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은 다음으로 한다.

1. 변경 인가사항
 - 가. 구조/소방
 - 나. 이동지역점검/유지보수

- 다. 시각지원시설관리
 - 라. 작업안전
 - 마. 야생동물위험관리
 - 바. 위험물취급
 - 사.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 아. 안전관리시스템(SMS)
 - 자. 제한사항
 - (1) 공항시설의 제한
 - (2) 면제 또는 예외사항
 - (3)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 차. 공항운영규정의 운영절차(신고사항제외)

2. 신고사항
 - 가. 목적/범위 등 일반사항
 - 나. 공항부지정보
 - 다. 공항시설정보
 - 라. 자체점검프로그램
 - 마. 교육훈련프로그램
 - 바. 조직도 등 공항행정 일반
 - 사. 시설/장비목록 및 도면(부록)
 - 아. 공항비상계획 (부록)
 - 자. 제설계획 (부록)구조/소방
- ③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시에는 당해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공항운영자가 기존 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시 “비행안전 확인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확인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6조(공항운영규정 심사)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와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⑤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포함)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변경신고 포함)를 접수 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기록유지 등) ① 공항운영증명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공항운영증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내용은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항운영증명 업무수행에 관련된 제반활동이 문서로 기록되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공항안전체계 유지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항운영증명업무 수행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운영증명서를 발급한 각 공항에 대하여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각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규로 운영증명서를 발급 할 시에는 별지 9의 공항운영증명 기록부에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 포함) 시에도 별지 10의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운영증명서가 신규 발급되는 공항의 최초 검사관련 서류(검사결과 보고, 기준미흡시설에 대한 대체운영절차 및 비행안전 확인자료 등)는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위하여 백업(BACK-UP)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증명 공항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시행하게 되는 정기 및 수시검사(특별검사 포함)의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별지 11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공항운영증명검사관은 각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관련내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및 공항종사자간 공항안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항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안전관련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공항안전관련 화보집·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5장 공항안전 자체점검

제5장 공항안전 자체점검

제1절 책임(Responsibilities)

제38조(자체 점검) ①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전반적인 공항 지상안전업무를 공항 관리자 또는 공항운영 감독자에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자체점검은 포장지역, 착륙대 및 유도로대, 표지 및 표지판, 항공등화, 항공기 구조 및 소방, 항공기 급유, 항행안전시설, 이동지역 차량, 장애물, 대중 보호, 야생동물 위험관리, 작업통제 및 제설작업과 같은 점검항목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각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또는 기타 상주업체에게 배정된 지역의 점검은 해당지역 사용자에게 책임을 줄 수 있지만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제39조(점검주기)

①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

1.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에 적어도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인 감시점검(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

1.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과 시설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으면 언제든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

1. 활동과 시설의 정기적인 상태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매일 실시보다는 낮은 빈도로 실시한다. 점검주기는 항공기 운항 및 시설규모에 따라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

1. 활동 및 시설의 특별점검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
- (2) 공항이 비정상 상태에 놓인 경우
- (3) 중요한 기상 이변, 사고 및 준사고 등과 같은 비정상 사건의 발생
- (4) 공사와 관련된 불안정한 요소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가 종료된 후

2. 특별점검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작업자가 공항을 떠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점검표의 적정부분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제40조(점검기록) ① 효과적인 자체안전점검 프로그램은 기록 및 결함 수정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항운영자가 결함사항을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는 작업명령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요청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정 조치가 된 경우 항공고시보(NOTAM)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아주 소규모의 공항일지라도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기입란과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체 안전 점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차별 점검표의 정기적인 사용은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다.

④ 점검표는 공항 관리에 있어 중요한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점검표는 공항의 상태에 대한 스냅사진을 제공해줌으로써 경향과 문제지역을 나타내며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시스템을 알려주어 소요예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공항부지중 점검된 지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검표 양식(별표 7참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⑤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점검표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정기점검 점검표를 12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항은 유지보수 작업 지시서, 항공고시보(NOTAM)철, 소방대 및 응급처치 보고서 등과 같은 특수 자료와 양식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점검 점검표는 자체 점검업무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이 되어야 한다.

제41조(후속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불만 또는 시정조치 요청사항과 일상 점검 시 기록된 문제지역 또는 모든 결함사항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을 포함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문제부터 처리한다.

제2절 점검기법(Inspection Techniques)

제42조(점검기법) ① 자체 검사자는 점검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정형화된 점검방식은 습득하기는 용이하지만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없다. 또한 정형화된 점검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보완이 필요한 점검항목을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활주로 점검 시 부득이하게 일 방향만 점검하는 경우 자체 검사자는 가능한 한 밤낮을 불문하고 고광도 경광등과 전조등을 켜고 착륙하는 항공기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운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방법은 자체 검사자가 접근하는 항공기를 볼 수 있고 조종사도 점검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③ 그러나, 활주로 점검은 양방향 모두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자체 검사자는 또한 통상 간과하기 쉬운 활주로의 평행유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직각 유도로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자체점검 지식 및 장비 (Knowledge and Equipment for Self-Inspection)

제43조(자체점검 지식 및 장비) ① 자체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체 검사자는 최소 다음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자체 검사자는 공항시설의 위치 및 종류, 공항 규칙 및 규정, 공항운영규정에 정통하여야 한다.

1. 표지판, 표지 및 항공등화를 포함한 공항 관숙(Airport familiarization)
2. 공항비상계획
3. 항공고시보(NOTAM) 발행 요청절차
4. 이동지역 내 보행자 및 차량 운행절차
5. 공항 점검절차 및 점검기법
6. 비정상(discrepancy) 보고절차

③ 공항에 적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자체 검사자는 다음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공항 관제탑과 교신할 수 있는 양방향 무선통신장비
2. 저시정상태 또는 야간점검용 비컨(Beacon)
3. 주간 점검용 비컨 또는 바둑판 무늬의 깃발

⑤ 자체 검사자는 무선통신 어구용법, 절차 및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

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자체 검사자는 모든 점검지역을 다루는 점검표를 제공받는다.(별표 7)

1. 점검표의 양식은 다양하지만 각 공항과 공항 운영에 유용한 점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체 검사자 개인별로 담당하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경우 담당지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3. 문제 발생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항 평면도를 점검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점검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사에 관한 안전계획을 숙지하여야 한다.

⑨ 자체 검사자는 교육 및 자체점검에 관한 공항운영규정의 요구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절 자체점검의 구성요소 (Components of a Safety Self-Inspection Program)

제44조(자체점검의 구성요소) 자체 안전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다음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매일 실시)
2. 항공기 급유, 공사, 공항 유지보수와 같은 공항 내 일정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
3. 접근 활공각(Approach slope) 및 장애물 조사 등과 같은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상태점검
4. 기상 변화 또는 항공기의 비정상적인 운항이 많은 날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와 상황에서의 특별점검

제5절 정기점검(Regularly Scheduled Inspection)

제45조(개요) ① 정기점검은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 공항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 정기점검은 본 장에 기술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하며 별표 7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결함이 발견되면 자체 검사자는 결함사항을 확인하고 공항 평면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와 깊이도 표시한다. 가능하다면

상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포장지역) 포장 표면의 상태는 공항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포장점검은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 표면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최소한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포장지역 또는 운영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포장지역에 대하여 일상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장자리(Lip) 점검

가. 가장자리는 완전포장(Full-strength pavement)과 갓길(shoulders) 또는 포장된 갓길과 착륙대 사이를 말한다. 가장자리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대 4cm까지 단차를 줄 수 있다. 단,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서는 포장면 가장자리의 단차는 7.5c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진 틈(Crack)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러한 갈라진 틈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멍(Hole)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깊이 7.5cm, 내측면의 기울기 45도, 직경 12.5cm 이상이면 위반에 해당한다).
4. 포장지역에서 이물질(FOD)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갈라진 틈, 깨짐, 돌출부, 패임 및 파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활주로 및 유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포장면의 배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식물이 자라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갈라진 틈에서 식물이 자라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라진 틈, 구멍, 식물생장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47조(착륙대 및 유도로대) 자체 검사자는 공항의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규모가 공항운영규정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1. 바퀴자국, 킴하, 돌출부 또는 평탄한 표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다른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활주로등, 표지판 등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특정 기능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물체는 제외한다.
3.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설치된 장비의 기반이 수평면(grade level)과

취약성 커플링(frangible coupling)으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맨홀(Manhole)과 핸드홀(Handhole) 뚜껑이 수평을 유지하고 항공기 및 차량을 지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설치류 또는 기타 동물에 의한 손상 및 표면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6.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닌 물체 또는 수평면이 아닌 모든 물체는 보고되어야 한다. 공사 장비와 같이 항행안전과 무관한 장비와 물체,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거나 비상 대응차량의 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면 변화 등을 포함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있는 장애물에 관하여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8조(표지) 표지(Markings)는 이·착륙 및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혼동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지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공항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표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표지의 정확한 색상기준(Color-coding), 벗겨짐(Peeling), 기포(Blistering), 파편(Chipping), 퇴색(Fading) 상태 및 고무퇴적으로 인한 차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활주로정지위치표지가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진행 및 건설공사 이후 새로운 표지가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유리알 표지인 경우 야간에 유리알의 반사력이 적정인지 점검하여야 한다.
5. 비표준 표지 또는 차폐 및 퇴색된 표지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49조(표지판(Signs)) 표지판(Signs)은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종사의 혼동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지판은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판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공항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표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표지판이 색상기준에 따라 역반사되어 식별이 용이한지를 점검한다.
2. 조명이 장착된 표지판의 작동여부와 식물생장, 오염물질 및 눈 등으로 표지판이 차폐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고 콘크리트 기초가 동일한 높이로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표지판 유실여부와 기호 및 화살표 방향 표시의 정확성, 판넬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 진행 및 건설공사 이후 새로운 표지판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지판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6. 야간에 표지판 식별이 용이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7. 비표준의 표지 또는 작동기능 불능, 광도 약화 또는 손상여부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50조(항공등화) 야간과 저 시정상태에서의 항공등화는 안전한 공항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등화는 모양, 크기, 색상 및 구성이 각각 다르며 포장지역 또는 포장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항공등화의 점검은 항공등화가 가장 먼저 조종사에게 시각안내를 제공함으로 야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 다음의 항공등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상작동 여부와 식물생장 또는 외부 물질의 퇴적물로 인한 등기구의 차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가.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 나. 계류장가장자리등
 - 다. 활주로 중심선등 및 접지구역등
 - 라. 유도로중심선등
 - 마. 활주로말단등 및 활주로종단등
 - 바. 활주로경계등
2. 다음의 항공등화가 설치된 경우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가. 계류장 조명 및 투광조명등(Floodlight)
 - 나. 장애물표시등
 - 다. 연료저장지역의 조명
3. 유실된 모든 등기구와 작동되지 않는 등화 또는 불빛이 희미한 등화는 보고하여야 한다.
4. 항공등화가 제 위치에 없거나 파손된 등기구 렌즈는 보고하여야 한다.
5. 활주로등, 유도로등 및 활주로말단등 색상의 적정여부와 불빛 방향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6. 등화 기능이 수동 또는 무선조정으로 작동하는지와 광전지 조정이 잘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항공등화는 등화의 적절한 배열, 불빛 각도, 광도의 정확한 변화와 높이, 기초대 주변의 침식이나 부식, 부러지기 쉬운 지점의 높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1조(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의 점검은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자는 다른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분원(segmented circle)에 식물이 없고 공중에서 잘 보이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 비행장등대가 잘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풍향지시기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조명이 설치된 경우 모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활주로종단등이 차례로 깜박이는지와 부러지기 쉬운 커플링(Coupling)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진입각지시등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부러지기 쉬운 커플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진입등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항행안전시설의 고장, 작동불량 및 파손여부 등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52조(장애물) 장애물 점검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 또는 공항 근처에서 진행 중인 공사를 시각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나무(Tree)와 같은 초목(Vegetation)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공사장비(특히, 대형 크레인)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장애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애물에 적절한 표지와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장애물등의 고장, 작동불량 및 파손여부 등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53조(항공기 급유) ① 항공기 급유에 대한 일일점검은 항공유 저장지역과 이동급유차량의 관할지역에 적용되는 소방관련 법령 준수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점검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또한 보안, 화재보호, 일반관리 업무, 연료 공급시설 및 절차들도 포함하여야 한다. 보다 세부적인 급유작업 점검은 분기별로 시행하여야 한다(별표 11 및 별표 12).

- ③ 항공기 급유작업의 일일점검 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유작업 중 이동 급유차량과 항공기간에 접속(Bonding)을 하지 않거나 급유원의 흡연 행위 등과 같은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와 급유원의 불안정한 급유행위를 허용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 항공유 저장소에 적절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모든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불안정한 급유행위 또는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항운영규정의 위험물 취급절차에 관한 위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설작업) 자체 검사자는 제설작업 절차 등 제설계획 및 관련규정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 및 표지판이 제설작업으로 파손되었거나 눈으로 차폐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활주로 및 유도로 측면의 눈 더미 및 표류물과 항공기 날개 끝, 엔진 및 프로펠러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눈이 활주로 말단 또는 활주로와 활주로의 교차지점을 횡단하여 쌓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외부 물질이 포장지역에 남아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제설작업이 유도로 또는 항공기 구조 및 소방차량의 비상접근로를 차단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눈이 임계구역(ILS critical area)에 쌓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포장면의 미끄러운 상태를 제동상태 또는 마찰계수에 의하여 보고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측정장비로부터 측정된 마찰계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제거되지 않은 눈 더미와 표지판 및 항공등화의 차폐와 같은 위험한 상태는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이동지역 작업) 자체 검사자는 공항에서의 작업안전절차 및 관련 규정에 관하여 정통하여야 한다.

1. 비축자재 및 공사자재가 바람, 제트분사(Jet blast) 또는 프로펠러 기류(Propwash)로 인하여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비축자재 및 공사자재가 착륙대, 유도로대 및 이동지역

- 에 방치되어 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2. 이동지역에 인접한 모든 작업지역을 점검하여 눈에 잘 띄는 표지와 조명으로 해당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불도저 및 크레인 등과 같은 중장비에 표지 및 조명을 설치하고 착륙대 및 유도로대 이외의 장소에 주차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및 위험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바리케이드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또한 바리케이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명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작업지역 주변의 파편 및 이물질(FOD)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착륙대 및 유도로대 또는 계류장에 인접한 장소에 개거 배수로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7. 작업자가 매일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 작업지역과 근접한 지역의 조명 운영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8. 건설 공사 중에는 매일 항공고시보(NOTAM)를 점검하여 항공고시보에 공항상태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폐쇄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적절하게 표지되고 조명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공사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상태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 가. 표지판, 항공등화, 표지 및 항행안전시설의 파손
 - 나. 착륙대, 유도로대 및 이동지역내 방치된 장비 및 비축물자

제56조(구조 및 소방업무) 항공기 구조 및 소방능력에 관하여 자체 검사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구조 및 소방장비, 소방대원, 소화제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구조 및 소방대응 상태
2. 비상통신 및 경보시스템의 작동여부
3. 사용 가능한 소화제의 적합여부
4. 이동지역내 작업 또는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소방차량의 비상 출동로 장애 여부(만약 작업 또는 유지보수 활동이 소방차량의 비상 출동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소방대에 통보되었는지 확인).
5.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 및 감시여부
 - 가. 소방차량 및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나. 소화제의 사용가능 여부

다. 공항의 구조·소방등급 조정이 요구되는 기종변경

제57조(대중 보호) 비인가자 및 비인가 차량의 이동지역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문, 울타리, 잠금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등이 적재적소에서 적절하게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파손되고 유실된 보호장치는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공항보안계획에 의거 이동지역내 비인가자 및 차량은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야생동물 위험관리) ① 야생동물 위험요소 점검 시 자체 검사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새와 동물들의 증거물이나 공항 부지 내 또는 그 주변의 대규모 새떼와 같은 야생동물 위험이 발생한 흔적들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야생동물 위험요소는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③ 발견된 모든 죽은 동물과 항공기와 충돌한 야생동물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추가적으로 자체 검사자는 야생동물 접근방지를 위한 울타리 및 출입문을 점검하고 야생동물 통제장비의 사용 가능여부와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절 지속적인 감시점검
(Continuous Surveillance Inspection)**

제59조(일반사항) ①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리적인 시설의 장애사항 뿐만 아니라 규정 및 절차 준수 활동에 대한 제반적인 관찰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검은 직원이 항공기 운항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의 물리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최소한 본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8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0조(이동지역 차량) 이동지역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 차량(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있는 제초기 또는 기타 유지보

수 차량 등) 운전자의 차량 운행규칙 및 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동절기 및 기타 특별행사 기간 중에는 이동지역 차량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

2. 공항의 차량 운행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운전자를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3. 이동지역내 차량사고와 차량안내 표지판 및 표지의 파손, 유실, 차폐 등은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항공기 급유) 항공기 급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항공기 급유 중 화재 및 폭발 위험요소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와 급유장치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급유원의 급연 준수여부와 격납고 안에서의 항공기 급유 실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급유차량이 다른 차량으로부터 최소 3m, 건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항공유 저장소 및 이동급유 차량 주변에 연료 누유 또는 유출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항공유 저장소에 쓰레기 및 식물 등을 포함한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불안정한 급유행위와 관할지역 소방관련 법령, 당해공항의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의 명백한 위반사항은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제62조(제설작업) 눈과 얼음의 제거 등 제설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포장면을 점검하고, 눈과 얼음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든 표면을 보고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2. 자체 검사자는 제설작업에 관한 항공고시보(NOTAM) 내용을 확인하여 현재 상태정보가 항공고시보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발행 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적시에 항공고시보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3. 공항운영자가 공항사용자에게 제설작업에 관한 정보를 팩스 또는 전자메일과 같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통지할 경우 자체 검사자는 이러

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감시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의 눈과 얼음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63조(이동지역 작업) 자체 검사자는 작업자가 작업안전계획을 준수하도록 작업지역를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지역 및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자, 차량 및 장비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의 무허가 사용여부
2. 활주로 침범이나 기타 위반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적절한 보호벽, 원뿔형 봉, 표지 등 작업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
3. 계기착륙시설 임계구역에서의 작업차량 및 장비 운영여부(지방항공청과 협의한 경우 제외)
4. 울타리의 출입문 관리상태(개폐여부, 근무자 배치여부, 잠금장치의 잠금상태 등)
5. 작업차량의 표지, 깃발 또는 조명등 설치여부
6. 유도로, 계류장으로 연결되는 이동지역 주변 도로의 이물질(FOD) 방치여부
7. 조종사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잘못 안내할 가능성이 있는 표지판, 표지 및 등화 유무
8. 바리케이드 및 조명의 설치위치 적합여부 및 정상 작동여부

제64조(대중 보호) 작업 및 기타 특별 행사기간에는 대중보호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대중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보호장치(Safeguards)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가받지 않은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유무
2. 출입문(특히 항공기 구조 및 소방 장비의 접근로)의 정상작동 여부 또는 차단 상태
3. 비인가자의 이동지역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된 표지판의 유실 또는 손상여부와 출입문의 개폐 및 잠금 상태
4. 제분 분사벽의 손상 및 유실여부

제65조(야생동물 위험관리) 야생동물 위험요소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은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또는 그 주변에 개 및 사슴 등과 같은 동물 또는 조류 존재여부

2. 공항 또는 공항 주변에서 조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3. 활주로에서의 야생동물 충돌 및 야생동물 잔해

제66조(이물질(FOD) 자체 검사자)는 이동지역의 이물질(FOD)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제7절 주기적인 상태점검(Periodic Condition Inspection)

제67조(일반사항) 주기적인 상태점검은 정기적으로(일일점검 보다 낮은 빈도) 물리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점검은 장비 사용(예를 들어, 진입각지시등의 활공각을 측정하는 각도계, 접근 활공각을 조사하는 트랜시, 연속적인 마찰측정장비) 또는 물리적 시설의 특정 기능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공항의 물리적 시설과 활동에 관한 주기적인 상태점검은 최소한 본 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9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포장지역) 포장면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고무퇴적물, 연마(研磨) 또는 기타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69조(표지) ① 포장면의 표지가 정확하고 식별이 용이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밝은 색 표면의 아스팔트의 표지는 흑색 윤곽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가 밤에 식별이 용이한지 확인하고 특히 접지구역에 고무 퇴적물이 생성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0조(표지판) 자체 검사자는 표지판 면(Face)의 탈색 및 변색여부와 불빛이 선명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1조(분기별 급유시설 점검)

① 개요

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안전한 급유를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급유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항공기 급유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는 공항운영규정(ACM)에 수록되어야 하고, 동 규정에 수록된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별표 11 및 별표 12에 항공유 저장시설과 이동 급유차량에 대한 분기

별 점검표가 수록되어 있다.

4.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점검기록을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일반적인 분기별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② 항공유 저장지역과 입·출하시설 점검사항

1. 항공유 저장지역에 대한 불법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와 보안 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2. “금연”표시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항공유 저장지역에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물질 및 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타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 및 활동 등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급유장비의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상 위로 돌출되어 있는 파이프가 차량 등에 의한 파손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보호조치 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 항공유 저장소에 최소 두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급유장비의 호스 방사율이 분당 200갤런 이상인 경우 125LBS의 소화제를 탑재한 바퀴달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7.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비, 스위치, 배선 등이 발화원인이 될 수 있는 열이나 충돌,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조치 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8. 파이프, 필터, 펌프 등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있고, 적절한 접지봉에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9. 지상 탱커와 이동식 급유차량에 대한 각각의 입·출하 시설에 사용가능한 클립(연결장치 포함), 접속선 및 접지선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0. 출하시설에 데드맨 제어장비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1. 한번의 동작으로 모든 연료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비상차단장치는 가능한 연료누유지역 바깥쪽에 위치하고 통상적으로 누유지역을 벗어나는 통로 또는 소화기 쪽으로 향하는 통로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급유장비

1. 모든 급유차량은 최소 3개월마다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에 충족하도록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가. 급유차량이 작동상태 및 누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급유차량이 건물로부터 15m, 다른 차량으로부터 3m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다. 가연성을 표시하는 문자“Flammable”이 차량 양쪽에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문자의 높이는 최소 7.5cm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양쪽에 위험물질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라. 운전석에 “금연”표시와 흡연도구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재떨이와 라이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마. 차량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2개의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충전 및 봉인되어야 하며 점검표가 부착되어 점검일자 기록되어야 한다. 분말 소화기가 B-C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ABC 등급으로 분류된 분말 소화기는 항공기를 부식시키고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급유차량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바. 비상차단장치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비상차단장치는 차량 양쪽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 전기장치, 스위치, 배선과 후미등 덮개가 폭발방지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열, 충돌 또는 충격으로 인한 발화원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아. 사용가능한 접속용 케이블(Bonding wire)과 집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 자. 데드맨 제어장비의 노즐을 점검하여야 한다.
- 차. 차량의 배기장치가 연료탱크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을 경우 배기구가 새는 곳은 없는지와 적절히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항행안전시설) 공항이 소유하고 있는 활주로말단식별등(RTIL) 및 진입각지시등(PAPI)의 불빛 각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3조(항공등화) ① 발전기 및 회로 저항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절 가능한 광학시스템의 등화 불빛 방향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4조(장애물) ① 항공기 주기장의 공중에 케이블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진입등시스템 및 진입각지시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항 근처의 나무 및 다른 구조물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75조(구조 및 소방업무) ① 항공기 구조 및 소방차량이 비상대응시간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요구하는 정기교육과 실제화재훈련 실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및 도구의 사용가능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절 특별점검(Special Condition Inspections)

제76조(일반사항) 특별점검은 불만사항 접수 후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지속적인 감시점검 및 주기적인 상태점검에 속한 특정시설 또는 활동에 대한 점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공항의 물리적 시설과 활동에 대한 특별점검은 최소한 본 장에 기술된 분야와 별표 10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7조(포장지역) 비 또는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가 온 후 포장지역에 물웅덩이 또는 가장자리에 물이 고인 곳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8조(표지 및 표지판) ① 표지가 야간에 특히 비가 온 후 포장면이 젖어 있을 때 식별이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사 또는 유지보수 작업 후에 표지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9조(착륙대 및 유도로대) ① 배수체계를 점검하여 입구가 막히지 않고 배수관에 오물이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고인 물은 기록되어야 한다.

② 모든 입구덮개가 제자리에 있고 하수구 덮개가 수평을 유지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 착륙대 및 유도로대 또는 그 근처에서 공사 또는 유지보수를 실시한 후 활주로 또는 유도로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④ 항공기가 포장지역을 이탈하여 착륙대 및 유도로대로 들어 간 경우에는 항공기 타이어 또는 복구 작업직원과 장비에 의하여 바퀴자국 또는 구멍이 발생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⑤ 위험한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및 유지보수 활동을 점검하여야 한다(착륙대 및 유도로대에 남아 있는 장비, 지반 변경작업으로 생긴 불필요한 포장면 단차, 제조장비의 바퀴자국 등).

⑥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또는 도보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0조(제설작업) 공항이 정상운영 상태로 복귀 할 때까지 동절기 기간 중에는 몇 차례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

1. 제설작업 후 모든 이물질이 수거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로부터 측정된 마찰계수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찰계수를 제동상태보고와 상호 연관시켜서는 아니 된다.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의 제동상태보고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1조(이동지역 작업) ① 공사지역에 바리케이드와 조명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공사 장비가 사전 지정된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③ 항공기가 공사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조명등 및 반사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공사 자재 및 비축자재의 위치가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바깥쪽에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판을 차폐시키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공사지역과 인접한 이동지역 또는 공사 차량이 횡단하는 이동지역에 이물질(FOD)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⑥ 공사 현장 주변의 이동지역에 조종사에게 혼돈을 주거나 활주로 침범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표지, 등화 및 표지판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9절 상태보고(Condition Reporting)

제82조(상태보고) 공항 사용자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존재하는 불안정한 상태는 공항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점검 중 확인된 부적합

한 상태가 즉시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항공고시보 (NOTAM) 발행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고시보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공항 내 위험물취급

제6장 공항 내 위험물취급

제1절 공항의 연료 저장시설 배치

제83조(일반사항) ① 현재 및 향후의 연료 저장량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항 사용자와 연료 시스템 설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접근성
2. 철도 병행 여부
3. 연료 저장시설과 연결된 대형 도크(Dock) 또는 파이프라인
4. 예정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지역간의 근접성
5. 연료 저장부지의 확장 가능성

② 연료 저장시설은 항공기 운항지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항 내 시설 및 인접한 부지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방법,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폭풍 및 위생용 배수로의 배치, 화재예방 시스템 및 그 장비의 접근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84조(안전 주의사항) 연료 저장시설은 착륙대 및 유도로대, 그리고 활주로에서부터 해당 활주로에 부속되는 건축 제한선 사이의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료 저장시설을 활주로 개방구역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제2절 공항 내 연료 저장, 취급 및 분배에 관한 최소 기준

제85조(일반사항) 이 장은 공항에서 연료의 저장, 취급 및 분배에 관한 최소 표준을 작성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 수록된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86조(연료 저장시설 및 저장구역)

① 연료 저장시설

1. 제1절과 같이 배치하여 항공기 및 지상용 차량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울타리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허가 진입 및 간섭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3. 인화성 및 금연 표지판을 설치한다.
4. 외부의 물질이 연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류의 작업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5. 발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 장비, 기능 및 활동이 없어야 한다.
6. 제품이 잘못된 연료탱크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료 저장탱크

1. 연료의 종류 및 등급은 최소 7cm 높이의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2. 가능한 가장 낮은 지점에 배수구가 장착되어 있고 고정 파이프를 연료를 채울 때에는 튀지 않도록 바닥의 주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방수 처리되고 방충 처리된 비개방성 방출구가 최소한 3.5m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정상적인 펌프 작업 중에 탱크 바닥으로 물방울과 그 밖의 오염원이 흡입되지 않도록 부유식 흡입장치 또는 기타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5. 탱크의 가장 낮은 지점에 달린 배수구에 휴대용 펌프 또는 중력식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 배출구는 밖으로 흐르는 연료를 수거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부유식 흡입장치가 장착된 연료 저장탱크는 부유 흡입 검사를 위한 구멍과 검사용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7. 검사 및 청소를 위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8.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9.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및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하여야 한다.
10. 최소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여과기

1. 항공유(AVGAS, 자동차용 가솔린 포함)인 경우 최소한 주입구의 여과기,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배수구 배출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2. 제트 연료용인 경우 최소한 주입구의 여과기,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주입 및 방출용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확실한 방수 시스템, 배수구 배출장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여과기의 하단에는 연료 표본채취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파이프

1. 연료의 종류 및 등급별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주입구, 배출구, 밸브는 연료의 종류와 등급은 최소 7.5cm 높이의 문자와 해당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되거나 지하에 매설되어야 한다.
4.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
5.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⑤ 호스, 노즐 및 배출 연결부

1. 항공 연료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고유의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스프링이 달린 필수 통과형 자동 연료흐름 차단기능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4. 연료의 종류를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전기 장비의 스위치와 배선

1. 절연층을 파손하거나 불꽃 또는 그 밖의 점화 요인을 일으킬 수 있는 열, 마모 및 기타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2.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종류 또는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정상 작동 중에 불꽃을 일으키거나 점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노출된 도선, 접속장치, 스위치, 연결장치 및 모터 등에는 폭발방지 처리가 필요하다.

⑦ 접지 및 결속 장비

접지 및 결속 장비에 속하는 파이프, 여과기, 탱크, 전기 부품들은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 및 연결되어 접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⑧ 하역 도크와 기지

1. 연료의 종류에 따른 표지와 색상으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2.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급유차량의 접지를 위한 결속 및 접지 와이어와 적절한 연결장치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

⑨ 적재 도크 및 기지

1. 연료의 종류에 따른 표지와 색상으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2. 표준에 적합한 소화기가 손에 닿는 곳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상부 주입식 시스템은 가장 깊은 급유기 탱크의 바닥까지 닿는 길이의 금속제 주입 튜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4. “무인” 통제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5. 식별이 용이하게 표시된 비상용 차단장치가 있어야 한다.
6. 급유차량의 접지를 위한 결속 및 접지 와이어와 적절한 연결장치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
7. 재급유차량 안으로 부적절한 연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⑩ 표지 및 색상

1. 모든 하역용 파이프, 주입구, 탱크 충전부, 탱크 해치, 파이프, 밸브, 상부 주입식 방출 튜브, 호스 연결부, 노즐, 차량 등을 포함한 급유 시스템의 전부분에 걸쳐 영구적인 표지를 하고 도색하여야 한다.
2. 항공기에 연료를 적재할 때 사용하는 날개 위쪽의 노즐에 부착하는 표지와 색상 띠의 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제87조(접지 가능 여부) 연료의 흐름속도가 분당 95ℓ(25갤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 급유 작업에는 접지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88조(급유차량 및 하이드라ント 급유전) ①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1. 위험, 인화성, 표준 위험물질임을 알려주는 플래카드와 식별번호를 최소 7.5cm가 되는 문자로 모든 측면에 표시하고 운전석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금연 표지를 부착한다.
2. 모든 측면과 운전석 내부에는 최소한 7.5cm 높이가 되는 문자로 시스템의 연료 종류 및 등급을 분명히 표시한다.
3. 여러 등급의 연료를 적재 또는 급유하도록 특수 설계된 차량을 제외하고 동일한 종류 및 등급의 연료만을 적재 또는 급유하여야 한다.
4. 하이드라ント 급유전과 같이 그 위치가 고정되는 설비인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눈에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모든 급유지점에서 분명히 보이고 접근 가능한 비상차단장치가 최소 한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 나. 급유작업 중에는 손에 닿는 장소에 최소 두개의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5. 급유차량의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흐름 속도와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한 번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다른 모든 통제 및 정지에 우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소화기는 최소 두 개가 비치되어 다른 쪽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외부의 물질이 연료 속으로 흡입되는 기능이 없어야 한다.
7. 정상 작동, 과 충전 또는 그 밖의 누출 상태에서 연료 및 진한 연기가 배기 시스템, 뜨거운 배출 가스 또는 기타 점화 원인으로 발생하는 기능은 없어야 한다.
8. 내부 연소식 엔진이 장착된 경우에는 공기 여과기 및 피뢰기와 누출 방지형 배기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은 표준 조절 머플러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료탱크

1. 차단상태이어야 하며 다음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3psi의 비상 시 증기압 방출 밸브가 있어야 한다.
 - 나. 차량의 이동 중에 연료의 누출을 방지하고 수분의 유입을 항상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개스킷이 달린 돔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흐르는 연료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구가 있는 배수구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탱크 바닥에는 누출 차단 밸브가 장착되어 파이프가 파열되거나 그 밖의 밸브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료의 흐름 및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
5.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상당량의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③ 여과기

1. 항공유(AVGAS)인 경우 적어도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및 배수구 배출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2. 제트 연료용인 경우 적어도 펌프의 최대 흐름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방출 여과기, 차등압력 점검장치, 확실한 방수 시스템, 유출되는 연료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위치에 배출구가 달려 있는 바닥의 배출장치가 있어야 하며 모든 여과기 하단에는 연료 표본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항공유(AVGAS)는 펌프에서 항공기로 가는 도중에 최종 직렬 여과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파이프

1. 파열 및 연료 유출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과 압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아연, 구리 및 카드뮴이 없어야 한다.
 3. 연료를 오염시킬 수 있는 녹, 벗겨진 조각, 계면 활성제, 미생물의 생장, 또는 그 밖의 물질이 없이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⑤ 호스, 노즐 및 연결장치
1. 항공연료의 운반용으로 특수 설계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2.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고유의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날개 위쪽의 노즐은 국제규격에 충족되어야 한다.
 4. 먼지차단막이 덮개 또는 연료 및 연료시스템으로 반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100개의 그물눈이 있는 필수 통과형 노즐 및 연결장치 거름망이 있어야 한다.
 6. 무인 흐름 차단 기능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7. 연료의 종류를 나타내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전기 장비 및 배선
1. 절연층을 파손하거나 불꽃 또는 그 밖의 점화 요인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열, 마모 및 기타 충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종류 또는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정상 작동 중에 불꽃을 일으키거나 점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노출된 도선, 접속장치, 스위치, 연결장치 및 모터 등에는 폭발방지 처리가 필요하다.
- ⑦ 접지 및 결속 시스템
1. 금속이나 도체로 된 모든 부품 사이에는 전기가 통하여야 한다.
 2.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 접지 시스템, 급유 중인 항공기를 서로 연결하여 즉각적이고 확실한 접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접지 케이블과 결속 와이어 및 이음쇠가 있어야 한다.
 3. 하이드란트 급유전은 영구적인 접지 상태여야 한다.

제89조(급유 담당자)

① 인원

1. 공항 내 급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급유담당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1. 위험물 취급업체의 최소 1인 이상의 감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8조에 의거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자는 연료에 관한 제반 지식과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공항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연료의 주요한 특성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인화성, 색상, 냄새, 촉감 등을 이용)
 - 나. 가솔린을 급유한 왕복 엔진과 터빈 엔진을 구별하고 각각의 주요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에 사용되는 연료 및 오일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다. 정기적으로 같은 종류의 연료가 급유되는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물, 미생물의 생장, 계면 활성제, 보풀, 녹, 모래, 그 밖의 혼한 고체 입자와 같은 연료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주요 영향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연료 속에서 위와 같은 오염원이 하나 이상 발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와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 등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사. 장비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아. 연료 저장시설의 필수 구성요소,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자. 화재의 삼각지대를 이해하고 공항에서 더욱 흔하게 발생하는 점화요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차. 연료의 누출 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카. 연료를 저유 탱크, 급유차량 및 항공기에 급유 또는 배출할 때 여과기 및 펌프 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타. 번개 및 비행 중인 항공기의 정전기 발생을 포함하여 대기 중의 방전 현상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파. 대개 연료 저장시설과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는 올바른 소방 기법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한다.
 - 하. 연료 배출 절차 및 사전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제공되는 연료의 무결점을 확인하는 품질관리 검사를 이해하고 시행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적절한 기록 작성을 포함하여 품질관리 절차의 성공적인 구현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다. 기량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라. 개인별 교육훈련 및 보수 교육훈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훈련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의 교육훈련은 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하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④ 의복 및 신발
1.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실크, 폴리에스테르, 모혼방 나일론 또는 그 밖의 정전기가 발생하는 직물로 되어있지 않은 의복을 착용한다.
 3. 신발에는 금속판 또는 포장면에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밖의 물질이 없어야 한다.
- ⑤ 기타
급유 담당자는 안전성냥, 딱성냥, 라이터 또는 작동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렸을 때 점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밖의 품목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모든 탱크, 도크, 저장구역, 급유차량 및 항공기 내·외부의 반경 30m이내에서는 항상 금지된다.
- ⑥ 위험물 감독
급유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고 교육훈련 및 지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장비 및 필수 구성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수 정기점검은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연료가 올바른 등급과 분량으로 항공기에 정기적으로 급유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 ⑦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
1. 급유 담당자는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자격 있는 직원만이 연료 저장시설이나 장비를 가동하고 항공기에 급유를 실시한다.
- 나. 연료 하역 및 급유차량의 적재 작업은 자격 있는 직원이 참석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 다. 저유 탱크에 연료를 반입하기 전에 규정에 적합한 연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이 들어있지 않고 색상, 냄새 및 촉감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 라. 연료가 반입되는 시점부터 특정 항공기에 급유 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적당한 기록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 마. 급유는 반드시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한다.
- 바.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른 급유차량과 3m 이상, 건물에서 15m이상, 급유 및 배출 중이 아닌 항공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 사. 모든 하역, 적재, 급유 및 연료 배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모터, 엔진, 무선 장비, 그 밖의 전기 및 기계 장비(보조 동력 장치만을 제외)의 전원을 전부 차단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 아. 연료를 취급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에는 모든 시스템 및 급유차량을 접지하여야 한다.
- 자. 항공기 및 급유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기 전 또는 급유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급유차량을 적재 도크의 지면에 적어도 하나의 결속 와이어로 연결하여야 한다. 급유차량 및 하이드란트 급유전과 급유중인 항공기 사이를 본딩(Bonding)한다.
- 차.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모든 연료 저장시설, 급유차량, 하이드란트 급유전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또한 항공기에 적재 또는 급유할 연료에 오염물질이 없고 색상, 냄새, 촉감 및 등급이 정상적이며 “밝고 깨끗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 카.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1) 연료 저장시설, 하이드란트 급유전 및 급유차량에 장착된 모든 여과기의 차등압력 점검
 - (2) 모든 노즐 및 호스 연결장치의 거름망 육안점검
- 타.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30일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1) 모든 유입 통의 여과기 육안점검
 - (2) 모든 여과기 하단부분에서의 수분탐지 점검
 - (3) 제트 연료시스템인 경우 마지막 여과기의 하단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육안에 의한 색상점검
 - (4) 눈에 띄는 점화 원인을 찾기 위한 야간 불꽃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급유차량의 상태에 관한 세밀한 육안점검
 - (5) 내부 연소 엔진의 배기 시스템에 관한 손상 또는 누출 여부
 - (6) 급유차량 전체의 기계적 상태
- 파. 급유차량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의 재급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사항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1) 전체 연료 시스템에 들어있는 각각의 여과기를 교체하였거나 또는 요소별 점검을 통하여 추후 12개월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 모든 급유호스의 절단 부위, 노출된 전선, 변색, 물러진 부분, 물집, 연결장치 끝부분의 편차 또는 고장 가능성 확인
 - (3) 모든 결속 및 접지장치 또는 연결부에 전기가 통하는지 점검
 - (4) 접근 가능한 모든 저유 탱크를 열고 침전물 또는 기타 오염물의 축적여부에 관한 육안점검
- 하. 급유차량의 적재 및 항공기 급유 작업은 무인 통제장치가 작동 가능하고 연료의 흐름을 이 장치로 통제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거. 연료 저장시설과 모든 장비는 연료를 오염시키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쓰레기 또는 파편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 되었는지 확인한다.
- 너. 모든 소화기의 충전량과 작동상태를 최소 연 2회씩 점검한다.
- 더. 공항 부근에서 번개가 칠 때에는 연료 관련 작업을 잠시 중단한다.

제90조(급유차량 기록) ① 급유업무 담당자와 감독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최소 1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항으로 반입된 모든 연료의 출처, 실시한 검사 및 최종 배달 지점
 2. 장비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
 3. 공항 내 급유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시한 교육훈련 및 개인별 자격에 관한 기록
- ② 공항운영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이러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절 항공기 급유 안전관리

제91조(일반사항) ① 항공사와 항공기 급유업체는 항공기 급유 중 안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계류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무자는 주요 예방안전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위반사항은 급유 담당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 항공기 급유업체 및 지상 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유지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2.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APU) 또는 지상동력공급장치(GPU)의 시동 금지
3. 항공기로 접근하는 출입로를 확보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여객 및 장비의 신속한 철수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
4. 항공기와 급유장치간의 확실한 본딩(Bonding) 및 규정된 지상접지 절차(Earthing procedure)의 이행
5. 활용 가능하고 적합한 종류의 소화기 비치
6. 연료 누출에 대한 급유감독자의 감시 철저

③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항공기 급유업체는 항공기 급유를 하는 동안 안전조치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조치
2. 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기하는 경우 추가 예방조치
3. 급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제92조(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조치) 항공기 급유 시 일반적인 예방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급유는 옥외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4.4에 따라 정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항공기와 급유장치간 본딩(Bonding) 또는 본딩(Bonding)과 접지(Grounding)를 병행하여야 한다.
3.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음과 같이 위치하여야 한다.
 - 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이 항공기에 접근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비상사태 시 항공기로부터 급유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통

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화재 발생 시 탑승객이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차량엔진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항공기 급유 중 급유차량 이외의 수하물 트럭 등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서 가동 또는 주차되지 않아야 한다.
5. 급유지역에서 운용하는 모든 차량의 배기장치는 연료나 연료증기를 발화시킬 수 있는 스파크 또는 화염을 배출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급유지역으로 배기가스를 유출시키는 보조동력장치(APU)는 연료 주입구 덮개가 제거되기 전 또는 연료공급 연결이 되기 전에 작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7. 보조동력장치(APU)가 급유 중 정지된 경우에는 급유가 종료되거나 연료증기를 발화시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재가동 시키지 말아야 한다.
8.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에 의해 사용 중인 레이더 장비 부근에서는 항공기 급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
9. 급유 중에는 항공기의 배터리를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없으며 배터리 충전기를 연결, 작동 및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10. 급유 중 지상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
11.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도구, 드릴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2. 급유차량 또는 항공기의 연료 주입구 및 배출구 부근에서 사진 촬영용 전구 또는 전자 플래시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화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들은 계류장 또는 항공기 급유지역으로부터 15m이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화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진다.
 - 가. 불붙은 담배, 시가, 파이프
 - 나. 히터
 - 다. 용접 또는 절단용 토치(Torch)
 - 라. 석유등 또는 기타 불꽃을 이용하는 조명기구
14. 항공기 급유 시 라이터 또는 성냥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5.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급유를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 인접지역에 강한 번개(Severe lightning)가 있을 때는 급유를 중

단하여야 한다.

16. 항공기 착륙장치의 일부분이 지나치게 가열된 경우에는 공항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을 요청하고 열이 사라질 때까지 급유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17. 연료 화재의 경우 적어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소방장비 및 그 사용법을 익힌 요원이 있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거나 연료가 누출되는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을 신속히 호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 되도록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를 받아야 한다.

제93조(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 기하는 경우 추가 예방조치)

- ①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단으로 항공기의 대피를 지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요원이 배치되지 있지 않는 경우 승객이 기내에 남아 있거나 탑승 또는 하 기할 때 항공기 재급유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재급유하는 동안 승객이 기내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 기할 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객들에게 재급유 하는 것을 통보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스위치를 작동하는 경우 발화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2. “금연” 표시와 비상구 표시등을 작동시킨다.
 3. 항공기에 계단(Integral Stairs)이 장착된 항공기는 그 계단을 내리고 외부계단을 사용할 때는 보통 여객의 탑승 및 하기에 사용되는 주요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 시 장애가 없어야 한다. 기후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운용상 이유로 출입문을 닫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에도 절대 출입문을 잠그지 말아야 하며 재급유를 하는 동안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을 때는 기내 승무원이 항상 출입문에 대기하여야 한다.
 4. 탑승교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계단이나 외부계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승강대 같은 것이 사용될 경우에는 항공기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Escape slide)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지상 장비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기내 승무원은 비상사태 시 항공기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한 항공기의 비상대피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승무원과 조종사는 항공기내에 남아 필요시 대피지시를 하여야 한다.
 5. 만일 급유 시 연료증기가 항공기 내부에서 발견되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항공기내에서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재급유와 청소작업은 상황이 다시 허락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6. 지상서비스 활동과 항공기내에서 작업 시 비상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7. 재급유중 탑승 및 하기를 하는 경우 이들의 통로는 연료증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피해야 하고 이동은 책임자의 감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8. “금연” 규칙은 이러한 여객의 이동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9. 송·수신은 재급유를 감독하는 지상조업원과 항공기 승무원간 항공기 기내 통신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지상 장비는 다음과 같이 위치하여야 한다.
 - 가. 신속한 대피를 위해 충분한 수의 비상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비상사태 시 사용될 각 비상구로부터 대피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③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있거나 탑승 또는 하 기하고 있을 때 항공기로부터 연료를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재급유 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장치는 항공기의 연료제거시스템에 통합되지 않는다.

제94조(급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발생원인 및 제거 방법)

- ① 급유 시 여러 형태의 전위차로 인하여 스파크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및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② 조건이 맞는 경우 정전기가 항공기 또는 급유차량의 표면에 축적되기도 한다. 급유차량과 항공기를 연결하여 둘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스파크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 ③ 항공기와 급유차량의 깨끗하고 도장 되지 않은 금속표면의 한 부분을 전도체(Conductor)로 연결하며, 전기적으로 전도를 하는 연료 호스가 보통 정전기 전하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전도성이 있는 이러한 호스는 항공기와 급유차량 사이의 적절한 본딩(Bonding)방법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날개 위에서 재급유를 할 경우 호스의 노즐은 보통 연료 주입구 뚜껑이 제거되기 전에 항공기에 전도체로 본딩(Bonding)되어야 한다. 그러나 날개 아래에서 급유할 경우에는 항공기의 이음쇠와 연결장치(Coupling)사이의 자동적인 금속 대 금속의 접촉으로 별도의 전도체를 사용하여 본딩(Bonding)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⑤ 급유차량의 연결 쇠사슬과 급유차량 또는 항공기의 전도성 타이어는 때때로 또 다른 안전장치로 사용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항공기와 차량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전기 전하가 각각의 타이어 또는 연결 쇠사슬을 통하여 항공기 및 차량으로부터 방출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⑥ 추가 안전조치로서 항공기와 차량의 개별적인 전기적 접지(Electrical Grounding)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도체를 이용한 본딩(Bonding)이 끊어지거나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본딩(Bonding)하는데 사용되는 전도성의 선을 적절히 정비하고 검사한다면 개별적인 접지는 무시될 수도 있다.

⑦ 전기적 접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전기적 접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급유 중 발생하는 정전기 방출을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전도체로 본딩(Bonding)

나. 날개 위에서 연료공급을 하기 위하여 연료호스의 노즐을 전도체로 항공기에 본딩(Bonding)

2. 전기의 접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급유차량의 접지(Grounding)

나. 항공기의 접지(Grounding)

다. 항공기와 급유차량을 전도체로 본딩(Bonding)

라. 날개 위에서 연료공급을 하기 위해서 연료호스의 노즐을 전도체로 항공기에 본딩(Bonding)

마. 연료공급이 끝나면 역순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⑧ 항공기의 전원공급장치 내에 누전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유차량과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본딩(Bonding)을 하여야 한다.

⑨ 항공기 접지는 선과 급유차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 급유 시설물이 사용되는 경우 방전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행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급유전선을 항공기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⑩ 급유시설의 접지장치와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스템의 접지장치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절 급유시설의 관리·운영

제95조(관련 근거) 급유시설은 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96조(안전관리자) 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 시에 대한 안전유지, 시설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7조(세부 관리·운영지침)

① 저장탱크

1. 누유 검사관은 잘 관리되고 탱크는 누유가 없을 것
2. 후로팅 섹션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로딩 압 작동상태는 양호할 것
4. 도장 부분의 손상 및 변색된 부분이 없을 것
5. 방유제의 집수조에 유류는 고이지 않을 것

② 하이드라트 펌프

1. 운전 중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흡입 및 토출측 압력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압력 게이지 지침은 정상적일 것
4. 패킹 및 메카니칼 씰 부분의 누유 발생은 없을 것
5. 윤활유의 공급은 정상레벨에 있을 것
6. 윤활유는 변색 및 오염되지 않을 것

③ 여과기

1. 여과기의 차압(1.1kg/cm²이하)상태는 정상적일 것
2. 감지라인에서 누유 되는 부분이 없을 것
3. 수분제거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④ 유량계

1. 작동 시 이상소음 발생이 없을 것
2. 연결부위에서 누유는 없을 것
3. 유량계 검·교정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 할 것

⑤ 배관

- 1. 연결부위에서 누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
- 2. 배관의 도장 부분에 손상 및 변색이 없을 것
- 3. 접지선 연결 상태는 양호할 것
- 4. 볼트·너트는 풀림이 없이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⑥ 밸브 및 부속류

- 1.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
- 2. 밸브는 개폐가 쉽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3. 스트레이너(Strainer: 이물질 유입을 막는 여과장치)의 여과망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찌꺼기 등 막힘이 없을 것

⑦ 하이드란트 급유전

- 1. 급유전 내부는 청결을 유지할 것
- 2.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
- 3. 마킹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 유지 할 것

⑧ 밸브박스

- 1.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
- 2. 밸브박스 내부는 청결을 유지할 것
- 3. 각종 기기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4. 지하수가 유입되지는 않도록 할 것
- 5. 누유로 인한 가스 발생시 환기를 실시할 것

⑨ 비상차단장치

- 1. 외부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2. 램프 점등 및 점멸 상태는 양호할 것

⑩ 공기압축기

- 1. 작동은 정상적인 것
- 2. 각종 계기류의 지시치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
- 3. 가동 중 이상소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

⑪ 유수분리시설

- 1. 기기 운전상태는 양호할 것
- 2. 공정상의 이상은 없을 것
- 3. 처리수의 처리 농도는 정상적인 것
- 4. 국가 환경감시망으로의 전송상태는 양호할 것

⑫ 입·출하대

- 1. 배관 호스 및 후랜지 연결부위에 누유가 없을 것
- 2. 접지설비는 이상이 없을 것
- 3. 배수로 집수조에 유류가 고이지 않을 것

⑬ 계장시설

- 1. 판넬류 청소 및 관리상태는 양호할 것
- 2. 현장계측기 작동상태는 정상적인 것
- 3. 탱크 유량측정기 작동상태는 정상적인 것
- 4. 오일 검·교정 시스템 관리 및 작동상태는 양호할 것
- 5. 유량계 검·교정 상태는 정상적인 것
- 6. 압력게이지 검교정 상태는 정상적인 것
- 7.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는 양호할 것
- 8. 자동 콘트롤 밸브는 정상적인 것

제5절 기타 유류저장시설의 관리·운영

제98조(관련근거) 기타 유류저장시설은 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99조(안전관리자)

- 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관계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 시에 대한 안전유지, 시설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세부 관리·운영 지침)

- ① 위험물저장소의 표지
 - 1. 위험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표지는 가로 0.6m이상 세로 0.3m이상의 것으로 할 것
 -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2. 운전 중 제조소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기준에 의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게시판은 가로 0.6m이상, 세로 0.3m이상으로 할 것
 - 나. 게시판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취급 최대수량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 다.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3. 운전 중 제조소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의 형태는 한 변이 가로 0.3m이상이고, 다른 한 변이 0.6m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나.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저장시설

1. 연료 레벨게이지 지시는 정상을 유지할 것
2. 주입구 및 저장소 주변에 가연물질이 방치되지 않을 것
3. 탱크 및 배관은 누유가 없을 것
4. 누유검사관은 잘 관리되고 탱크는 누유가 없을 것
5. 탱크는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
6. 전극봉의 기능은 정상적일 것
7. 저장탱크 맨홀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을 것
8. 배관 관통부 주위로 누수가 되지 않을 것
9. 탱크 맨홀의 볼트 너트는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10. 탱크 보호벽은 균열, 파손 및 누수가 없을 것
11. 환기 및 배출설비는 정상을 유지할 것

③ 배관 및 기타

1. 연료부위에서 누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
2. 배관의 도장 부분에 손상 및 변색이 없을 것
3. 접지선 연결 상태는 양호할 것
4.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이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5. 주입구 캡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6. 공기변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망으로 보호될 것
7. 연결부위에서 누유 발생이 없을 것
8. 밸브는 개폐가 쉽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9. 스트레이너의 여과망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찌꺼기 등 막힘이 없을 것
10. 유량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11. 패널류 청소 및 관리상태는 양호할 것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9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2. 06.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행정규칙의 폐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43호),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04호), 공항안전자체점검 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313호), 공항 내 위험물 취급 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313호)은 폐지한다.

[별표 1]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시간(제5조, 제7조 관련)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시간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순번	과목	주요 내용	시간
-	6개 분야	-	35 시간
1	공항안전법령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성체계 및 내용 공항분야 지침·기준·규정 위반행위제재의 종류와 적용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4
2	공항안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안전정책 공항운영증명제도(ICAO Doc.9774, Manual on Certification of Aerodrome) 공항운영규정 작성 및 검사 기준(FAA Order 5280.5C, Airport Certification Program Handbook) 	7
3	공항안전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이동지역 관리업무 및 안전(ICAO Doc 9137, Airport Service Manual) 국가안전프로그램의 이해(SSP)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해(SMS) 공항비상계획(ICAO Doc 9137, Airport Emergency Planning) 공항시설계획 항공기 구조 및 소방 	8
4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장시설 설치기준(ICAO Annex 14, Aerodromes) 표지(Markings) 	7
5	장애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물의 제한 등, 차폐 기준(ICAO Annex 14, Obstacle Limitation Surface, Doc. Control of Obstacle) 비행안전 확인 	5
6	항공등화 기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 등화(Lights)의 이해 	4

2 직무교육훈련(5년 이상 35시간, 5년 미만 70시간)

순번	과목(주요 내용)	5년 미만 경력 (70시간)	5년 이상 경력 (35시간)
1	이동지역 유지보수분야 검사 절차	○	
2	이동지역 작업안전 검사절차	○	
3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관리 검사절차	○	
4	계류장 안전 검사절차, 급유안전관리	○	
5	위험물 취급 검사절차	○	
6	구조 및 소방분야 검사절차	○	
7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 검사절차	○	
8	자체점검프로그램 검사절차	○	
9	착륙대 및 유도로대 검사절차	○	○
10	장애물 검사절차	○	○
11	저시정 운영 검사절차	○	○
12	야생동물 위험관리	○	○
13	제설계획 검사절차	○	○
14	공항비상계획 검사절차	○	○
15	공항운영규정 등 서류검사 절차	○	○
16	표지 및 표지판 등 시각지원시설 검사절차	○	○
17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검사절차	○	○

3. 정기/재자격 교육훈련(24개월 주기, 14시간)

과목	주요 내용
안전관리시스템	◦ 국가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해
공항안전 운영기준	◦ 공항운영증명제도 ◦ 공항운영규정 작성 및 검사 기준 ◦ 공항이동지역 관리업무 및 안전 ◦ 공항비상계획 ◦ 공항제설계획 ◦ 항공기 구조 및 소방
장애물 관리	◦ 장애물의 제한 등, 차폐 기준 ◦ 비행안전 확인

[별표 2] 공항운영검사 점검표(Checklist)(제13조, 제27조 관련)

공항운영검사 점검표(Checklist)

공항명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검 항목		S	U	N/A or N/I
공항자료(AOS 제2장)				
일반 (제1절)				
공항 표점 (제6조)				
1. 공항 표점의 설정방법이 적절한가?				
2.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도, 분, 초)되었는가?				
공항 및 활주로 표고 (제7조)				
1. 공항표고 위치의 높이와 지오이드 기복 측정 및 보고가 적절하게 되었는가?				
공항 표준온도 (제8조)				
1. 공4항 표준온도 측정(최근 5년간 평균치) 및 보고가 적절하게 되었는가?				
공항 제한 및 관련 정보 (제9조)				
1. 공항의 제한 및 관련정보가 작성되어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2.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되어야 할 공항 제한 및 관련정보가 빠짐없이 보고되었는가?				
3. 활주로 시단, 유도로중심선 및 항공기 주기장의 지리적 좌표 단위(도, 분, 초, 100분의1초)가 적절한가?				
4. 제2지역 및 제3지역에 있는 장애물의 지리적 좌표 단위(도, 분, 초, 10분의 1초)가 적절한가?				
5. 항공정보품질관리기준(별표1외2)에 의거 항공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자료를 제공하였는가?				
포장면 지지 강도 (제10조, 별표1)				
1. 포장의 지지강도 분류기준(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이동지역 내 포장면의 지지강도를 측정 하였는가?				
비행전 고도계 점검위치 지정 (제11조)				
1. 비행 전 고도계 점검위치(계류장)선정이 적절한가?				
2. 비행 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가 평균표고로서 미터(m)단위로 표시되었는가?				
3. 비행 전 고도계 점검위치의 표고와 평균표고와의 차이가 3m 이내인가?				
공시거리(제12조)				
1. 이륙활주가용거리(TORA)가 적절하게 계산되어 공시되었는가?				
2. 이륙가용거리(TODA)가 적절하게 계산되어 공시되었는가?				
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가 적절하게 계산되어 공시되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4. 착륙가용거리(LDA)가 적절하게 계산되어 공시되었는가?			
필수공항정보양식의 작성 및 관리 (제13조, 별지 1)			
1. 필수공항정보가 별지1의 서식에 의거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2. 필수공항정보(변경사항 포함)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는가?			
항공정보자료 (제14조)			
1. 항공정보품질관리기준(별표1의2)에 따라 항공정보자료를 관리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 및 확인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 재 등재 요청 하였는가?			
2. 항공정보자료의 정확도는 95% 이상의 신뢰수준을 충족하고, 점검표를 이용하여 신뢰수준 확보결과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1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3. 항공정보자료가 등급별 신뢰도를 충족하고 있는가?			
4. 전자 항공정보자료의 보호가 CRC(Cyclic Redundancy Check)에 의해 전체적으로 감시되고 있는가?			
5.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지리적 좌표는 WGS-84좌표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 되었는가?			
6. 현장에서 측정된 비행단계용 운항자료의 정확도는 항공정보품질관리기준(별표1의2)의 편차범위 내에 있는가?			
7. 비행장에서 측정된 특정위치의 표고(평균 해수면 기준)와 항공정보품질관리기준(별표1의2)에서 요구하는 위치의 지오이드 기록을 결정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 하였는가?			
8. 항공정보자료 처리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공항운영계획 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15조)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에 수록하여야 하는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계획 정보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였는가?			
2. 공항개시 최소 30일 전까지 공항운영계획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변경된 경우 매 반기별로 보고하였는가?			
공항 상태보고 (제2절)			
공항상태정보의 수집 및 통보 (제16조)			
1. 이동지역의 상태와 관련시설의 운용상태에 관한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는가?			
2. 공항상태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고 있는가?			
3. 항공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가?			
공항상태보고의 기록 및 보관 (제17조)			
1. 공항상태정보에 관한 조치내용의 기록 및 보관(12개월)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공항운영규정 (AOS 제3장)			
일반 (제15조)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규정을 그 내용별로 분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였는가?			
2. 관계직원이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3. 업무분야별 책임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가?			
4. 공항의 운영과 관계되는 공역 등에 대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ATS)기관과 협력하여 항공교통업무 관련 고려사항이 공항운영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였는가?			
5. 공항의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이나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였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공항운영규정의 제출 및 인가 등 (제19조)			
1. 원본의 보관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			
2. 각 페이지에 국토교통부의 경인을 받았는가?			
3.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는가?			
4.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용개시일 25일 이전까지 반드시 공항운영규정 변경을 신청하였는가?			
공항운영규정의 관리 (제20조)			
1. 공항운영규정과 관련된 모든 소속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이 동 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는가?			
2. 공항운영규정 개정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3. 공항운영규정 원본과 사본이 최신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4. 공항운영규정 사본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소지자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5. 개정기록표 및 유호목록표의 기록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안전목록 및 종사자 이용방법에 관한 설명이 서문에 수록되었는가?			
공항운영규정의 양식 및 작성방법 (제21조)			
1. 규정의 구성체계와 양식이 적합한가? (본 규정과 부속서 분리의 적합성 및 부속서 안내표 삽입여부 포함)			
2. 규정(세부운영절차 포함)의 내용구성이 적합한가?			
3. 공항운영자의 서명이 있는가?			
4. 개정하기 쉬운 형태인가?			
5. 각 페이지에 제정 및 개정일자를 기록하였는가?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 (제22조)			
1. 공항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공항운영 (AOS 제4장)			
자격관리 (제1절)			
자격관리 요건 (제27조)			
1. 공항운영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확보·배치하였는가?			
교육훈련 (제28조)			
1. 자체 검사자, 구조소방직원, 계류장 관리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2. 구조소방직원, 계류장 관리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성(초기교육, 직무훈련, 정기교육) 되어 있는가?			
3. 자체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성(자격부여교육, 정기교육, 재자격부여교육) 되어 있는가?			
4. 교육훈련 시간 및 훈련주기가 기준에 충족하는가?			
5. 교육훈련 교관이 기준에서 정한 자격자로 지정되었는가?			
6. 구조·소방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절의 내용을 포함하였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7.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보관(12개월)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제2절)			
점검주기 (제29조)			
1.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포장지역)를 준수하고 있는가?			
점검방법 (제30조)			
1. 이동지역 점검표를 적절하게 작성·활용하고 있는가?			
2. 점검 방법이 적절한가?			
점검절차 및 점검 (제31조 ~ 제34조)			
1. 점검절차(ATC협조, 활주로 및 유도로의 출입과 횡단, 무선교신, 안전수칙 등)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포장지역 점검항목이 적절한가?			
3. 비포장지역 점검항목이 적절한가?			
4. 잔디지역에 대한 제초작업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5.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 잘려진 풀이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6. 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7. 불법적인 지장물이 방지되어 있지 않는가?			
8. 불가피하게 허용된 지장물에 대하여 표지 및 장애등이 설치되었는가?			
9. 점검일지 양식 및 기록상태가 적절한가?			
보고 및 조치 (제35조)			
1. 활주로 점검도중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등기구 파손 및 항공기 부품 발견 등) 발견 시 즉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되고 있는가?			
2. 장애 상태 통보조치가 적절한가?			
3. 활주로 상에 장애지역이 있을 경우 용이한 식별을 위하여 활주로노면 등 바깥 지역에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4. 활주로 상에 물이 존재하는 경우 지정된 용어(DAMP, WET, WATER PATCHES, FLOODED)를 사용하고 있는가?			
5. 활주로상의 눈, 진창눈 또는 얼음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히 관리되는가?			
활주로 상태보고 (제36조)			
1. 활주로 표면 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활주로 상태보고를 하는가?			
2. 활주로 상태보고를 활주로의 오염되지 않을 때까지 중대한 변화를 계속 반영하는가?			
3. 활주로 표면상태는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에 따라 활주로 상태부호(RWYCC)와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 및 보고 하고 있는가?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제37조)			
1.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2.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활주로 마찰측정을 실시하였는가?			
3. 정기마찰측정 및 평가를 실시할 경우(표2)에서 정한 최소주기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4. 활주로 마찰측정은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5. 각 활주로 마찰측정결과를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였는가?			
6. 마찰측정결과는 최소 5년간 보관하였는가?			
7. 마찰측정장비를 장비운영교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이동지역 유지보수 (제3절)			
일반 (제38조)			
1. 공항의 제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유지보수계획 및 적용은 인적요소를 준수하고 있는가?			
도면의 관리(시각지원시설) (제39조)			
1. 유지보수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준공도면을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는가?			
2.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가?			
3. 1년에 1회 이상 도면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있는가?			
표지의 관리 (제40조)			
1. 포장지역의 표지 재도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2.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가?			
포장구역의 관리 (제41조)			
1. 포장면의 가장자리와 인접한 포장부분 또는 인접한 노면과의 단차가 기준(7.5cm)을 초과하는 지역은 없는가?			
2. 포장면에 포트홀 기준(깊이 7.5cm, 내측면 기울기 45°, 직경 12.5cm)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가?			
3. 포장면이 항공기의 방향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이 변화한 곳은 없는가?			
4. 포장면이 함몰되거나 배수상태 불량으로 물이 고여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항공기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곳은 없는가?			
5. 이·착륙가용거리로 공식된 활주로 구간에 물이 고이는 웅덩이(깊이 13mm)는 없는가?			
6. 활주로 또는 활주로 일부에서 배수특성이 좋지 않을 경우 마찰측정 실시 및 보수조치 등을 하였는가?			
7. 유도로 갓길에 돌맹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제거되어 있는가?			
8. 항공기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포장면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중단안전구역의 관리 (제42조)			
1. 청결하고 경사도가 적절한가?			
2. 잠재적으로 위험한 바퀴자국, 언덕, 지표함몰 또는 지면변화가 없는가?			
3. 물 고이는 지역이 없는가?			
4. 지지강도(건조한 상태 하에서 구조소방차량 지지)가 적절한가?			
5. 불법 장애물이 없는가?			
6. 허용된 설치물의 단차가 7.5cm를 초과하는 곳은 없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7. 충격 시 부러지기 쉬운 형태인가?			
활주로 포장 덧씌우기 (제43조)			
1. 활주로포장 전구간의 덧씌우기가 완료되기 전에 활주로는 운영상태로 복귀되는 경우 임시경사면은 기준(두께 5cm 이하 : 0.5~1%, 5cm 이상 : 0.5% 이하)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2. 활주로포장 덧씌우기 작업 시 안전조치 및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였는가?			
이동지역의 지지강도 (제44조, 별표 1)			
1. 운항 중인 모든 항공기의 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지지강도를 지니고 있는가?			
2. 포장강도를 지지강도 분류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는가?			
3. 측정된 포장강도(ACN/PCN)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였는가?			
4. 정기적으로 포장평가를 하고 적절한 보수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PCN보다 높은 ACN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는가?			
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제45조)			
1. 포장(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지역)면에 마찰력에 해로운 오염물질(눈, 얼음, 물웅덩이, 진흙, 모래, 기름, 고무 등)이 없는가?			
2. 포장(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지역)표면에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 등에 해로운 파편(돌, 종이, 모래, 금속, 포장재 조각 등)이 없는가?			
활주로의 고무 제거 (제46조)			
1. 활주로 고무제거 최소주기에 따라 정기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2. 고무제거 작업방법이 적절한가?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제47조)			
1. 활주로 최소마찰수준 이하일 때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는가?			
2.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동지역 작업통제와 안전조치 (제48조)			
작업통제의 책임 및 의무 (제48조)			
1. 공사 및 보수작업의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진행 중인 작업의 통제, 조정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가?			
일상 유지보수 작업 (제49조)			
일상적인 보수작업 절차(이동지역 출입인가, 무선교신장비 휴대, 공항의 관제탑 및 계류장 관리부서)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소규모 공사 / 유지보수작업 (제50조)			
1. 소규모의 공사 또는 보수작업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작업 종료 후 작업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대규모 공사 / 유지보수작업 (제51조)			
1. 공사시행 최소9주 전에 시행계획을 지방항공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는가?			
2. 대규모의 공사 또는 보수작업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착륙대/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 (제52조)			
작업 시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을 준수하는가?			
이동지역 관리기준 수립 (제53조)			
1. 차량 및 장비의 등록과 안전도 검사 등에 관한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운전자의 승인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 차량 및 장비의 운행규칙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4. 운전자 교육훈련 내용은 적절한가?			
기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제54조)			
1. 기동지역 출입 차량 및 장비의 통제조치(출입허가, 무선교신장비, 운전자격, 공항평면도비치, 차량표지 및 조명 등)가 적절한가?			
2. 차량통제에 필요한 표지 및 등화, 표지판 제공 및 관리가 적절한가?			
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 (제55조)			
1. 계류장 출입 차량 및 장비의 통제조치(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 부착, 운전자 교육)가 적절한가?			
2. 차량 안내표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적절한가?			
출입통제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수립 (제56조)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항보안계획을 수립되어 있는가?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 (제57조)			
일반 (제57조)			
1. 다음의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조치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가. 교통통제업무			
나. 항공기 질서유지업무			
다. 항공기 후방견인과 엔진시동 허가			
라. 지상이동차량 통제업무			
마. 주기장 배정업무			
바.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사.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아. 급유안전조치			
자. 계류장 청결유지			
차.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카.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2. 다음의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무선 통신설비 구비			
나. 차량 이동 및 운행규칙 수립			

점검 항목	S	U	N/A or N/I
다. 사람과 차량의 제한			
라. 긴급 출동 차량의 우선권 부여			
마. 차량 및 항공기의 진로양보 우선순위 적용			
바. 항공기 주기장에 대한 시각적 감시			
사. 계류장 내 위험지역 또는 제한지역의 표지 및 조명 설치			
아. 항공기 후면에 지상조업도로 등 이동물체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규칙 제정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제58조)			
1.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는가?			
2. 지상조업사와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였는가?			
3. 지상조업사와의 서비스협약의 이행여부 점검과 조업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항공기 주기장 배정 (제59조)			
1. 주기장 배정기준을 적절히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2. 주기장별 사용가능기종(또는 등급)이나 제약사항 등이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되어 있는가?			
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제60조)			
지상유도안내업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1. 수신호 유도업무			
2. 차량선도 유도업무			
3.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제61조)			
1. 제트분사로부터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제트분사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 환기조치			
나. 차량 및 장비의 정치방법			
다. 파편 등의 제거			
라.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			
마. 기타 공항 특성에 필요한 사항			
2. 제트분사로부터 보호거리(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56km/h까지 감소되는 지점)가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3. 주기장 진·출입 방법 및 항공기 이동 동선체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제61조)			
1. 계류장에서 강풍으로부터 항공기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검토 및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되었는가?			
2. 결박시설의 설치는 적절한가?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제62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계류장에서 항공기 급유 시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2. 안전조치 기준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었는가?			
가. 흡연 또는 불꽃 발생 행위금지			
나. 급유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공급장치 시동금지			
다. 항공기에 승객 탑승 또는 승·하기 도중 급유시 조치			
라. 항공기와 급유차량간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의 병행			
마.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에 대한 훈련을 받은 직원 확보			
바. 급유 감독자의 감시			
사. 화재 또는 연료 누유시 조치			
3. 항공기 지상조업 중에는 연료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계류장의 청결유지 (제63조)			
1. 계류장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2.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 계류장 청결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제64조)			
1. 계류장 내 지상근무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있는가?			
2. 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활동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가. 차량운전자의 운전승인 여부			
나. 차량 통행로 및 주차구역 준수여부			
다. 차량 제한속도 및 정치위치 준수여부			
라. 차량, 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및 부착상태			
마. 기타 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			
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의 발생보고 (제65조)			
1. 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되었는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제66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수립(제66조)			
1. 공항 이동지역내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제67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설계 시 다음사항이 고려되었는가?			
1. 항공교통밀도			
2. 운영시정 조건			
3. 조종사 적응도			
4. 공항 평면의 복잡성			

점검 항목	S	U	N/A or N/I
5. 차량의 이동상태			
시설 및 운영요건 (제68조)			
1.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이 다음사항을 충족하는가?			
가. 비행장 표지(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5장) 및 표지판기준(별표6),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각지원시설의 설치			
나. 사용 중인 활주로에 항공기 및 차량의 침입방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설계			
다. 이동지역에서 항공기간, 항공기와 차량 또는 장애물간의 충돌 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라. 유도로 중심선등 점등에 의하여 지시된 유도경로는 점등된 정지선등에 의해 종료(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만 적용)			
마. 제어회로는 항공기의 앞쪽에 위치한 정지선등이 점등될 때 정지선등을 넘어선 유도로 중심선등의 해당구역은 소등(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만 적용)			
바. 정지선등이 소등되면 항공기의 앞쪽 유도로 중심선등은 점등(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만 적용)			
사. 활주로가시범위가 350m 미만인 활주로를 사용하는 공항에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아. 절차와 시설에 의해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밀도와 운영조건일 때 공항에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 (제69조)			
1.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2. SMGCS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였는가?			
저시정운영절차 (제70조)			
1. 활주로가시범위가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운영되는 공항의 경우, 저시정운영절차가 마련되었는가?			
2.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시설·장비를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SMGCS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가?			
3. 저시정운영절차 관련 기관별, 담당자별 임무 및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4. 저시정운영시 공항시설 및 운영상태 전반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자 및 통제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저시정운영절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저시정 이동경로도면이 작성되어 있는가?			
가. 항공기의 활주로 및 유도로 전·출입 경로			
나. 항공기의 계류장 내 전·출입 경로			
다. 구조 및 소방차량 이동 경로			
라. 계류장 내 차량 및 장비 이동 경로			
교육 및 훈련 (제71조)			
1. 저시정운영과 관련된 소속직원, 이동지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임주업체 직원 등에게 저시정운영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가?			
장애물의 통제 (제72조)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제72조)			
1.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 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 기준에 따르고 있는가?			
이동장애물의 제한기준 (제73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활주로 시단 후방 길이 1,200m, 폭 300m(비계기 150m)의 범위 내 진입구역에 대하여 이동장애물의 안전 영향 유무를 고려하였는가?			
무장애구역의 기준 (제74조)			
1. 고정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았는가?			
장애물 관리 (제75조)			
1. 공항시설법 제34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고 있는가?			
공항시설 (제8절)			
공항의 시설기준 (제76조)			
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행장표지 등 공항의 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고시)에 따라 설치되었는가?			
착륙대 내의 물체 등 (제77조)			
1. 예외로 인정된 착륙대 내의 개거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AIP 수록 및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였는가?			
유도로대 내의 물체 등 (제78조)			
1.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의 폭 부족구간에 대한 위치 등에 관한 정보는 AIP 수록 및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였는가?			
유도로대의 폭 (제79조)			
1.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의 개거 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AIP 수록 및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였는가?			
제방방수시설의 설치 (제80조)			
1. 제방·방방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항 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이동지역운영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관련정보를 AIP에 수록하였는가?			
공항사용의 제한(제81조)			
1.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항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제82조)			
1.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항시설 또는 운영절차를 비행안전 확인을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시각지원시설 (제9절)			
항행안전시설 보호 (제83조)			
1. 전파 또는 시각적 장애 시설이 없는가?			
2. 파손, 도난, 망실되지 않도록 보호되는가?			
3. 전파장애 또는 시각적 간섭에 관한 사전 예방조치가 실시되는가?			
지향신호등 관리·운영 (제84조, 별표 3)			
1. 관제탑 또는 계류장관제소에 지향신호등이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2. 불빛은 적색, 녹색, 백색이 선명하게 표시되는가?			
3. 조작 스위치는 원활(필요한 목표 수동 조준 가능)하게 작동하는가?			
4. 광도는 6,000칸델라 이상인가?			
5. 광선의 폭은 1° 이상 3° 이하인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풍향등 관리·운영 (제85조, 별표 4)			
1. 풍향등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2. 풍향등 관리·운영이 적절한가?			
3. 지시기의 섬유제품 길이 3.6m 이상, 넓은 쪽의 지름 0.9m 이상, 짧은 쪽의 지름 0.3m 이상이 되는가?			
4. 지시기의 색상은 적합한가? 가. 단일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 오렌지색 또는 백색 나. 색상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 오렌지색과 백색, 적색과 백색, 흑색과 백색			
5.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섯줄의 무늬로 처음과 마지막 줄무늬는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가?			
6. 풍향지시기 중 적어도 한곳에는 내경의 지름이 15m이고 폭이 1.2m인 백색 원형띠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7. 조영등이 부착된 풍향등(야간 운영공향)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8. 풍향등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경우 풍향등의 가장 높은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표지의 설치 (제86조,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1. 일반			
가. 활주로표지의 중단 1) 2분 이상의 활주로 교차부에서 활주로의 표시를 제외하고 보다 중요한 활주로의 표시는 설치하고, 그 외 활주로 표시는 중단하였는가? (중요한 활주로의 표시는 설치 또는 중단 가능)			
2) 활주로표지 우선순위가 준수되었는가?			
3) 활주로와 유도로 교차부에서 유도로 표지를 중단하고 활주로 표시(연선은 중단 가능)를 설치하였는가?			
나. 표지의 색상 및 특성 1) 밝은 색(콘크리트 포장 등) 표면 위의 활주로 표시는 흑색 윤곽선(15cm)이 설치되어 있는가?			
2) 활주로 표시는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3) 유도로 표시, 활주로 회전패드표지 및 항공기 주기장 표시는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야간 운영공향에서 야간식별이 필요한 표지에 유리알이 포함된 도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였는가? 라. 표지에 의해 불규칙한 제동작용을 유발하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표지도료를 사용하였는가?			
【활주로 상의 표지】			
2. 활주로 명칭표지			
가. 시단표지와 12m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명칭표지의 크기는 9m로 설치되어 있는가?(신설 또는 전면 덧씌우기 시 18m)			
다. 두 자리 숫자(평행 활주로 문자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가?			
3. 활주로 중심선표지			
가. 하나의 선과 간격을 더한 길이는 50m 이상 7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신설 또는 전면 덧씌우기 시 선의 길이와 간격은 각각 30m)			
나. 선의 폭 1) CAT-II, III : 0.9m 이상 2) 분류번호 3, 4인 비정밀활주로 및 CAT-I : 0.45m 이상 3) 분류번호 1, 2인 비정밀활주로 및 비계기 : 0.3m 이상			

점검 항목	S	U	N/A or N/I
4. 시단표지			
가. 활주로 시단선이 있는 경우 시단에서 9m(이미 시단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6m 가능)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로 폭에 따른 줄무늬 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1) 활주로 폭 18m : 줄무늬 수 4 2) 활주로 폭 23m : 줄무늬 수 6 3) 활주로 폭 30m : 줄무늬 수 8 4) 활주로 폭 45m : 줄무늬 수 12 5) 활주로 폭 60m : 줄무늬 수 16			
다. 줄무늬의 횡 구간 설치범위는 적합한가?(가장 바깥쪽 줄무늬의 외곽선이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3m 이내 지점과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으로 27m 중 활주로 가장자리와 가장 가까운 지점)			
라. 줄무늬의 길이는 30m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신설 또는 전면 덧씌우기 시 45m 이상)			
마. 줄무늬의 폭과 간격은 약 1.8m로 설치되어 있는가?(활주로 중심선과 가장 가까운 줄무늬 사이의 간격은 2배)			
바. 시단이 영구적으로 이설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표지 1) 시단표지 2) 시단선 3) 화살표(이설시단 앞부분) 4) 폐쇄표지(이설시단 앞부분이 항공기 이동에 부적합한 경우) 5) 갈매기표지(이설시단 앞부분이 정지도로로 사용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이동은 할 수 없는 경우)			
사. 시단이 임시적으로 이설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표지 1) 시단선 2) 화살표(임시이설시단 앞부분) 3) 산형(人) 4) 폐쇄표지(임시이설시단 앞부분이 항공기 이동에 부적합한 경우) 5) 표시물(임시이설시단선 측면)			
5. 시단선			
1. 시단선의 폭이 3m로 설치되어 있는가?(시단 이전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설치)			
6. 목표점표지			
가. 분류번호 2,3,4인 계기활주로의 각 진입부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시단에서 표지 시점까지의 거리 1) 진입각지시등(PAPI)이 있는 경우 - 표지의 시작점이 진입각지시등과 일치하는가? 2) 진입각지시등이 없는 경우 가) 착륙가용거리 1,200m 이상~2,400m 미만 : 300m 나) 착륙가용거리 2,400m 이상 : 400m			
다. 줄무늬의 길이 1) 착륙가용거리 1,200m 이상 : 45m~60m 2) 착륙가용거리 1,200m 미만 : 45m			
라. 줄무늬의 폭 1) 착륙가용거리 1,200m 이상 : 6m~10m 2) 착륙가용거리 800m 이상~1,200m 미만 : 6m 3) 착륙가용거리 800m 미만 : 4m			
마. 줄무늬 내측변 간격 1) 착륙가용거리 1,200m 이상 : 18m~22.5m 2) 착륙가용거리 800m 이상~1,200m 미만 : 9m 3) 착륙가용거리 800m 미만 : 6m			
7. 접지구역표지			
가. 분류번호 2,3,4인 포장된 정밀진입 활주로의 접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나. 접지구역표지 쌍의 수 1) 착륙가용거리 2,400m 이상 : 6 2) 착륙가용거리 1,500m 이상~2,400m 미만 : 4 3) 착륙가용거리 1,200m 이상~1,500m 미만 : 3 (1,500m 이상~2,400m 미만의 활주로에서 (2)형식을 따를 경우 3줄 표지의 쌍은 1개소, 2줄 표지의 쌍은 2개소, 1줄 표지의 쌍은 1개소를 설치, 1,500m 미만의 활주로는 (1)형식을 따른다)			
다. 표지의 길이는 22.5m 이상, 폭은 3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표지(제2형식)의 폭은 1.8m 이상, 간격은 1.5m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각 표지는 활주로 시단을 시점으로 150m의 중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접지구역표지의 일부가 목표점표지와 일치하거나 목표점표지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표지는 삭제하였는가?			
8. 활주로연선표지			
가. 활주로연선표지의 외측 가장자리가 활주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로연선의 폭 1) 활주로 폭 30m 이상 : 0.9m 이상 2) 활주로 폭 30m 미만 : 0.45m 이상			
다. 활주로 연선표지는 활주로는 활주로 회전패드사이에서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9. 경계선			
가. 시단이 이설된 활주로는 활주로 앞쪽에 있는 제트분사대, 정지로, 유도로와 구별하기 위하여 경계선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선(황색)의 폭은 1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0. 활주로갓길표지 (필요한 경우에 설치)			
가. 표지의 폭은 0.9m 이상, 간격은 30m로 설치되어 있는가?			
나. 줄무늬는 활주로 중심선에 대하여 45°의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지는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1. 시단이전표지			
가. 활주로 시단 이전의 포장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 시단이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나. 선의 폭은 0.9m 이상, 간격은 30m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시단에 접한 부분은 표지의 중간부분에서 시작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라. 표지는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2. 활주로 회전패드표지			
가. 항공기가 180°회전하여 활주로 중심선에 일직선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로 중심선과 회전패드표지와 교차각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다.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장선이 설치되어 있는가? 1) 분류번호 3,4 : 60m 이상 2) 분류번호 1,2 : 30m 이상			
라. 표지의 폭(15cm 이상)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3.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가. 활주로 진입 전 유도로와 교차하는 활주로에서 주로 유도로로 사용하는 활주로는 정지위치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나. 활주로 중심선에서 최소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설치되었는가? 1) 비계기, 비정밀 : 75m 2) 정밀 : 90m 3) 이륙활주로 : 75m			
다. 2개 이상의 정지위치가 있는 경우 활주로는 근접한 표지는 A형, 멀리 있는 표지는 B형(사다리형)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선의 폭과 간격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1) 선의 폭 가) A형 : 0.15m(가시성 증대 0.3m) 나) B형 : 0.3m 2) 선의 간격 가) A형 : 0.15m(가시성 증대 0.3m) 나) B형 : 0.6m(가시성 증대 1.5m) 3) 파선의 길이·간격 : 각 0.9m			
마. 표지는 황색(밝은 색의 포장면에서는 흑색 윤곽선)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유도로 표지]			
14. 유도로 중심선표지			
가. 선의 폭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1) 폭 : 15cm 이상 2) 저시정 지상이동경로 상 : 30cm(밝은 색 포장면인 경우 흑색 윤곽선)			
나. 유도로가 활주로 출구로 이용되는 경우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장되어 설치되었는가? 1) 분류번호 3, 4 : 60m 이상 2) 분류번호 1, 2 : 30m 이상 3) 활주로 중심선과 유도로 중심선간의 간격 : 0.9m			
다.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일시정지위치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정지위치표지로부터 0.9m 단절하여 설치되었는가?			
라. 활주로부터침범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표지(enhanced taxiway centre line marking)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1) A형 활주로정지위치표지에서 활주로 반대방향으로 45m지점까지 표시(활주로 정지위치표지로부터 45m 이내에 다음 활주로 정지위치가 있으면 다음 활주로 정지위치까지만 표시) 2) 활주로정지위치표지에서 0.9m이격하여 3개의 선으로 표시하고, 중심선 양쪽의 선은 유도로 중심선표지와 동일한 폭의 실선으로 중심선으로부터 각 15cm를 이격하여 설치하되, 선의 폭은 15cm, 각 선의 길이는 3m, 각 선 사이는 1m 간격으로 설치			
15. 유도로 가장자리표지			
가. 선의 폭과 간격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1) 폭 : 15cm(2줄) 2) 간격 : 15cm			
나. 유도로 가장자리를 횡단하여 항공기가 이동하는 곳에 점선으로 가장자리표지를 설치하였는가? 1) 폭 : 15cm 2) 길이 : 4.5m 3)간격 : 7.5m			
다. 유도로 가장자리표지와 중심선표지 사이에 혼란 가능성이 있는 곳과 가장자리표지의 어느 쪽이 항공기 하중을 견딜 수 없는 포장면인지 조종사가 알 수 없는 곳에 가로줄무늬가 설치되어 있는가? 1) 간격 가) 직선부 : 30m 이하 나) 곡선부 : 15m 이하 2) 폭 : 0.9m 이상			
라. 곡선부분에서의 가로줄 무늬는 곡선의 시·종점과 그사이에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었는가?			
16. 일시정지위치표지			
가. 유도로와 유도로 교차지점, 지리적인 정지위치, 대기지역, 유도로와 접한 원격 제방·방빙 시설의 출구경계 등 교통량을 일시정지 시켜야 할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유도로 중심선과 장애물 최소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가? 1) 분류번호 C : 26m 2) 분류번호 D : 40.5m 3) 분류번호 E : 47.5m 4) 분류번호 F : 57.5m			
다. 밝은 색 포장면인 경우 흑색 윤곽선이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라. 표지의 폭은 0.3m, 길이와 간격은 0.9m로 설치되어 있는가?			
[영형 표지]			
17. 표면에 그리는 판형 정지위치표지			
가. 정지위치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곳과 운영상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유도로 중심선표지 좌측 1m 지점과 정지위치표지 앞쪽 1m 이상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지의 색상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1) 적색 바탕에 백색 무늬 2) 밝은색 포장면인 경우 흑색 윤곽선			
라. 문자 또는 숫자는 표지 가장자리에서 0.5m 이상 여유가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마. 문자 또는 숫자의 높이는 4m로 설치되어 있는가?			
[정보 표지]			
18. 일반사항			
가. 정보표지판 설치가 비현실적인 곳과 운영상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지의 색상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1) 위치표지판을 대신하거나 보충 : 검은색 바탕에 황색 문자 2) 방향 또는 목적지표지판을 대신하거나 보충 : 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3) 표지 바탕색과 포장면의 대비가 불충분한 경우 가) 검은색 문자인 경우 검은색 테두리 설치 나) 황색 문자인 경우 황색 테두리 설치			
다.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의 높이는 4m로 설치되어 있는가?			
19.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방향표지			
가. 유도로 방향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곳과 표지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유도로 중심선표지 가장자리에서 1m 지점에 위치하고, 좌회전표지는 유도로 중심선의 좌측, 우회전표지는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에 흑색무늬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문자는 표지 가장자리에서 0.5m 이상 여유가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마. 문자의 높이는 4m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하나 이상의 지정번호가 연속해 있는 경우 15cm 폭의 흑색 세로선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20. 표면에 그리는 판형 유도로 위치표지			
가. 유도로 위치표지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유도로 중심선표지 가장자리에서 1m 지점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지의 색상은 흑색 바탕에 황색무늬로,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 바탕 주변에 황색 윤곽선이 설치되어 있는가?			
라. 문자는 표지 가장자리에서 0.5m 이상 여유가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마. 문자의 높이는 4m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하나 이상의 지정번호가 연속해 있는 경우 15cm 폭의 흑색 세로선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21. 표면에 그리는 판형 게이트 식별표지			
가. 터미널의 형태가 핑거(Finger Type)인 경우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나. 황색 바탕에 흑색무늬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지정번호가 1줄인 경우 문자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지정번호가 2줄인 경우 문자의 높이는 1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문자는 표지 가장자리에서 0.5m 이상 여유가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22.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			
가. 유도로 중심선에서 2.1m 지점에 위치하고 도입선을 포함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기하구조상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조정 가능)			
나. 주기장 진입이 일방향인 경우 진입방향만 설치되어 있는가?			
다. 황색 바탕에 흑색 숫자 또는 숫자와 문자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원의 직경은 4.5m, 숫자와 문자의 높이는 2m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표지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형표지의 가장자리에 흑색 윤곽선을 설치한 경우 윤곽선의 폭(15cm)은 적절한가?			
바.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1m 지점에 위치하고 도입선을 포함하고 있는가?(다만, 기하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위치 조정가능)			
23. 지리적 위치표지			
가. 지정된 저시정 지상이동경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가?			
나. 원의 직경은 2.1m, 지정번호의 높이는 1.5m로 설치되어 있는가?(문자는 숫자 다음에 표기)			
다. 분홍색 바탕에 흑색 숫자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원의 가장자리에 15cm 폭의 백색 띠를 두르고, 그 바깥에 다시 15cm 폭의 흑색 띠가 설치되어 있는가?(아스팔트나 기타 어두운 포장면인 경우 백색 띠와 흑색 띠를 바꿔 설치)			
마. 지리적위치표지의 지정번호는 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가?			
24. 항공기 주기장표지			
가. 주기장 전면에 주기장 번호 식별표지판이 없는 경우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나. 도입선, 선회선, 도출선은 15cm 이상의 폭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한 개 이상의 주기장 표지가 겹쳐지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항공기용 표지는 실선, 그 외 항공기용 표지는 점선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 점선의 길이와 간격 : 각 1m			
라. 항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경우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도입 및 도출선에 추가하였는가?			
25. 계류장 안전선			
가. 항공기의 안전한 주기와 지상차량 및 장비 등의 사용구역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나. 색상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1) 항공기주기보호선 : 적색 2) 장비정차장식별선 : 청색 3) 여객통로선 : 백색			
다. 항공기주기보호선은 폭 10cm 이상으로 주기된 항공기와 주변항공기 또는 장애물간 최소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1) 분류문자 C : 4.5m 2) 분류문자 D, E, F : 7.5m			
26. 계류장 가장자리표지			
가. 계류장 가장자리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생략 가능)			

점검 항목	S	U	N/A or N/I
나. 선(황색)의 폭과 간격은 각각 15cm로 설치되어 있는가?			
27. 선회선, 선회바			
가. 주기장에서 선회할 필요가 있는 곳에 조종사가 보고 선회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나. 선회바가 선회 개시시점에 좌측 조종사석 옆으로 도입선에 직각으로 이격거리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 도입선에서 이격거리(분류문자 C : 5m, 분류문자 D, E, F : 10m)			
다. 선회선의 폭은 15c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하나 이상의 주기장 표지가 겹치는 경우 가장 큰 형식의 항공기용은 실선, 그 외 항공기용은 점선(길이 및 간격 각 1m)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선회바는 길이 6m, 폭 30cm로 설치되고, 선회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설치되어 있는가?			
28. 유도사용 정지선			
가. 항공기의 전륜이 정지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정지선의 길이는 유도선 양쪽으로 1m, 폭은 30cm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항공기 명칭표지의 문자 높이는 30cm, 정지선과 15cm 이격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라. 항공기 명칭표지 문자의 색상은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바탕색을 추가할 경우 바탕색은 황색, 문자는 검정색)			
29. 조종사용 정지선			
가. 정지선(황색)의 길이는 6m, 폭은 30cm로 설치되어 있는가?			
나. 항공기 명칭표지의 문자 높이는 1m, 정지선과 15cm 이격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30. 정렬바			
가. 유도사 없이 조종사가 항공기를 정렬하여야 하는 원격주기장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전륜이 위치하는 지점에서 항공기 기체의 뒷부분으로 길이 10m(분류문자 A,B의 경우 5m), 앞쪽 3m 구간은 1m 간격의 점선과 길이 18m (분류문자 A,B의 경우 9m)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선(황색)의 폭은 30cm로 설치되어 있는가?			
31. 장비정차장 표지			
가. 표지는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와 항공기 주기장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나. 선의 색상은 청색, 선의 폭은 10c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32. 탑승교 안전선			
가. 이동식 탑승교를 지상차량과 항공기 수리장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고정식의 경우 운용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나. 색상은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선의 폭은 10cm이상, 사선의 간격은 0.8m~1m로 설치되어 있는가?			
33. VOR 체크포인트표지			
가. 조종사가 VOR 신호에 맞추어 항공기의 계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필요한 경우 설치)			
나. 원의 직경은 6m, 선의 폭은 15cm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색상은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밝은 색 포장에는 흑색 윤곽선 설치)			

점검 항목	S	U	N/A or N/I
34. 폐쇄표지			
가. 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지의 규격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다. 활주로 폐쇄표지는 백색, 유도로 폐쇄표지는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영구폐쇄의 경우 폐쇄표지 이외의 모든 표지는 지워져 있는가?			
마. 조명은 소등되어 있는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35. 비하중지표면 표지			
가. 항공기 하중지지 표면과 비하중지지 표면의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지는 유도로 가장자리표지의 기준(위치 및 특성)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가?			
36. 도로정지위치표지			
가. 활주로 쪽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지의 폭은 60cm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정지위치에서 도로를 횡단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라. 차량 운전자들이 활주로 무단침입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정지위치표지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공항운영자 및 관제탑 근무자 등 현장 인터뷰)			
37. 차량도로표지			
가. 항공기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마련된 구역에 위치한 도로 또는 그러한 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차량도로위에 설치하는 정지위치 표지의 폭은 0.6m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지퍼모양 표지의 폭은 30cm, 길이는 1.3m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도로가 유도로를 통과하는 경우 유도로 최소이격거리 기준에 적합하게 정지위치표지를 설치하였는가?			
38. 접지봉 표지			
가. 계류장에 접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직경 0.45m의 원형으로 접지봉 표지를 설치하였는가?			
나. 표지 색상은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밝은 색 포장의 경우, 5cm 이상의 흑색 윤곽선 설치)			
다. 접지봉 표지에 저항값과 측정일자가 표시되어 있는가?			
39. 맨홀표지			
가. 계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유구, 맨홀 및 결박시설 등에 맨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나. 선의 색상은 적색, 선의 폭은 10c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제87조)			
1. 비행장등대는 운항시간대에 작동하고 있는가?			
2. 항공등화(비행장등대 제외)가 항공기 착륙예정시각 최소 10분전에 점등되고 있는가?			
3. 항공등화(비행장등대 제외)가 항공기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4. 항공등화의 최소 점등비율기준에 적합한가?			
가. CAT-II/III 정밀접근활주로			
1)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은 95% 이상 점등되는가?			
2) 진입등시스템(시단으로부터 450m 까지)은 95% 이상 점등되는가?			
3) 진입등시스템(시단으로부터 450m 이후)은 85% 이상 점등되는가?			
4) 접지구역등은 90% 이상 점등되는가?			
5) 활주로종단등은 75% 이상 점등되는가?			
6) 인접한 2등화가 연속적으로 고장(미점등)이 발생되지 않았는가?(바렛형태의 등화 구성요소 중 1/2 이상 점등된 경우는 예외)			
7) RVR 300m 미만 운영 활주로에서 정지선등이 2등이상 고장(미점등)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8) RVR 300m 미만 운영 활주로에서 유도로중심선등이 2등이상 고장(미점등)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나. CAT-I 정밀접근활주로의 진입등시스템,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및 종단등은 85% 이상 점등되는가?			
다. RVR 550m 미만에서 이륙하는 활주로			
1) 활주로중심선등과 활주로등은 95% 이상 점등되는가?			
2) 활주로종단등은 75% 이상 점등되는가?			
3) 인접한 2등화가 연속적으로 고장(미점등)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라. RVR 550m 이상에서 이륙하는 활주로			
1) 활주로등과 종단등은 85% 이상 점등되는가?			
2) 인접한 2등화가 연속적으로 고장(미점등)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5. RVR 300m 미만 사용 활주로 항공등화 관리			
가. 정지선등은 연속적으로 2등 이상 장애(3m 초과)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나. 유도로중심선등은 연속적으로 2등 이상 장애(표5에서 정한 거리 초과)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6. CAT-II/III 정밀접근활주로에서 항공등화가 연속적으로 2등 이상 장애(표6 및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거리 초과)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7. 예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8. CAT-II/III 정밀접근활주로의 예방정비계획			
가. 진입등시스템(매립등)과 활주로조명등의 광도, 빔확산, 방향에 대한 검사와 측정 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조명 각 회로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측정과 제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다. 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광도설정의 올바른 기능과 제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 가목의 측정방법은 이동용 측정장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마. 가목의 측정회수는 매립등은 2회/년 이상, 노출등은 1회/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바. 가목에 대한 광도, 빔확산 및 방향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고시)에 따르고 있는가?			
9. 시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전력시설 근처에서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일이 없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 (제88조)			
조명(유사등화)의 관리			
1. 조명의 소등, 차폐 또는 변경 -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조명은 없는가?			
2. 조명의 위치조정 및 차폐 - 계류장, 주차지역, 차도, 급유시설지역 및 건물외곽에 설치된 조명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노출형 진입등시스템 (제89조)			
1 다음의 노출형 진입등시스템 요건(시단에서 300m까지) 가. 구조물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상단에서부터 12m 까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나. 지지하는 구조물이 견고한 물체에 둘러싸인 곳에서는 주변의 물체위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었는가?			
2. 등기구 또는 지지하는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표시를 하였는가?			
가. 활주로조명(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 정지로등 및 유도로등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었는가?			
나. 제1항의 등 높이는 체트항공기의 엔진몸체 및 프로펠라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되었는가?			
매립등 (제91조)			
1. 활주로, 정지로, 유도로 및 계류장 표면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등은 항공기가 주행할 때 바퀴에 의해 등기구 또는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지탱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었는가?			
2. 매립등과 항공기 바퀴간의 접촉면에서 열전도 또는 방사에 의하여 생기는 온도는 10분 동안 접촉으로 160℃를 초과하지 않는가?			
항공등화 광도 제어 (제92조)			
1. 진입등시스템 광도가 활주로조명 광도와 유사한 광도를 가졌는가?			
2. 고광도 등화시설은 광도제어기가 구비되어 있는가?			
3. 다음 등화시설이 있는 경우 분리 광도제어기(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가 구비되어 있는가? - 진입등시스템,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 활주로 중심선등, 접지구역등, 유도로중심선등(단, 활주로등, 활주로종단등 및 시단등은 같은 회로 연결가능)			
항공등화 기준 (제93조)			
1.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가. 공항 내 또는 인근에 비행장등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나. 비행장등대가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 또는 진입중인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발생하지 않는가?			
다. 색상은 백색/녹색성광 또는 백색성광으로 발산하고 있는가?			
라. 성광의 총 횡수는 분당 20회~30회로 작동하고 있는가?			
마. 비행장등대가 모든 방위각에서 보이는가?			
2.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			
가. 간이식 진입등시스템			
1) 바렛이 30m 또는 6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횡선표시등이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300m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3)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420m까지 설치되어 있는가?			
4)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420m까지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00m까지 횡선표시등을 포함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나. 정밀접근 CAT-I 진입등시스템			
1) 횡선표시등이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300m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2) 바렛은 3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3) 진입등시스템 평면(마지막 바렛의 60m, 진입등시스템 중심선 양쪽으로 60m) 내에 진입등시스템보다 높은 장애물(단, ILS안테나 제외)은 없는가?			
4) 진입등시스템보다 높은 ILS 안테나는 주간장애표지와 항공 장애등을 설치하였는가?			
5) 연쇄식 섬광등은 활주로 시단방향으로 1초당 2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되고 있는가?			
6) 섬광등은 별도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가?			
7) 횡선표시등 및 중심선표시등은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8) 진입방향에서 차폐되는 등은 없는가?			
다. 정밀접근 CAT-II/III 진입등시스템			
1) 바렛은 3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 측렬표시등은 접지구역등과 같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3) 측렬표시등은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4) 횡선표시등이 활주로시단으로부터 150m 및 300m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5) 횡선표시등 및 중심선표시등은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6) 진입등시스템 평면(마지막 바렛의 60m, 진입등시스템 중심선 양쪽으로 60m) 내에 진입등시스템보다 높은 장애물(단, ILS안테나 제외)은 없는가?			
7) 진입등시스템보다 높은 ILS 안테나는 주간장애표지와 항공 장애등을 설치하였는가?			
8) 횡선표시등 및 중심선표시등은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9) 연쇄식 섬광등은 활주로 시단방향으로 1초당 2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되고 있는가?			
10) 섬광등은 별도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가?			
11) 진입방향에서 차폐되는 등은 없는가?			
3.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가. 활주로 방향별로 진입각지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진입각지시등은 4조/8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 등기구는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되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첫 번째 등기구는 활주로 앞선에서 15m(±1m)에 설치되어 있는가?			
마. 등기구 간의 간격은 9m(±1m)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등기구의 진입각은 GP와 일치하는가?			
사. 장애물 등에 차폐되는 등기구는 없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아. 각 등기구의 양각조절이 가능한가?			
자. 각 유니트별 양각을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4.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가. 활주로의 정대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로 시단에서 옆쪽으로 약40m를 이격하여 약 3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섬광등은 활주로 시단방향으로 1초당에 1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되고 있는가?			
라. 불빛은 백색 섬광등 또는 백색 고정등(또는 가스 방전등)인가?			
5.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 Lighting Systems)			
가. 활주로유도등은 곡선, 직선 또는 곡선/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 그룹간의 간격은 약 1,600m 이내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백색의 섬광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 분당 섬광횟수는 60회로 활주로를 향해 순차적으로 섬광 되는가?			
6. 활주로시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가. 비계기활주로/비정밀활주로의 420m미만의 진입등시스템이 있을 경우 활주로 시단식별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시단식별등은 활주로등렬로부터 약 10m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섬광주기는 분당 60회~120회로 점등되는가?			
라. 시단식별등은 활주로의 진입하는 방향에서만 보이는가?			
마. 등기구는 수평 외측 15°, 수직상방 10°로 조정되어 있는가?			
바. 광도는 5,000칸델라 이상인가?			
7.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가. 활주로등은 활주로 앞선에서 3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간의 간격은 60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시단이 이설된 경우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이설시단까지 진입방향에서 적색으로 보이는가?			
라. 활주로 마지막 600m 또는 활주로 총 길이의 1/3중 짧은 구간의 활주로등은 활주로 종단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황색으로 보이는가?			
마. 다목 및 라목 외의 활주로등은 백색으로 보이는가?			
8.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가. 활주로 시단에서 바깥쪽으로 3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비계기/비정밀 접근활주로는 6등 이상 일정한 간격 또는 3등 이상의 동일한 간격 3그룹으로 구성하되 그룹간 간격은 접지구역표지(접지구역등이 있는 경우 접지구역등) 간격과 동일하거나 활주로 등렬간격의 1/2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정밀접근활주로는 활주로 등렬사이를 3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색상은 진입방향에서 녹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9.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Wing bar Lights)			
가. 비계기/비정밀 접근활주로에서 시단이 이설되어 시단등이 없을 때 시단연장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로 중심선에 대해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다. 연장등은 활주로 등렬에 직각이고 외측으로 10m 이상 연장하여 5개 이상의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연장등의 가장 안쪽등은 활주로등렬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가?			
마. 색상은 진입방향에서 단일방향의 녹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0.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가. 활주로 종단에서 바깥쪽으로 3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의 수량은 6등 이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3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그룹간 간격이 활주로 중심선을 대칭으로 활주로 가장자리 간격의 1/2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정밀접근활주로 CAT-III에서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색상은 진입방향에서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1.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re Line Lights)			
가. 정밀접근활주로 CAT-II/III에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RVR 400m 미만인 이륙활주도에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은 활주로중심선에서 60cm 이내로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가?			
라. RVR 300m미만에서 등 간격은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RVR 300m이상에서 등 간격은 3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활주로 길이가 1,800m 이상인 곳에서는 활주로종단에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300m까지는 적색, 300m에서부터 600m까지는 적색과 백색의 교대색상, 그 외 지역은 백색이 나타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사. 활주로 길이가 1,800m 미만인 곳에서는 활주로종단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300m 까지 적색, 300m에서부터 중앙지점까지 적색과 교대색상, 그 외 지역은 백색이 나타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아. 이설 시단이 있고 이설시단으로부터 진입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설시단으로부터 종단까지는 이륙방향에서는 적색, 착륙방향에서는 차폐되어 있는가?			
12. 접지구역등(Runway Touchdown Zone Lights)			
가. 정밀접근활주로 CAT-II/III에서 접지구역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시단에서부터 900m(활주로 길이가 1,800m 미만은 중앙지점)까지 설치되어 있는가?			
다. 바렛의 등 간격은 1.5m 이하의 간격으로 3등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라. 바렛의 길이는 3m~4m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등 색상은 단일방향의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바렛간의 종 간격은 30m/60m로 설치되어 있는가?			
사. 바렛의 가장 내측 등사이의 간격은 접지구역표지 사이의 간격과 동일한가?			
13. 고속탈출유도표지등(Rapid Exit Taxiway Indicator Lights)			

점검 항목	S	U	N/A or N/I
가. RVR 300m미만일 활주로 또는 교통밀도가 고밀도(이륙·착륙횟수가 26회 이상/시간 또는 총 이·착륙횟수가 35회 이상)인 활주도에 고속탈출유도표지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완전히 소등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의 시작점은 접촉점에서 100m지점부터 시작하여 100m 간격으로 1등, 2등 및 3등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활주로중심선에 가장 가까운 등은 활주로중심선에서 2m 격리되어 있는가?			
마. 등은 2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한 본의 활주로상에 여러 개의 고속탈출유도표지가 있는 경우 고속탈출유도표지등은 서로 겹쳐지는 곳은 없는가?			
사.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황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 회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가?			
14. 정지로등			
가. 야간에 사용하는 정지로가 있는 곳에 정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활주로 등렬 선상에 60m이내의 간격과 정지로 끝에서 바깥으로 3m이내에 활주로중심선을 기준으로 1.5m 간격의 3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re Line Lights)			
가. RVR 300m미만의 조건에서 사용하는 탈출유도로, 유도로, 제빙·방빙 시설 및 계류장에 유도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활주로중심선과 항공기 주기장 사이에 연속적인 안내를 해 주고 있는가?			
다. 등의 색상은 녹색(단, 탈출유도로와 활주로는 제외)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탈출유도로상과 활주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이 ILS 임계/민감지역에 저축될 경우 등 색상은 녹색과 황색이 교대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마. 등은 유도로중심선과 30cm 이내로 떨어져 있는가?			
바. 유도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1) 등 간격은 60m 이내(단, 짧은 직선구간은 30m, RVR 300m 미만인 곳은 15m)로 설치되어 있는가?			
2) RVR 300m 미만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유도로 곡선부의 등간격은 15m 이하(곡선반경이 400m 미만은 7.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사. 고속탈출유도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1) 등은 유도로중심선의 곡선부분 시작 전 60m이상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는가?			
2) 제1호의 경우 유도로중심선등은 활주로중심선등과 60c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가?			
3) 등은 15m이하(단, 활주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에는 30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아. 기타 탈출유도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1) 탈출유도로상(단, 고속 탈출유도로는 제외)의 등은 유도로중심선 표지가 활주로중심선표지로부터 곡선이 되는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는가?			
2) 첫 번째 등은 활주로중심선 등렬로부터 60cm이상 이격되어 있는가?			
3) 등의 간격은 7.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자. 활주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점검 항목	S	U	N/A or N/I
RVR 300m 미만의 조건에서 표준 유도로의 일부분인 활주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16.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가. 야간에 사용하는 유도로에 유도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 유도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회전패드, 대기지역, 제빙·방빙 시설 계류장에 유도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준 유도로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유도로중심선등이 없고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상에 유도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라. 유도로의 직선 및 곡선구간의 등은 60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대기지역, 제빙·방빙 시설, 계류장지역의 등은 6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활주로 회전패드상에 있는 유도로등은 30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사. 등은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3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아. 등의 색상은 청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7. 활주로 회전패드등(Runway Turn Pad Lights)			
가.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회전패드에 회전패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활주로 회전패드표지에서 30cm 이내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의 직선상에 설치하는 등은 15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의 곡선상에 설치하는 등은 7.5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등은 항공기 또는 진입방향에서 볼 수 있는 단일방향의 녹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8. 정지선등(Stop Bars)			
가. RVR 550m 이하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활주로정지위치에 매립형 정지선등이 설치(단, 운항절차로 항공기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 되어 있는가?			
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교통관제를 하는 공항의 일시정지 위치에 매립형정지선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다. 매립형 정지선등은 3m 간격(허용범위 2.4m~4m)으로 유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라.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노출형 정지선등은 유도로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3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가?			
바. 진입유도로에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는 정지선등은 선택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가?			
사. 선택적으로 점·소등 할 수 있는 정지선등은 정지선등 이후의 유도로 중심선등과 90m(3등) 이상 연계되어 정지선등이 점등(소등)되었을 경우 유도로중심선등은 소등(점등)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가?			
19.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			
가. RVR 300m 미만에 사용하는 활주로의 일시정지위치에 일시정지위치등이 설치(단, 정지선등이 설치된 곳은 제외)되어 있는가?			
나. 등은 일시정지위치표지로부터 30cm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등의 수량은 3등 이상으로서 1.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0. 제·방빙시설출구등(De-icing/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			

점검 항목	S	U	N/A or N/I
가. 유도로에 인접해 있는 원격 제빙·방빙시설 경계의 출구에 제빙·방빙시설출구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일시정지위치표지의 안쪽으로 30c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황색으로서 6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매립형)되어 있는가?			
21.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			
가. RVR 1,200m 이하인 활주로의 경우 활주로/유도로 교차지역에 노출형 활주로 경계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은 2쌍의 황색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은 정지선등과 함께 설치하지 않았는가?			
라. 주간에 사용되는 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은 태양광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가?			
마.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은 황색 섬광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각 등은 서로 조화되게 교대로 점등되고 있는가?			
바.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의 간격은 유도로를 횡단하여 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사. 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은 황색섬광등으로 각 등은 교대로 점등되고 있는가?			
아. 섬광 주기는 분당 30~60회로 작동하는가?			
22.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가. 야간에 사용하는 계류장, 제빙·방빙 시설, 지정된 거리주기장에 계류장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의 불빛은 관제사, 조종사 또는 계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눈부심을 없애는가?			
다. 불빛은 항공기의 표지, 노면 및 장애물표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포되는가?			
라. 평균조도는 다음기준에 적합한가? - 항공기 주기장 : 수평면 20룩스 이상으로서 평균대 최소비율 4:1이하 - 기타지역 : 항공기 주기장 평균조도의 50% 이상으로서 평균대 최소비율 4:1 이하			
23.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가. 지상 유도원이 없는 공항에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이 시스템은 방위와 정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가?			
다. 방위안내장치와 정지위치지시기는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는가?			
라. 방위안내장치와 정지위치지시기는 항공기 주기장표지와 항공기주기장 안내등(설치되어 있는 경우)과 연속적인 안내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마. VDGS는 탑승교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바. VDGS는 주기장의 모든 항공기 기종에 사용될 수 있는가?			
사. 특정 항공기가 VDGS를 사용할 경우 조종사와 운용자에게 항공기 기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가?			
아. VDGS는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자. 방위안내장치(Azimuth Guidance Unit)			
1) 탑승교로 진입중인 조종사가 방위신호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2) 좌·우측 안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가?			
3) 중앙선은 녹색, 중앙선 이탈은 적색으로 나타나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차. 정지위치지시기(Stopping Position Indicator)			
1) 10m 이상의 거리에서 접근속도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가?			
2) 색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녹색은 항공기 진행, 적색은 정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단, 정지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3의 색채 사용가능)			
24.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oeuvring Guidance Lights)			
가. 등의 색상은 안내를 해 주고자 하는 방향의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나. 정지구간에 설치하는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항공기 주기장을 사용할 경우에 점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등 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가?			
라. 등간격은 곡선부 7.5m 이하, 직선부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25.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			
가. RVR 300m 미만에서 활주로와 연결된 도로에 도로정지위치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의 위치는 도로의 대기위치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1.5m(±0.5m) 지점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기구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관제탑에서 제어할 수 있는 도로정지위치등은 적색(정지)/녹색(진행) 교통신호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 관제탑에서 제어할 수 없는 도로정지위치등은 적색섬광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바. 적색섬광등의 주기는 적정(분당 30~60회)한가?			
사. 등의 빔은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26. 그 밖의 항공등화시설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가?			
27. 항공등화의 주 빔 광도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배광곡선 광도 값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표지판 (제94조, 별표 6)			
1. 표지판은 고정 또는 가변메시지 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정해진 시간동안만 지시사항이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또는 SMGCS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여러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되었는가?			
3.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가?			
4.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가?			
5.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다른 정보로 전환되는 시간은 5초 이내로 동작하는가?			
6. 표지판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7. 활주로 및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지판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물체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되어 있는가?			
8. 표지판은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게 설치되어 있는가?			
9. 표지판 규격은 다음기준에 적합한가?(분류번호 3 또는 4) - 면의 높이 600mm, 문자크기 300mm, 설치높이 900mm이하 - 면의 높이 800mm, 문자크기 400mm, 설치높이 110mm이하			
10. RVR 800m미만,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계기활주로 또는 분류번호 3, 4인 비계기활주로)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11.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1, 2인 비계기활주로의 표지판은 역반사 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가?			
표지판 설치기준			
1. 명령지시표지판			
가. 활주로명칭표지판			
1) 활주로/유도로 또는 활주로/활주로 교차지역의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옆 양쪽에 활주로명칭표지판이 있는가?			
2)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3) 표시명은 교차하는 활주로명칭(시단부근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련된 활주로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활주로/유도로 교차지역의 표지판은 바깥에 추가로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5)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나. CAT I, II, III, II/III정지위치표지판			
1) ILS의 임계/민감지역의 활주로정지위치표지 옆 양쪽에 CAT I, II, III, II/III정지위치표지판이 있는가?			
2)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3) 비계기활주로의 활주로정지위치와 CAT-I 정밀접근활주로의 활주로정지위치와 동일한 경우에는 활주로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다. 활주로정지위치표지판			
1) 지상주행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해하거나 무선시설 운영에 방해가 된다면 활주로정지위치표지 옆 양쪽에 활주로정지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의 위치(비정밀 75m 이상, 정밀 90m 이상)는 적정한가?			
3) 표지판의 문자는 유도로 명칭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5)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라. 도로정지위치표지판			
1) 활주로와 연결된 도로에는 도로정지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은 도로정지위치표지의 좌측 또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1.5m지점에 있는가?			
3)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을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역반사 또는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5) 표지판은 정지하기 위한 조건(필요한 경우 관제탑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구 조건 및 위치표시)이 포함되어 있는가?			
6)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마. 진입금지표지판			
1) 진입이 금지된 지역에 진입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유도로의 양쪽에 설치하였는가?			
3)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4)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한가?			
2. 정보표지판			
가. 일반사항			
1) 유도로는 하나의 문자, 문자의 조합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명칭에 의해 식별 되는가?			
2) 유도로 명칭을 표기 할 경우에 I, O 또는 X의 단어사용과 1 또는 0의 숫자로 표기된 표지판은 없는가?			
3) 기동지역에 숫자만 사용(활주로명칭 제외)한 표지판은 없는가?			
4) 정보표지판(위치표지판 제외)과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한 표지판은 없는가?			
5) 유도로 교차지역의 표지판은 유도로 교차지역 표지 옆에 설치하였는가?			
6) 유도로 교차지역에 유도로 교차지역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교차유도로 중심선에서 60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가?			
7) 정보표지판(위치 표지판 제외)은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지 않았는가?			
나. 방향표지판			
1) 교차부면에서의 방향표지판은 유도로의 명칭과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가?			
2) "T"형과 같은 교차지역에서 유도로가 끝나는 것을 표시해 줄 경우에는 방향표지판(또는 바리게이트, 기타 적절한 시각 보조시설)을 교차지점 반대쪽에 설치하였는가?			
3) 유도로의 좌측("T"형 교차지점을 나타내는 방향표지판 제외)에 설치(이격거리가 기준미달일 경우에는 우측)하였는가?			
4)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된 방향표지판은 없는가?			
5) 표시명은 화살표와 알파벳 또는 알파벳,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6) 위치 및 방향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의 방향 표지판은 적합하게(좌측 반 시계방향, 우측 시계방향) 설치되어 있는가?			
7) 표지판의 경계는 흑색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8)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 위치표지판			
1) 활주로명칭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단, 활주로/활주로 교차지점 제외)되어 있는가?			
2) 유도로 교차지역 전에 경로표시를 할 경우에는 방향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3) 일시정지위치에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은 유도로의 좌측(이격거리가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우측, 교차지역을 지나 설치하는 표지판은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였는가?			
5) 개방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한 경우에 위치표지판은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가?			
6) 표시명은 포장지역 위치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7) 위치표지판이 동일한 유도로에서 일시정지위치를 표시할 경우에 유도로 명칭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8) 활주로명칭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바깥쪽에 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9) 표지판은 흑색바탕에 황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표지판이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황색테두리가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라. 목적지표지판			
1) 유도로의 좌측(다만, 지형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때문에 좌측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시명은 목적지(알파벳, 알파벳 문자 또는 숫자)로 화살표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3) 목적지표지판은 유도로의 위치표지판과 방향표지판이 함께 설치된 곳은 없는가?			
4)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 활주로탈출표지판			
1) 활주로 출구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2) 표지판은 활주로중심선과 유도로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60m 이상 떨어져 있는가?			
3) 표시명은 출구 유도로명칭과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가?			
4)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된 활주로탈출표지판은 없는가?			
5)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바. 활주로개방표지판			
1) 탈출유도로에 유도로중심선들이 없는 경우 ILS 임계/민감지역이 벗어나는 지점에 활주로개방표지판이 있는가?			
2) 표시명은 활주로정지위치표지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 중간이륙표지판			
1) 중간이륙을 위하여 이륙활주거리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곳에 중간이륙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위치는 진입유도로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가?			
3)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은 활주로중심선에서 60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가?			
5) 표시명은 이륙활주거리와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 VOR 체크포인트표지판			
1) VOR 체크포인트표지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은 항공기 조종석에서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3)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시내용은 VOR체크포인트를 표시하는 약어와 관련 무선주파수 또는 방위각이나 방위각과 DME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가?			
자. 주기장식별표지판			
1) 주기장식별표지는 가능한 주기장식별표지판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3) 항공기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가?			
4) 항공기주기장 지리적좌표가 있는 경우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가?			
차. 공항식별표지판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표지판은 수평면상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은 공항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색상은 주위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문자의 높이는 3m 이상인가?			
표시물 (제59조, 별표 7)			
1. 표시물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2.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시물은 항공기 엔진과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낮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3. 정지로 가장자리표시물			
가. 정지로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정지로 가장자리표시물을 설치하였는가?			
나. 표시물은 활주로 가장자리표시물과 다르게 설치하였는가?			
4. 눈으로 덮인 활주소에 대한 가장자리표시물			
가. 눈으로 덮인 활주소에 활주로 사용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지 못한 공항에 표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시물은 10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시물은 활주로 시단 및 종단지역에 충분히 설치되었는가?			
라. 표시물의 높이는 약 1.5m의 초록색 나무 또는 가벼운 표시물로서 잘 보이는가?			
마. 눈으로 덮인 활주소에 대한 가장자리표시물은 활주로 중심선에 대칭으로 설치되었는가?			
5. 유도로가장자리표시물			
가. 분류번호 1 또는 2인 경우 유도로중심선등, 유도로등 또는 유도로중심선표시물이 없는 곳에 유도로가장자리표시물이 설치되었는가?			
나. 표시물은 유도로등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시물은 원통형으로서 형색의 역반사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 표시된 면은 직사각형으로 최소면적은 150cm ² 인가?			
마. 높이는 충분히 낮는가?			
6. 유도로중심선표시물			
가. 분류번호 1 또는 2인 경우 유도로중심선등, 유도로등 또는 유도로가장자리표시물이 없는 곳에 유도로중심선표시물이 설치되었는가?			
나. 분류번호 3 또는 4인 경우 유도로중심선등 표시가 없는 곳에 유도로 중심선 표시물이 설치되었는가?			
다. 표시물은 유도로중심선표지(30cm까지 이격가능) 위에 유도로중심선등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표시물은 원통형으로서 녹색의 역반사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 볼 수 있는 면은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최소면적은 20cm ² 인가?			
7. 금지구역표시물			
가.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지역에 항공기 이동에는 부적합하지만 항공기가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표시물을 설치하였는가?			
나. 표시물은 조밀하게 설치하였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다.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으로 구성되었는가?			
라. 깃발			
1) 한 변이 0.5m 이상인 정사각형의 면적인가?			
2) 색상은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이거나 이들 색채 중 한 색채와 백색과의 조합색으로 되어 있는가?			
마. 원추체			
1) 높이는 0.5m 이상인가?			
2) 색상은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이거나 이들 색채 중 한 색채와 백색과의 조합색으로 되어 있는가?			
바. 표지판			
1) 높이는 0.5m 이상, 길이는 0.9m 이상인가?			
2) 색상은 적색과 백색, 오렌지색과 백색으로 번 갈아서 세로 줄무늬로 되어 있는가?			
8. 비포장 활주로 가장자리표시물			
가. 비포장 활주소에 가장자리표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조명이 있을 경우에는 활주조명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다. 활주조명이 없을 경우 표시물은 직사각형 또는 원뿔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 직사각형의 표시물은 3m×1m의 크기로 활주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마. 원뿔형 형태의 표시물 높이는 50cm 이하인가?			
9. 비포장 유도로 가장자리표시물			
가. 비포장 유도로에 가장자리표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유도로 조명이 있을 경우에는 유도로조명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다. 유도로 조명이 없을 경우 표시물은 원뿔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경계표시물			
가. 활주로나 없는 공항에 경계표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시물의 간격은 200m 이하(단, 각 모서리에 원뿔형 표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0m 이하)인가?			
다. 표시물은 원뿔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 표시물의 베이스 직경은 75cm 이상, 높이는 50cm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마. 색상은 오렌지색, 적색의 단일 색과 오렌지색과 백색, 적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는가?			
장애물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10절)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 물체 (제96조, 별표 8)			
다음의 물체에 대하여 표지 및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1. 이동지역에서 사용하는 차량과 기타 이동물체(단,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서비스차량과 장비,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계류장 가장자리선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항공기 주기장과 건물 및 울타리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는 제외)			

점검 항목	S	U	N/A or N/I
2. 이동지역내의 노출형 항공등화			
3.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내에 있는 장애물			
4. 진입표면중 내측 가장자리로부터 3,000m 이내에 진입표면 위로 돌출된 고정 장애물(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5. 장애물외에 진입표면에 인접한 고정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6. 수평표면 위의 고정장애물(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7.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돌출된 고정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8. 고가선, 가공케이블(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9.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7조, 별표 9)			
1. 표지 하여야 할 고정물체는 색채(색채로 표시가 곤란한 물체는 표시물 또는 깃발 설치)로 표시하였는가?			
2. 표지 하여야 할 이동물체는 색채 또는 깃발로 표시하였는가?			
가. 색채			
1) 가로 및 세로의 크기가 각각 4.5m 이상일 경우에 체크무늬 형태로 표시하였는가?			
2) 체크무늬 형태의 표지는 직사각형 한 변이 1.5m ~ 3m로 구성되어 있는가?			
3) 체크무늬 형태의 표지 중 모퉁이는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4) 체크무늬 형태의 색채는 오렌지색/백색 또는 적색/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직사각형 한 변이 1.5m 이상, 다른 변이 4.5m이하의 크기는 줄무늬로 채색되어 있는가?			
6) 연속적인 표면을 가진 1개의 치수가 수직 또는 수평 중 1.5m 이상의 크기를 갖는 골격형 구조는 줄무늬로 채색되어 있는가?			
7) 줄무늬는 가장 긴 변에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8) 줄무늬의 폭은 긴 변의 약 1/7 또는 30m중에서 작은 쪽의 폭으로 되어 있는가?			
9) 줄무늬의 최상부와 최하단부는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가?			
10) 줄무늬 색상은 오렌지색/백색(적색/백색)으로 되어 있는가?			
11) 수직면상에 물체의 투영크기가 가로, 세로 모두 1.5m 미만인 경우 이 물체는 오렌지색 또는 적색의 단일색으로 되어 있는가?			
12) 응급차량은 눈에 잘 띄는 단일색상으로 하되 가급적 적색 또는 황색을 띤 녹색인가?			
13) 업무차량은 황색인가?(단,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 등이 계류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장비별도 인정 가능)			
14) 이동물체는 눈에 잘 띄는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는가?			
나. 표시물			
1) 표시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는가?			
2) 표시물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가?			
3) 가공선, 케이블 등에 설치(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된 표시물은 원형으로서 직경은 60cm 이상인가?			
4) 표시물의 색채는 단일색인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5) 표시물을 이중색으로 구성할 경우 백색과 백색 또는 오렌지색과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6) 2개 연속 표시물 또는 표시물과 지지탑사이의 간격은 적정한가? - 표시물 직경이 점점 증가하여 60cm가 되는 곳 : 30m 이하 - 표시물 직경이 80cm 증가 및 점차 증가가 되는 곳 : 35m 이하 - 표시물 직경이 130cm 이상인 곳 : 40m 이하			
다. 깃발			
1) 깃발은 물체의 주위,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가?			
2) 깃발의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3) 고정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의 크기는 한 변이 0.6m이상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가?			
4) 고정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의 색상은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백색, 적색과 백색으로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이동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의 크기는 한 변이 0.9m 이상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가?			
6) 이동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은 각 변이 0.3m 이상의 정방형 체크무늬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7) 정방형 체크무늬형태의 색상은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및 관리 (제98조)			
항공장애 표시등은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11절)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 (제99조)			
1.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폐쇄표지를 설치하였는가?			
2. 제1호의 경우에 그 지역의 표지와 등화는 제거하였는가?			
3. 야간에 운항할 경우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 폐쇄지역에 폐쇄표지와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였는가?			
4. 금지구역등은 폐쇄지역 입구에 3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였는가?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 (제100조)			
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만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표면에 포트홀이 있을 경우에 금지구역표시물을 설치하였는가?			
2. 제1호가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였는가?			
3. 금지지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4. 금지구역표시물은 기준에 적합한가?			
5. 금지구역등은 기준에 적합한가?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 설정 (제101조)			
1. 유도로, 대기구역 갯길과 계류장 및 그 외의 지역에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과 항공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표면과의 경계를 따라 줄무늬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되어 있는가?			
3. 표지의 기준은 유도로가장자리표지와 일치한가?			
시단이전 포장구역 (제102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시단 이전지역의 포장길이가 60m 이상이고 항공기가 운항하지 못하는 지역에 갈매기형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의 색상은 황색인가?			
3. 갈매기형 표지의 폭은 0.9m 이상인가?			
4. 갈매기형 표지의 배치는 기준에 적합한가?			
전력시설 등 (제12절)			
전원공급 (제103조)			
1. 항행안전시설의 안전한 작동을 위하여 적절한 상용전원을 공급하고 있는가?			
2. 공항의 시각지원시설 및 무선항행보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은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적·비시각적 안내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는가?			
3. 다음 시설에 대하여 예비전원이 공급되는가? - 지향신호등, 항공장애등(항공기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애등),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중단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중심선등, 정지선등, 주요 유도로등, 기상장비, 필수 보안등, 필수 장비 및 시설, 격리 주기장의 투광조명, 여객이 걸어 다니는 계류장지역 조명			
4.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되는가?			
5. 예비전원은 서로 다른 변전소의 전기공급선로(전용선로 또는 공용선로),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Battery)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6. 예비전원 공급시간(Switch-over time)이 기준에 적합한가?			
전기시스템(제104조)			
1. 활주로나시범위(RVR) 550m 미만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전기시스템은 장비의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안내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는가?			
2. 이중선로를 구성하여 예비전원을 공급하는 공항은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을 별도의 모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표준유도경로를 형성하는 활주로는 활주로조명(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과 유도로조명(유도로등, 유도로중심선등)이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되어 있는가?			
감시 (제105조)			
1. 항공등화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가?			
2. 항공기 통제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등화시설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탐지하고, 장애정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중계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였는가?			
3. RVR 550m 미만에서 항공등화 점등비율이 기준보다 미달될 경우 등화시설 감시시설이 자동적으로 감지되어 즉시 유지보수담당자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전달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였는가?			
4. 제3호가 발생한 경우 관제탑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배치하였는가?			
5. 감시시스템에 활주로 정지위치에 있는 정지선등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2초 이내로 표시되는가?			
6. 감시시스템에 정지선등 이외의 등화시설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5초 이내로 표시되는가?			
울타리 (제106조)			
1. 이동지역에 동물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또는 적절한 방호벽을 설치하였는가?			
2. 공항의 제한지역에 울타리 또는 적절한 방호벽을 설치하였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3. 이동지역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요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벽을 설치하였는가?			
4. 공항에서 떨어진 장소에 항행안전시설 또는 민간항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에 허가 민간인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가?			
5. 유지보수와 보안순찰을 위하여 공항 울타리 안쪽에 도로가 있는가?			
보안등 (제107조)			
1. 보안상 필요한 부분에 보안등이 점등되는가 ?			
2. 불빛이 항공기 진입방향으로 비치지 않도록 차폐 되었는가?			
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 (제109조)			
1. 등기구 및 지지물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2.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가 착륙대, 활주로 중단안전지역, 유도로대의 관리구역 또는 유도로 중심선(Taxilane 제외)과 장애물간 최소이격거리 내에 설치(단, 항행목적상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하지 않았는가?			
3. 공중의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단, 항행목적상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제외)는 개방구역내에 설치하지 않았는가?			
4. 다음 지역에 설치하는 항행용 시설 및 장비는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였는가? 가. 활주로중심선에서 75m 이내의 착륙대 나. 활주로중단안전구역, 유도로대, 유도로 최소이격거리 이내 다. 공중에서 항공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장소나 개방구역			
5. CAT-1, II, III 정밀접근활주로에서 항행 목적용 이외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착륙대 중단에서 240m 이내, 활주로중심선 연장선으로부터 60m 폭 이내(분류번호 3, 4)			
6. CAT-1, II, III 정밀접근활주로에서 항행 목적용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지역에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였는가? 가. 분류번호 4이고 분류문자 F : 활주로중심선에서 77.5m이내의 착륙대 지역 나. 착륙대 중단에서 240m 이내, 활주로중심선에서 60m 폭 이내(분류번호 3, 4) 다.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또는 착륙복행표면을 침범하는 경우			
7. 항행용 장비 및 시설과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고 운항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되어 있는가?			
8. 착륙대의 비정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용 시설 및 장비는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되어 있는가?(단, ILS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이 개발 될 때까지 미적용)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 (제13절)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 (제110조)			
1. 위험물 취급과 저장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위험물 취급지역 및 업체에 대하여 안전수칙 및 취급절차를 제공하였는가?			
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 (제111조)			
1. 공항 내에서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에 관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 (제112조)			
1.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하는가?			
2.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기록을 12개월 이상 유지관리 하는가?			
3. 연료시설 및 장비 검사의 내용이 적절한가?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제113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위험물 취급업체의 감독자(1인 이상)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2. 위험물질을 공급 또는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감독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았는가?			
교육 및 훈련의 확인 (제114조)			
1. 업체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가?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제14절)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제115조)			
1.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는가?			
가. 당해 공항 또는 그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 목록			
나. 중장비를 임대 계약업체 목록			
다. 타 공항으로부터 동원 가능한 장비 목록			
라. 항공기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처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행자의 목록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 (제120조)			
1.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정보 확보가 적절한가?			
2. 항공기의 공기 부양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였는가?			
구조 및 소방 (제15절)			
일반 (제121조)			
1. 공항 내 또는 주변지역의 사고·준사고에 신속대응 가능한 구조·소방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2. 이륙·착륙로가 폭 500m 이상의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인 경우 수상구조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구조·소방등급이 적절하게 공포 되었는가?			
4. 구조 및 소방등급의 중요한 변경은 항공정보업무기관(AIS) 및 항공교통업무(ATIS)기관에 통보 되었는가?			
구조·소방등급 결정 (제122조, 별표 11)			
1. 구조·소방등급이 적합하게 결정되었는가?			
가. 항공기 전장 및 최대 동체 폭			
나. 항공기 운항횟수			
2. 구조·소방등급에 따른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소화제의 유형 (제123조)			
1.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가 준비되어 있는가?			
2. 기준에 적합한 주소화제가 확보되었는가?			
3. 기준에 적합한 보조소화제가 확보되었는가?			
소화제의 양 (제124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보유한 소화제는 다음의 소화제 요건에 적합한가?			
가. 물의 양			
나. 최소한도의 소화제의 양			
다. 차량에 별도로 탑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			
라. 차량에 적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			
마. 사고현장에서 구조소방차량에 대한 물 공급능력			
바. 성능등급 A와B가 함께 사용될 때 포말산출을 위한 물의 양			
분사율 (제125조)			
1. 포말용액의 분사율이 기준을 충족하는가?			
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 (제126조)			
1. 예비소화제(200%)의 양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2. 포말탱크의 상태가 적합한가?(출동 시 가득 채운상태, 단백포말 농축액의 경우 정기적으로 방출하여 청결유지)			
3. 연이은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보관중인 소화제의 농도의 이상유무를 측정(최소 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있는가?			
5. 소화제 보관장소는 적정(온도 및 습도)한가?			
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제127조, 별표 11)			
1. 최소 구조장비를 구조소방차량에 탑재하고 있는가?			
2. 최소 비상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가?			
비상대응요건 (제128조)			
1. 비상대응 시간요건에 충족하는가?			
가. 첫 출동 차량(3분)			
나. 첫 출동차량 외의 주력구조소방차량(최초 출동요청을 받은 후 4분 이내)			
2. 구조·소방차량의 예방정비체계를 구비하고 있는가?			
비상접근도로 (제129조)			
1.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비상접근도로를 구비하고 있는가?			
2. 당해 공항 사용차량의 최대중량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3. 활주로부터 90m 이내의 도로가 표면부식 방지 및 파편 이동 방지처리가 되어 있는가?			
4. 장애물이 있는 경우 수직 이격거리가 확보되었는가?			
5. 도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가장자리 표시물이 설치되었는가?			
6. 정기적으로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가?			
소방대의 설치 (제130조)			
1. 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구조·소방차량이 소방대에 위치하고 있는가?			
3. 1개의 소방대로 출동시간을 충족할 수 없을 때 보조소방대를 설치하였는가?			
4. 소방대의 위치가 구조소방차량의 선회주행을 최소로 하면서 활주로지역에 장애를 받지 않고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곳인가?			
5. 소방대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통신 및 경보 시스템 (제131조)			
1. 소방대와 관제탑, 공항 내의 다른 소방대 및 구조소방차량을 연결하는 독립적인 통신체계가 구비되어 있는가?			
2. 소방대 및 관제탑 내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3. 구조소방 차량에 다음 교신이 가능한 양방향 무선통신기기를 장착하고 있는가?			
가. 비상 차량과의 교신			
나. 관제탑과의 교신			
다. 기타 관련 부서와의 교신			
차량 준비 요건 (제132조)			
1. 구조소방차량에 대하여 다음요건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가. 항공기 운항 중 구조·소방 차량 대기			
나. 장비 덮개 등 준비(장기간 영하이하의 기온)			
다. 차량 및 설비 사용 불가능 시 전파			
라. 동급능력의 대체 차량 및 관련 설비(48시간 이상 소방차량 기능 상실 시)			
마. 차량보유대수			
2. 구조·소방차량에 탑재되어야 할 최소 구조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3. 구조·소방차량이 최소 성능요건에 충족하는가?			
차량 표지 및 조명 (제133조)			
1. 구조·소방용 차량의 표지 및 조명이 적합한가?			
가. 섬광등/경광등			
나. 도색 및 표시			
구조 및 소방직원 (제134조)			
1. 교육훈련 및 경험 등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2. 항공기 운항 중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3. 구조·소방장비(급수관, 사다리 및 기타 장비)의 사용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4. 근무 편조 방식이 적합(최근 12개월 이내 업무경험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한가?			
구조 및 소방직원의 보호장비 (제1435조)			
보호의복 및 호흡장비가 지급되었는가?			
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훈련 (제136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구조·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이 적합한가?			
가. 공항관속			
나. 항공기 관속			
다. 구조·소방직원의 안전			
라. 공항에서의 비상통신시스템			
마. 소방호스 등 장비의 사용			
바. 소화제 유형 및 특성			
사. 항공기 비상탈출 지원			
아. 화재진압절차			
자. 소방구조장비의 사용과 적용			
차. 위험물			
카. 소방대원의 임무			
파. 보호복 및 보호장비의 사용			
2. 모든 구조·소방직원들은 실제 화재훈련에 참가하였는가?			
3. 항공기 운항 시 기초 응급치료 훈련을 받은 자 또는 응급구조사가 최소 1명 포함되어 있는가?			
4. 기초 응급치료 훈련내용 및 훈련시간(40시간)은 적합한가?			
5. 구조소방직원의 비상대응을 위한 사이렌 및 기타 경보장치를 구비하고 있는가?			
6. 구조·소방직원의 훈련프로그램에 인적요인, 팀웍, 인적능력 등을 포함하였는가?			
위험지역 (제137조)			
1. 위험지역은 적절하게 설정(항공기 전장, 동체길이와 폭)되었는가?			
구조 및 소방등급의 조정 (제138조)			
1. 구조 및 소방등급 조정 시 관련절차를 준수하였는가?			
활주로 안전 (제16절)			
활주로 안전팀 구성 (제140조)			
1. 활주로 안전팀에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활주로 침범 방지 (제141조)			
1. 공항시설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공항시설의 설치는 활주로 침범이 방지되도록 설계하고 설치하였는가?			
2. 활주로 침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활주로 이탈 방지 (제141조)			
1. 계기착륙시설(ILS)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이 보호되고 신호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는가?			
2. 활주위에 설치된 항공등화, 표지판 및 표지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3. 적절한 활주로 마찰성능이 유지되도록 활주로 표면의 고구 퇴적물 및 기타 오염물질은 적시에 제거하였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4. 풍향계와 풍향지시기가 활주로 및 접지구역을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5.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시된 활주로 공시거리가 정확히 확인하였는가?			
6. 일시적으로 축소된 활주로 길이(활주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으로 인한 축소 등)를 정확하게 계산하였는가?			
활주로 혼동 (제142조)			
1. 활주로 혼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활주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제143조)			
1.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조하여 활주로 운영의 일시적 중단 및 폐쇄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하였는가?			
2.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와 협의 및 조정을 하고 활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가?			
3.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항출장소장에게 활주로 폐쇄 및 재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4. 활주로 작업계획은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였는가?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제17절)			
자체 안전점검 (제145조)			
1. 자체 점검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자체 안전점검이 당해 공항의 입주업체를 포함하여 실시되는가?			
3. 자체 검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4. 자체 안전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가.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의 관리·운영			
나.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관리·운영			
다. 계류장 안전관리			
라. 시각지원시설의 관리·운영			
마. 이동지역의 작업안전			
바.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사. 야생동물위험 관리			
아. 장애물			
자. 위험물 관리			
차. 설빙관리(동절기에 한함)			
카. 구조·소방			
파. 안전관리시스템			
5.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야생동물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별표 21)			
점검시기 (제146조)			
1. 자체 안전점검이 최소 월 1회 실시되는가?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는 제외)			

점검 항목	S	U	N/A or N/I
2. 항공기 사고, 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가?			
3.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및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였는가?			
점검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항 (제147조)			
1. 자체 안전점검에 필요한 다음의 구비사항이 적절한가?			
가. 점검장비			
나. 정보교환절차			
다. 점검절차			
라. 보고체계			
점검결과의 확인 (제148조)			
1. 자체 안전점검결과와 보고 및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자체 안전점검보고서에 점검책임자의 서명이 있는가?			
점검기록의 보관 (제149조)			
1.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의 보관(12개월)이 적절한가?			
제설계획 (제18절)			
일반 (제150조)			
1. 이동지역 제설 우선순위 설정은 적절한가?			
2. 제설목적의 화학약품이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어 사용되고 있는가?			
3. 제설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정보회람(AIC) 발행 요청 및 관련기관 통보를 하였는가?			
4. 제설장비 세부사항을 AIP에 수록하고 있는가?			
5. 공항에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활주로 마찰측정장비 작동상태를 확인 하는가?			
공항 제설계획 수립 (제151조)			
1. 제설계획이 동절기(12월~익년 2월)를 기본으로 하여 당해 공항의 계절특성에 맞게 동절기 시작 최소 1개월 전에 수립되었는가?			
2. 제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는가?			
가.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			
나. 제설대책반 운영			
다. 제설관련 부서간의 협조체계 구축(통신망 등)			
라. 제설작업에 이용 가능한 장비			
마. 제설작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대응계획			
바. 설빙고시보(SNOWTAM) 발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항공정보업무기관과의 통보 방법			
사. 활주로 마찰측정 장비의 사용(마찰계수표 등)			
아. 제설한 눈의 처리 장소 및 수거장소 지정			
자. 모든 관련 부서에 전파할 수 있는 경보체계			

점검 항목	S	U	N/A or N/I
차. 제설장비의 정비인력 운영계획 및 지원절차			
카. 장비의 배치 및 세부 제설 작업방법			
파. 제설작업을 위한 활주로 폐쇄시기 결정 등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절차			
하. 적절한 제설제 확보, 보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제설제 산출근거 포함)			
눈더미의 최소 허용높이 기준 (제152조)			
1. 활주로 인접지역의 눈더미 제거기준 설정은 적절한가?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제153조)			
1.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의 확인·준비 등이 동절기 도래 전에 실시되는가?			
2. 제설장비 정비 및 수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3. 제설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은 실시되는가?			
공항비상계획 (제19절)			
일반 (제154조)			
1. 공항비상계획이 적절하게 수립(공항에서 행해지는 운항 및 그 외 활동과 조화)되어 있는가?			
2. 공항비상계획은 관계직원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3. 공항비상계획이 정기적으로 개정 및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공항비상계획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5. 공항비상계획이 다음의 인적요소를 준수하고 있는가?			
가. 유관기관 및 부서간 유기적 협조에 관한 사항			
나. 기후 및 근무환경(현장지휘관등)에 관한 사항			
다. 현장활동 시 주변 환경 요인에 관한 사항			
라. 구조·소방 시 조별활동에 관한 사항			
공항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155조)			
1. 공항비상계획에 다음의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가. 비상사태의 유형			
나. 비상계획에 포함된 기관 및 업체			
다. 비상유형별 각 기관 및 업체의 역할과 책임			
라.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망			
마. 공항 격자지도			
2. 공항비상계획에 다음의 정보가 적절하게 수록되어 있는가?			
가. 비상지원 협정기관			
나. 비상지원 협정기관의 지원능력			
다. 공항내의 수용시설 또는 인접지역의 수용시설			

점검 항목	S	U	N/A or N/I
라. 일반인 통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마. 이동불능항공기의 처리 책임 부서			
바. 그 밖의 공항비상계획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정보			
사. 수상 또는 눈지의 항공기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절차			
아. 공항 인근에 수상, 눈지 또는 위험지형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구조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계획의 점검 및 평가절차			
비상사태의 유형 (제156조)			
1. 비상사태의 유형(10종)별로 대비하고 있는가?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제157조)			
1.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 운영이 가능한가?			
2. 지휘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3. 비상운영센터의 위치가 적절한가?			
4. 이동지휘소가 비상발생장소까지 신속히 이동 할 수 있는가?			
비상통신시스템 (제158조)			
1. 모든 비상대응관련기관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한가?			
2. 외부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적정 수의 무선통신기기를 확보하고 있는가?			
3. 비상계획과 관련된 모든 통신시스템의 매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공항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 (제159조)			
1. 공항 비상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항공청, 항공사, 경찰, 구조소방기관과 협의 되었는가?			
2. 비상계획 관련자의 숙련도가 적절한가?			
3. 공항비상계획 훈련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가?			
가. 종합훈련(2년 1회 이상)			
나. 부분훈련(2년 1회 이상)			
다. 도상훈련(6개월에 1회 이상)			
라. 매년 12월말까지 공항의 일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였는가?			
마. 종합훈련 실시계획을 훈련실시 최소 14일전 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렸는가?			
바. 종합훈련을 공항안전검사관의 배석 하에 실시하였는가?			
사. 종합훈련 및 부분훈련을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였는가?			
비상연락망 관리 (제160조)			
1.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가 표기되어 있는가?			
2. 비상연락망 전화번호가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전화번호로 제한되었는가?			
3. 점검(월1회) 및 기록유지가 적절한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4. 비상연락망 변경 시 수정사항을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는가?			
공항격자지도 (제161조)			
1. 두 가지 형태(공항내부·외부)의 공항 격자지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2. 공항격자지도 수록내용이 적절한가?			
가. 공항 내부 격자지도			
1) 유도로			
2) 급수전의 위치			
3) 집결지 및 대기지역			
4) 공항 접근도로			
5) 공항경계			
6) 개정일자 등			
나. 공항 외부 격자지도			
1) 공항의 경계			
2) 주변지역			
3) 접근도로			
4) 집결지			
5) 의료기관(치료범위 및 이용 가능한 병상 수)			
6) 개정일자 등			
3. 공항 격자지도가 관련 부서에 배포되었는가?			
4. 공항 격자지도의 비치 또는 게시(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소방대, 구조소방차량, 비상대응차량)가 되고 있는가?			
격리주기위치의 운영 (제162조)			
1. 격리주기위치 또는 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는가?			
2. 격리주기위치 지정(안전거리, 위험지역 회피)은 적절한가?			
3. 격리주기위치가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되었는가?			
공항안전관리시스템 (제5장)			
일반 (제163조)			
1. 해당 공항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였는가?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제164조)			
1. 공항 안전관리체계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가. 안전정책 및 목표 나. 안전위험관리 다. 안전보증활동 라. 안전증진활동 마. 경영진(운영자)의 참여 바. 문서화			

점검 항목	S	U	N/A or N/I
공항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시 준수사항 (제165조)			
1. 안전관리시스템에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2.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설정은 적합한가?			
3. 조직 구성 및 책임에 대하여 적절하게 부여하였는가?			
4.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준비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가?			
5.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협의는 적합하였는가?			
6.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의 형태로 수립·운영하였는가?			
7.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실시하였는가?			
8.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를 적합하게 평가하였는가?			
9. 교육훈련, 커뮤니케이션, 협력적인 안전문화의 진흥에 따라 안전증진활동을 하였는가?			
기타사항 (필요시 추가)			

[별표 3]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Checklist)(제13조 관련)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Checklist)

공항명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검 항목	S	U	N/A or N/I	
공항자료(AOS 제2장)				
일반 (제1절)				
공항 표점 (제6조)				
1. 공항 표점의 설정방법이 적절한가?				
2.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도, 분, 초)되었는가?				
공항 및 활주로 표고 (제7조)				
1. 공항표고 위치의 높이와 지오이드 기복 측정 및 보고가 적절하게 되었는가?				
공항 제한 및 관련 정보 (제9조)				
1. 공항의 제한 및 관련정보가 작성되어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2.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되어야 할 공항 제한 및 관련정보가 빠짐없이 보고되었는가?				
3. 활주로 시단, 유도로중심선 및 항공기 주기장의 지리적 좌표 단위(도, 분, 초, 100분의1초)가 적절한가?				
4. 제2지역 및 제3지역에 있는 장애물의 지리적 좌표 단위(도, 분, 초, 10분의 1초)가 적절한가?				
5. 항공정보품질관리기준(별표1의2)에 의거 항공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자료를 제공하였는가?				
항공정보자료 (제14조)				
1. 항공정보품질관리기준(별표1의2)에 따라 항공정보자료를 관리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 및 확인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 재 등재 요청 하였는가?				
2. 항공정보자료의 정확도는 95% 이상의 신뢰수준을 충족하고, 점검표를 이용하여 신뢰수준 확보결과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1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가?				
3. 항공정보자료가 등급별 신뢰도를 충족하고 있는가?				
4. 전자 항공정보자료의 보호가 CRC(Cyclic Redundancy Check)에 의해 전체적으로 감시되고 있는가?				
5.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지리적 좌표는 WGS-84좌표로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 되었는가?				
6. 현장에서 측정된 비행단계용 운항자료의 정확도는 항공정보품질관리기준(별표1의2)의 편차범위 내에 있는가?				
7. 비행장에서 측정된 특정위치의 표고(평균 해수면 기준)와 항공정보품질관리기준(별표1의2)에서 요구하는 위치의 지오이드 기복을 결정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 하였는가?				
8. 항공정보자료 처리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공항 상태보고 (제2절)				
공항상태보고의 기록 및 보관 (제17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공항상태정보에 관한 조치내용의 기록 및 보관(12개월)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공항운영규정 (AOS 제3장)			
일반 (제15조)			
1. 관계직원이 공항운영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2. 업무분야별 책임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가?			
공항운영규정의 관리 (제20조)			
1. 공항운영규정과 관련된 모든 소속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이 동 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는가?			
2. 공항운영규정 개정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3. 공항운영규정 원본과 사본이 최신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4. 공항운영규정 사본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소지자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5. 개정기록표 및 유효목록표의 기록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안전목록표 및 통사자 이용방법에 관한 설명이 서문에 수록되었는가?			
공항운영 (AOS 제4장)			
자격관리 (제1절)			
자격관리 요건 (제27조)			
1. 공항운영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확보·배치하였는가?			
교육훈련 (제28조)			
1. 자체 검사자, 구조소방직원, 계류장 관리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2. 구조소방직원, 계류장 관리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성(초기교육, 직무훈련, 정기교육) 되어 있는가?			
3. 자체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성(자격부여교육, 정기교육, 재자격부여교육) 되어 있는가?			
4. 교육훈련 시간 및 훈련주기가 기준에 충족하는가?			
5. 교육훈련 교관이 기준에서 정한 자격자로 지정되었는가?			
6. 구조·소방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1절의 내용을 포함하였는가?			
7.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보관(12개월)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제2절)			
점검주기 (제29조)			
1.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포장지역)를 준수하고 있는가?			
점검방법 (제30조)			
1. 이동지역 점검표를 적절하게 작성·활용하고 있는가?			
2. 점검 방법이 적절한가?			
점검절차 및 점검 (제31조 ~ 제34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소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2. 활주로, 유도로에 생긴 물, 진창, 기타 오염물의 깊이 측정 및 공시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3. 활주로 표면상태 점검 및 공시가 적절히 되고 있는가?			
4. 이동지역 내 지장물, 등화, 표면처리, 잔디 점검 계획 및 점검방법이 적절한가?			
5. 이동지역 내 지장물 보고로 인한 이륙 포기 관련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 점검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가?			
7. 점검 중 항공교통관제소와의 통신 계획 및 통신 수단이 있는가?			
8. 점검일지 보관 계획 및 보관 위치가 적절한가?			
9. 점검일지 양식 및 기록상태가 적절한가?			
보고 및 조치 (제35조)			
1. 장애 상태 통보조치가 적절한가?			
2. 활주로상에 장애지역이 있을 경우 용이한 식별을 위하여 활주로노면 등 바깥 지역에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3. 활주로상에 물이 존재하는 경우 지정된 용어(DAMP, WET, WATER PATCHES, FLOODED)를 사용하고 있는가?			
활주로 상태보고 (제36조)			
1. 활주로 표면 상태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활주로 상태보고를 하는가?			
2. 활주로 상태보고를 활주로의 오염되지 않을 때까지 중대한 변화를 계속 반영하는가?			
3. 활주로 표면상태는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에 따라 활주로 상태부호(RWYCC)와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 및 보고 하고 있는가?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제37조)			
1.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2.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활주로 마찰측정을 실시하였는가?			
3. 정기마찰측정 및 평가를 실시할 경우(표2)에서 정한 최소주기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4. 활주로 마찰측정은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5. 각 활주로 마찰측정결과를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였는가?			
6. 마찰측정결과는 최소 5년간 보관하였는가?			
7. 마찰측정장비를 장비운영교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이동지역 유지보수 (제38조)			
도면의 관리(시각지원시설) (제39조)			
1. 유지보수에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준공도면을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는가?			
2.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가?			
3. 1년에 1회 이상 도면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있는가?			
표지의 관리 (제40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가?			
포장구역의 관리 (제41조)			
1. 포장면의 가장자리와 인접한 포장부분 또는 인접한 노면과의 단차가 기준(7.5cm)을 초과하는 지역은 없는가?			
2. 포장면에 포트홀 기준(깊이 7.5cm, 내측면 기울기 45°, 직경 12.5cm)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가?			
3. 포장면이 항공기의 방향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이 변화한 곳은 없는가?			
4. 포장면이 함몰되거나 배수상태 불량으로 물이 고여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곳은 없는가?			
5. 이·착륙가용거리로 공시된 활주로 구간에 물이 고이는 웅덩이(깊이 13mm)는 없는가?			
6. 활주로 또는 활주로 일부분에서 배수특성이 좋지 않을 경우 마찰측정 실시 및 보수조치 등을 하였는가?			
7. 유도로 갭길에 돌맹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제거되어 있는가?			
8.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포장면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중단안전구역의 관리 (제42조)			
1. 청결하고 경사도가 적절한가?			
2. 잠재적으로 위험한 바퀴자국, 언덕, 지표함몰 또는 지면변화가 없는가?			
3. 물 고이는 지역이 없는가?			
4. 지지강도(간조한 상태 하에서 구조소방차량 지지)가 적절한가?			
5. 불법 장애물이 없는가?			
활주로 포장 덧씌우기 (제43조)			
1. 활주로포장 전구간의 덧씌우기가 완료되기 전에 활주로의 운영상태로 복귀되는 경우 임시경사면은 기준(두께 5cm 이하 : 0.5~1%, 5cm 이상 : 0.5% 이하)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가?			
2. 활주로포장 덧씌우기 작업 시 안전조치 및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였는가?			
이동지역의 지지강도 (제44조, 별표 1)			
1. 정기적으로 포장평가를 하고 적절한 보수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2. PCN보다 높은 ACN을 갖는 항공기에 의한 포장의 사용을 통제하는가?			
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제45조)			
1. 포장(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지역)면에 마찰력에 해로운 오염물질(눈, 얼음, 물웅덩이, 진흙, 모래, 기름, 고무 등)이 없는가?			
2. 포장(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지역)표면에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 등에 해로운 파편(돌, 종이, 모래, 금속, 포장재 조각 등)이 없는가?			
활주로의 고무 제거 (제46조)			
1. 활주로 고무제거 최소주기에 따라 정기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2. 고무제거 작업방법이 적절한가?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제47조)			
1. 활주로 최소마찰수준 이하일 때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는가?			
2.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이동지역 작업통제와 안전조치 (제4절)			
작업통제의 책임 및 의무 (제48조)			
1. 공사 및 보수작업의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진행 중인 작업의 통제, 조정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가?			
일상 유지보수 작업 (제49조)			
1. 일상적인 보수작업 절차(이동지역 출입인가, 무선교신장비 휴대, 공항의 관계탑 및 계류장 관리부서)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소규모 공사 / 유지보수작업 (제50조)			
1. 소규모의 공사 또는 보수작업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대규모 공사 / 유지보수작업 (제51조)			
1. 공사시행 최소9주 전에 시행계획을 지방항공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는가?			
2. 대규모의 공사 또는 보수작업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착륙대/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 (제52조)			
작업 시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을 준수하는가?			
이동지역 관리기준 수립 (제53조)			
1. 차량 및 장비의 등록과 안전도 검사 등에 관한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운전자 승인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 차량 및 장비의 운행규칙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4. 운전자 교육훈련 내용은 적절한가?			
기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제54조)			
1. 기동지역 출입 차량 및 장비의 통제조치(출입허가, 무선교신장비, 운전자격, 공항평면도비치, 차량표지 및 조명 등)가 적절한가?			
2. 차량통제에 필요한 표지 및 등화, 표지판 제공 및 관리가 적절한가?			
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 (제55조)			
1. 계류장 출입 차량 및 장비의 통제조치(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 부착, 운전자 교육)가 적절한가?			
2. 차량 안내표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적절한가?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 (제56절)			
일반 (제57조)			
1. 다음의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조치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가. 교통통제업무			
나. 항공기 질서유지업무			
다. 항공기 후방견인과 엔진시동 허가			
라. 지상이동차량 통제업무			
마. 주기장 배정업무			

점검 항목	S	U	N/A or N/I
2. 다음의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무선 통신설비 구비			
나. 차량 이동 및 운행규칙 수립			
다. 사람과 차량의 제한			
라. 긴급 출동 차량의 우선권 부여			
마. 차량 및 항공기의 진로양보 우선순위 적용			
바. 항공기 주기장에 대한 시각적 감시			
사. 계류장 내 위험지역 또는 제한지역의 표지 및 조명 설치			
아. 항공기 후면에 지상조업도로 등 이동물체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규칙 제정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제58조)			
1.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는가?			
2. 지상조업사와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였는가?			
3. 지상조업사와의 서비스협약의 이행여부 점검과 조업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항공기 주기장 배정 (제59조)			
1. 주기장 배정기준을 적절히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제60조)			
지상유도안내업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1. 수신호 유도업무			
2. 차량선도 유도업무			
3.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제61조)			
1. 제트분사로부터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제트분사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 환기조치			
나. 차량 및 장비의 정치방법			
다. 파편 등의 제거			
라.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			
마. 기타 공항 특성에 필요한 사항			
2. 제트분사로부터 보호거리(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56km/h까지 감소되는 지점)가 적절하게 확보되었는가?			
3. 주기장 진·출입 방법 및 항공기 이동 동선체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제61조)			
1. 결박시설의 설치는 적절한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제62조)			
1. 계류장에서 항공기 급유 시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2. 안전조치 기준에 다음사항이 포함되었는가?			
가. 흡연 또는 불꽃 발생 행위금지			
나. 급유중 보조동력장치와 지상동력공급장치 시동금지			
다. 항공기에 승객 탑승 또는 승·하기 도중 급유시 조치			
라. 항공기와 급유차량간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의 병행			
마. 소화기 비치 및 소화장비에 대한 훈련을 받은 직원 확보			
바. 급유 감독자의 감시			
사. 화재 또는 연료 누유시 조치			
3. 항공기 지상조업 중에는 연료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계류장의 청결유지 (제63조)			
1. 계류장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2.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 계류장 청결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제64조)			
1. 계류장 내 지상근무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있는가?			
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의 발생보고 (제65조)			
1. 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되었는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제66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수립(제66조)			
1. 공항 이동지역내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제67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설계 시 다음사항이 고려되었는가?			
1. 항공교통밀도			
2. 운영시정 조건			
3. 조종사 적응도			
4. 공항 평면의 복잡성			
5. 차량의 이동상태			
시설 및 운영요건 (제68조)			
1.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이 다음사항을 충족하는가?			
가. 비행장 표지(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5장) 및 표지판기준(별표6), 항공등화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각지원시설의 설치			
나. 사용 중인 활주로에 항공기 및 차량의 침입방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설계			

점검 항목	S	U	N/A or N/I
다. 이동지역에서 항공기간, 항공기와 차량 또는 장애물간의 충돌 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라. 유도로 중심선등 점등에 의하여 지시된 유도경로는 점등된 정지선등에 의해 종료(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만 적용)			
마. 제어회로는 항공기의 앞쪽에 위치한 정지선등이 점등될 때 정지선등을 넘어선 유도로 중심선등의 해당구역은 소등(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만 적용)			
바. 정지선등이 소등되면 항공기의 앞쪽 유도로 중심선등은 점등(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만 적용)			
사. 활주로가시범위가 350m 미만인 활주로를 사용하는 공항에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아. 절차와 시설에 의해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밀도와 운영조건일 때 공항에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저시정운영절차 (제70조)			
1. 저시정운영절차를 수립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시설·장비를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SMGCS 위원회의 승의를 받았는가?			
2. 저시정운영절차 관련 기관별, 담당자별 임무 및 책임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3. 저시정운영절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저시정 이동경로도면이 작성되어 있는가?			
가. 항공기의 활주로 및 유도로 진·출입 경로			
나. 항공기의 계류장 내 진·출입 경로			
다. 구조 및 소방차량 이동 경로			
라. 계류장 내 차량 및 장비 이동 경로			
교육 및 훈련 (제71조)			
저시정운영과 관련된 소속직원, 이동지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입주업체 직원 등에게 저시정운영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가?			
장애물의 통제 (제72조)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제72조)			
1.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 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 기준에 따르고 있는가?			
이동장애물의 제한기준 (제73조)			
1. 활주로 시단 후방 길이 1,200m, 폭 300m(비계기 150m)의 범위 내 진입구역에 대하여 이동장애물의 안전 영향 유무를 고려하였는가?			
무장애구역의 기준 (제74조)			
1. 고정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았는가?			
장애물 관리 (제75조)			
1. 공항시설법 제34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고 있는가?			
공항시설 (제8절)			
공항의 시설기준 (제76조)			
1.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행장표지 등 공항의 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고시)에 따라 설치되었는가?			
착륙대 내의 물체 등 (제77조)			
1. 예외로 인정한 착륙대 내의 개거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AIP 수록 및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였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유도로대 내의 물체 등 (제78조)			
1.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의 폭 부족구간에 대한 위치 등에 관한 정보는 AIP 수록 및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였는가?			
유도로대의 폭 (제79조)			
1. 예외로 인정된 유도로대의 개거 배수로의 위치, 깊이 등에 관한 정보는 AIP 수록 및 공항 취약시설로 관리하였는가?			
제방방시설의 설치 (제80조)			
1. 제방·방방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항 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이동지역운영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관련정보를 AIP에 수록하였는가?			
공항사용의 제한(제81조)			
1.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항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제82조)			
1.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항시설 또는 운영 절차를 비행안전 확인을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시각지원시설 (제9절)			
항행안전시설 보호 (제83조)			
1. 전파 또는 시각적 장애 시설이 없는가?			
2. 파손, 도난, 망실되지 않도록 보호되는가?			
3. 전파장애 또는 시각적 간섭에 관한 사전 예방조치가 실시되는가?			
지향신호등 관리·운영 (제84조, 별표 3)			
1. 관제탑 또는 계류장관제소에 지향신호등이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2. 불빛은 적색, 녹색, 백색이 선명하게 표시되는가?			
3. 조작 스위치는 원활(필요한 목표 수동 조준 가능)하게 작동하는가?			
풍향등 관리·운영 (제85조, 별표 4)			
1. 풍향등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2. 풍향등 관리·운영이 적절한가?			
3. 지시기의 섬유제품 길이 3.6m 이상, 넓은 쪽의 지름 0.9m 이상, 짧은 쪽의 지름 0.3m 이상이 되는가?			
4. 지시기의 색상은 적합한가? 가. 단일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 오렌지색 또는 백색 나. 색상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 오렌지색과 백색, 적색과 백색, 흑색과 백색			
5. 조명등이 부착된 풍향등(야간 운영공항)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표지의 설치 (제86조,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1. 각 진입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에 있는 표지판, 마킹, 신호 등 모든 시각 장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는가?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제87조)			
1. 비행장등대는 운항시간대에 작동하고 있는가?			
2. 항공등화(비행장등대 제외)가 항공기 착륙예정시각 최소 10분 전에 점등되고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3. 항공등화(비행장등대 제외)가 항공기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4. 항공등화는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고시)에 따라 운영·유지관리 하고 있는가?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 (제88조)			
조명(유사등화)의 관리			
1. 조명의 소등, 차폐 또는 변경 -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조명은 없는가?			
2. 조명의 위치조정 및 차폐 - 계류장, 주차지역, 차도, 급유시설지역 및 건물외곽에 설치된 조명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항공등화 기준 (제93조)			
1.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가. 공항 내 또는 인근에 비행장등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나. 비행장등대가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 또는 진입중인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발생하지 않는가?			
다. 색상은 백색/녹색섬광 또는 백색섬광으로 발산하고 있는가?			
라. 섬광의 총 횟수는 분당 20회 ~ 30회로 작동하고 있는가?			
마. 비행장등대가 모든 방위각에서 보이는가?			
2.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			
가. 간이식 진입등시스템			
1) 바렛이 30m 또는 6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횡선표시등이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300m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3)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420m까지 설치되어 있는가?			
4)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420m까지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00m까지 횡선표시등을 포함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나. 정밀접근 CAT-I 진입등시스템			
1) 횡선표시등이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300m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2) 바렛은 3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3) 진입등시스템 평면(마지막 바렛의 60m, 진입등시스템 중심선 양쪽으로 60m) 내에 진입등시스템보다 높은 장애물(단, ILS안테나 제외)은 없는가?			
4) 진입등시스템보다 높은 ILS 안테나는 주간장애표지와 항공 장애등을 설치하였는가?			
5) 연색식 섬광등은 활주로 시단방향으로 1초당 2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되고 있는가?			
6) 섬광등은 별도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가?			
7) 횡선표시등 및 중심선표시등은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8) 진입방향에서 차폐되는 등은 없는가?			
다. 정밀접근 CAT-II/III 진입등시스템			
1) 바렛은 3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 축렬표시등은 접지구역등과 같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3) 측량표시등은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4) 횡선표시등이 활주로시단으로부터 150m 및 300m지점에 설치되어 있는가?			
5) 횡선표시등 및 중심선표시등은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6) 진입등시스템 평면(마지막 바렛의 60m, 진입등시스템 중심선 양쪽으로 60m) 내에 진입등시스템보다 높은 장애물(단, ILS안테나 제외)은 없는가?			
7) 진입등시스템보다 높은 ILS 안테나는 주간장애표지와 항공 장애등을 설치하였는가?			
8) 횡선표시등 및 중심선표시등은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9) 연쇄식 섬광등은 활주로 시단방향으로 1초당 2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되고 있는가?			
10) 섬광등은 별도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가?			
11) 진입방향에서 차폐되는 등은 없는가?			
3.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가. 활주로 방향별로 진입각지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진입각지시등은 4조/8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 등기구는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되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첫 번째 등기구는 활주로 옆선에서 15m(±1m)에 설치되어 있는가?			
마. 등기구 간의 간격은 9m(±1m)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등기구의 진입각은 GP와 일치하는가?			
사. 장애물 등에 차폐되는 등기구는 없는가?			
아. 각 등기구의 양각조절이 가능한가?			
자. 각 유니트별 양각을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4.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가. 활주와 정대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로 시단에서 옆쪽으로 약40m를 이격하여 약 30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섬광등은 활주로 시단방향으로 1초당에 1회씩 순차적으로 점등되고 있는가?			
라. 불빛은 백색 섬광등 또는 백색 고정등(또는 가스 방전등)인가?			
5.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 Lighting Systems)			
가. 활주로유도등은 곡선, 직선 또는 곡선/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 그룹간의 간격은 약 1,600m 이내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백색의 섬광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 분당 섬광횟수는 60회로 활주로를 향해 순차적으로 섬광 되는가?			
6. 활주로시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가. 비계기활주로/비정밀활주로에 420m미만의 진입등시스템이 있을 경우 활주로 시단식별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시단식별등은 활주로등렬로부터 약 10m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다. 섬광주기는 분당 60회~120회로 점등되는가?			
라. 시단식별등은 활주로로 진입하는 방향에서만 보이는가?			
마. 등기구는 수평 외측 15°, 수직상방 10°로 조정되어 있는가?			
바. 광도는 5,000칸델라 이상인가?			
7.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가. 활주로등은 활주로 옆선에서 3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간의 간격은 60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시단이 이설된 경우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이설시단까지 진입방향에서 적색으로 보이는가?			
라. 활주로 마지막 600m 또는 활주로 총 길이의 1/3중 짧은 구간의 활주로등은 활주로 종단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황색으로 보이는가?			
마. 다목 및 라목 외의 활주로등은 백색으로 보이는가?			
8.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가. 활주로 시단에서 바깥쪽으로 3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비계기/비정밀 접근활주로는 6등 이상 일정한 간격 또는 3등 이상의 동일한 간격 3그룹으로 구성하되 그룹간 간격은 접지구역표지(접지구역등이 있는 경우 접지구역등) 간격과 동일하거나 활주로 등렬간격의 1/2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정밀접근활주로는 활주로 등렬사이를 3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색상은 진입방향에서 녹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9.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Wing bar Lights)			
가. 비계기/비정밀 접근활주에서 시단이 이설되어 시단등이 없을 때 시단연장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로 중심선에 대해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다. 연장등은 활주로 등렬에 직각이고 외측으로 10m 이상 연장하여 5개 이상의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연장등의 가장 안쪽등은 활주로등렬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가?			
마. 색상은 진입방향에서 단일방향의 녹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0.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가. 활주로 종단에서 바깥쪽으로 3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의 수량은 6등 이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3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그룹간 간격이 활주로 중심선을 대칭으로 활주로 가장자리 간격의 1/2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정밀접근활주로 CAT-III에서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색상은 진입방향에서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1.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re Line Lights)			
가. 정밀접근활주로 CAT-II/III에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RVR 400m 미만인 이륙활주로에 활주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은 활주로중심선에서 60cm 이내로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라. RVR 300m미만에서 등 간격은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RVR 300m이상에서 등 간격은 3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활주로 길이가 1,800m 이상인 곳에서는 활주로종단에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300m까지는 적색, 300m에서부터 600m까지는 적색과 백색의 교대색상, 그 외 지역은 백색이 나타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사. 활주로 길이가 1,800m 미만인 곳에서는 활주로종단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300m 까지 적색, 300m에서부터 중앙지점까지 적색과 교대색상, 그 외 지역은 백색이 나타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아. 이설 시단이 있고 이설시단으로부터 진입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설시단으로부터 종단까지는 이륙방향에서는 적색, 착륙방향에서는 차폐되어 있는가?			
12. 접지구역등(Runway Touchdown Zone Lights)			
가. 정밀접근활주로 CAT-II/III에서 접지구역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시단에서부터 900m(활주로 길이가 1,800m 미만은 중앙지점)까지 설치되어 있는가?			
다. 바렛의 등 간격은 1.5m 이하의 간격으로 3등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라. 바렛의 길이는 3m~4m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등 색상은 단일방향의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바렛간의 종 간격은 30m/60m로 설치되어 있는가?			
사. 바렛의 가장 내측 등사이의 간격은 접지구역표지 사이의 간격과 동일한가?			
13.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Rapid Exit Taxiway Indicator Lights)			
가. RVR 300m미만일 활주로 또는 교통밀도가 고밀도(이륙·착륙횟수가 26회 이상/시간 또는 총 이·착륙회수가 35회 이상)인 활주위에 고속탈출유도로 지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완전히 소등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의 시작점은 접촉점에서 100m지점부터 시작하여 100m 간격으로 1등, 2등 및 3등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활주로중심선에 가장 가까운 등은 활주로중심선에서 2m 격리되어 있는가?			
마. 등은 2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한 본의 활주로상에 여러 개의 고속탈출유도로가 있는 경우 고속탈출유도로 지시등은 서로 겹쳐지는 곳은 없는가?			
사.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황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 회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가?			
14. 정지로등			
가. 야간에 사용하는 정지로가 있는 곳에 정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활주로 등렬 선상에 60m이내의 간격과 정지로 끝에서 바깥으로 3m이내에 활주로중심선을 기준으로 1.5m 간격의 3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re Line Lights)			
가. RVR 300m미만의 조건에서 사용하는 탈출유도로, 유도로, 제빙·방빙 시설 및 계류장에 유도로중심선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활주로중심선과 항공기 주기장 사이에 연속적인 안내를 해 주고 있는가?			
다. 등의 색상은 녹색(단, 탈출유도로와 활주로상은 제외)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라. 탈출유도로상과 활주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이 ILS 임계/민감지역에 저축될 경우 등 색상은 녹색과 황색이 교대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마. 등은 유도로중심선과 30cm 이내로 떨어져 있는가?			
바. 유도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1) 등 간격은 60m 이내(단, 짧은 직선구간은 30m, RVR 300m 미만인 곳은 15m)로 설치되어 있는가?			
2) RVR 300m 미만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유도로 곡선부의 등간격은 15m 이하(곡선반경이 400m 미만은 7.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사. 고속탈출유도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1) 등은 유도로중심선의 곡선부분 시작 전 60m이상 지정부터 설치되어 있는가?			
2) 제1호의 경우 유도로중심선등은 활주로중심선등과 60c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가?			
3) 등은 15m이하(단, 활주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에는 30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아. 기타 탈출유도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1) 탈출유도로상(단, 고속 탈출유도로는 제외)의 등은 유도로중심선 표지가 활주로중심선표지로부터 곡선이 되는 지정부터 설치되어 있는가?			
2) 첫 번째 등은 활주로중심선 등렬로부터 60cm이상 이격되어 있는가?			
3) 등의 간격은 7.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자. 활주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RVR 300m 미만의 조건에서 표준 유도로의 일부분인 활주로상의 유도로중심선등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16.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가. 야간에 사용하는 유도로에 유도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 유도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회전패드, 대기지역, 제빙·방빙 시설 계류장에 유도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준 유도로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유도로중심선등이 없고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상에 유도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라. 유도로의 직선 및 곡선구간의 등은 60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대기지역, 제빙·방빙 시설, 계류장지역의 등은 6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활주로 회전패드상에 있는 유도로등은 30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사. 등은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3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아. 등의 색상은 청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7. 활주로 회전패드등(Runway Turn Pad Lights)			
가.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회전패드에 회전패드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활주로 회전패드표지에서 30cm 이내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의 직선상에 설치하는 등은 15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의 곡선상에 설치하는 등은 7.5m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등은 항공기 또는 진입방향에서 볼 수 있는 단일방향의 녹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8. 정지선등(Stop Bars)			

점검 항목	S	U	N/A or N/I
가. RVR 550m 이하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활주로정지위치에 매립형 정지선등이 설치(단, 운항절차로 항공기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는가?			
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교통관제를 하는 공항의 일시정지 위치에 매립형정지선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다. 매립형 정지선등은 3m 간격(허용범위 2.4m~4m)으로 유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라.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마. 노출형 정지선등은 유도로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3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가?			
바. 진입유도로에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는 정지선등은 선택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가?			
사. 선택적으로 점·소등 할 수 있는 정지선등은 정지선등 이후의 유도로 중심선등과 90m(3등) 이상 연계되어 정지선등이 점등(소등)되었을 경우 유도로중심선등은 소등(점등)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가?			
19.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			
가. RVR 300m 미만에 사용하는 활주로의 일시정지위치에 일시정지위치등이 설치(단, 정지선등이 설치된 곳은 제외)되어 있는가?			
나. 등은 일시정지위치표지로부터 30cm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등의 수량은 3등 이상으로서 1.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0. 제·방빙시설출구등(De-icing/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			
가. 유도로에 인접해 있는 원격 제빙·방빙시설 경계의 출구에 제빙·방빙시설출구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은 일시정지위치표지의 안쪽으로 30c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황색으로서 6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매립형)되어 있는가?			
21.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			
가. RVR 1,200m 이하인 활주로의 경우 활주로/유도로 교차지역에 노출형 활주로 경계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은 2쌍의 황색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은 정지선등과 함께 설치하지 않았는가?			
라. 주간에 사용되는 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은 태양광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가?			
마.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은 황색 섬광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각 등은 서로 조화되게 교대로 점등되고 있는가?			
바. 매립형 활주로경계등의 간격은 유도로를 횡단하여 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사. 노출형 활주로경계등은 황색섬광등으로 각 등은 교대로 점등되고 있는가?			
아. 섬광 주기는 분당 30 ~ 60회로 작동하는 가?			
22.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가. 야간에 사용하는 계류장, 제빙·방빙 시설, 지정된 격리주기장에 계류장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의 불빛은 관제사, 조종사 또는 계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눈부심은 없는가?			
다. 불빛은 항공기의 표지, 노면 및 장애물표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포되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라. 평균조도는 다음기준에 적합한가? - 항공기 주기장 : 수평면 20룩스 이상으로서 평균대 최소비율 4:1이하 - 기타지역 : 항공기 주기장 평균조도의 50% 이상으로서 평균대 최소비율 4:1 이하			
23.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가. 지상 유도원이 없는 공항에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이 시스템은 방위와 정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가?			
다. 방위안내장치와 정지위치지시기는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는가?			
라. 방위안내장치와 정지위치지시기는 항공기 주기장표지와 항공기주기장 안내등(설치되어 있는 경우)과 연속적인 안내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마. VDGS는 탑승교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바. VDGS는 주기장의 모든 항공기 기종에 사용될 수 있는가?			
사. 특정 항공기가 VDGS를 사용할 경우 조종사와 운용자에게 항공기 기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가?			
아. VDGS는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자. 방위안내장치(Azimuth Guidance Unit)			
1) 탑승교로 진입중인 조종사가 방위신호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2) 좌·우측 안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가?			
3) 중앙선은 녹색, 중앙선 이탈은 적색으로 나타나는가?			
차. 정지위치지시기(Stopping Position Indicator)			
1) 10m 이상의 거리에서 접근속도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가?			
2) 색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녹색은 항공기 진행, 적색은 정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단, 정지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3의 색채 사용가능)			
24.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oeuvring Guidance Lights)			
가. 등의 색상은 안내를 해 주고자 하는 방향의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나. 정지구간에 설치하는 등의 색상은 단일방향의 적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항공기 주기장을 사용할 경우에 점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등 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가?			
라. 등간격은 곡선부 7.5m 이하, 직선부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25.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			
가. RVR 300m 미만에서 활주로와 연결된 도로에 도로정지위치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등의 위치는 도로의 대기위치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1.5m(±0.5m) 지점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등기구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관제탑에서 제어할 수 있는 도로정지위치등은 적색(정지)/녹색(진행) 교통신호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 관제탑에서 제어할 수 없는 도로정지위치등은 적색섬광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바. 적색섬광등의 주기는 적정(분당 30 ~ 60회)한가?			
사. 등의 빛은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26. 그 밖의 항공등화시설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가?			
27. 항공등화의 주 빔 광도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배광곡선 광도 값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가?			
표지판 (제94조, 별표 6)			
1. 표지판은 고정 또는 가변메시지 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정해진 시간동안만 지시사항이나 정보를 나타내거나 할 경우 또는 SMGCS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여러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되었는가?			
3.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가?			
4.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정보도 나타나지 않는가?			
5.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다른 정보로 전환되는 시간은 5초 이내로 동작하는가?			
6. 표지판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7. 활주로 및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지판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음체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되어 있는가?			
8. 표지판은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게 설치되어 있는가?			
9. 표지판 규격은 다음기준에 적합하나?(분류번호 3 또는 4) - 면의 높이 600mm, 문자크기 300mm, 설치높이 900mm이하 - 면의 높이 800mm, 문자크기 400mm, 설치높이 1100mm이하			
10. RVR 800m미만,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계기활주로 또는 분류번호 3, 4인 비계기활주로)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가?			
11.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1, 2인 비계기활주로의 표지판은 역반사 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가?			
표지판 설치기준			
1. 명령지시표지판			
가. 활주로명칭표지판			
1) 활주로/유도로 또는 활주로/활주로 교차지역의 활주로 정지위치표지 옆 양쪽에 활주로명칭표지판이 있는가?			
2)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3) 표시명은 교차하는 활주로명칭(시단부근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련된 활주로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활주로/유도로 교차지역의 표지판은 바깥에 추가로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5)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하나?			
나. CAT I, II, III, II/III정지위치표지판			
1) ILS의 임계/민감지역의 활주로정지위치표지 옆 양쪽에 CAT I, II, III, II/III정지위치표지판이 있는가?			
2)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3) 비계기활주로의 활주로정지위치와 CAT-I 정밀접근활주로의 활주로정지위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활주로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하나?			
다. 활주로정지위치표지판			
1) 지상주행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해하거나 무선시설 운영에 방해가 된다면 활주로정지위치표지 옆 양쪽에 활주로정지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의 위치(비정밀 75m 이상, 정밀 90m 이상)는 적정하나?			

점검 항목	S	U	N/A or N/I
3) 표지판의 문자는 유도로 명칭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5)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하나?			
라. 도로정지위치표지판			
1) 활주로와 연결된 도로에는 도로정지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은 도로정지위치표지의 좌측 또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1.5m지점에 있는가?			
3)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을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역반사 또는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5) 표지판은 정지하기 위한 조건(필요한 경우 관제탑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구 조건 및 위치표시)이 포함되어 있는가?			
6)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하나?			
마. 진입금지표지판			
1) 진입이 금지된 지역에 진입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유도로의 양쪽에 설치하였는가?			
3) 표지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시명은 기준에 적합하나?			
2. 정보표지판			
가. 일반사항			
1) 유도로는 하나의 문자, 문자의 조합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명칭에 의해 식별 되는가?			
2) 유도로 명칭을 표기 할 경우에 I, O 또는 X의 단어사용과 1 또는 0의 숫자로 표기된 표지판은 없는가?			
3) 이동지역에 숫자만 사용(활주로명칭 제외)한 표지판은 없는가?			
4) 정보표지판(위치표지판 제외)과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한 표지판은 없는가?			
5) 유도로 교차지역의 표지판은 유도로 교차지역 표지 옆에 설치하였는가?			
6) 유도로 교차지역에 유도로 교차지역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교차유도로 중심선에서 60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가?			
7) 정보표지판(위치 표지판 제외)은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되지 않았는가?			
나. 방향표지판			
1) 교차부에서의 방향표지판은 유도로의 명칭과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가?			
2) "T"형과 같은 교차지역에서 유도로가 끝나는 것을 표시해 줄 경우에는 방향표지판(또는 바리게이트, 기타 적절한 시각 보조시설)을 교차지점 반대쪽에 설치하였는가?			
3) 유도로의 좌측("T"형 교차지점을 나타내는 방향표지판 제외)에 설치(이격거리가 기준미달일 경우에는 우측)하였는가?			
4)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된 방향표지판은 없는가?			
5) 표시명은 화살표와 알파벳 또는 알파벳,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6) 위치 및 방향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의 방향 표지판은 적절하게(좌측 반 시계방향, 우측 시계방향)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7) 표지판의 경계는 흑색수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8)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다. 위치표지판			
1) 활주로명칭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단, 활주로/활주로 교차지점 제외)되어 있는가?			
2) 유도로 교차지역 전에 경로표시를 할 경우에는 방향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되어 있는가?			
3) 일시정지위치에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은 유도로의 좌측(이격거리가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우측, 교차지역을 지나 설치하는 표지판은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였는가?			
5) 개방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한 경우에 위치표지판은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가?			
6) 표시명은 포장지역 위치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7) 위치표지판이 동일한 유도로에서 일시정지위치를 표시할 경우에 유도로 명칭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8) 활주로명칭표지판과 결합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바깥쪽에 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9)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표지판이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황색테두리가 있는가?			
라. 목적지표지판			
1) 유도로의 좌측(다만, 지형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때문에 좌측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시명은 목적지(알파벳, 알파벳 문자 또는 숫자)로 화살표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3) 목적지표지판은 유도로의 위치표지판과 방향표지판이 함께 설치된 곳은 없는가?			
4)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 활주로탈출표지판			
1) 활주로 출구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2) 표지판은 활주로중심선과 유도로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60m 이상 떨어져 있는가?			
3) 표시명은 출구 유도로명칭과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가?			
4) 명령지시표지판과 함께 설치된 활주로탈출표지판은 없는가?			
5)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바. 활주로개방표지판			
1) 탈출유도도에 유도로중심선등이 없는 경우 ILS 임계/민감지역이 벗어나는 지점에 활주로개방표지판이 있는가?			
2) 표시명은 활주로정지위치표지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 중간이륙표지판			
1) 중간이륙을 위하여 이륙활주거리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곳에 중간이륙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위치는 진입유도로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3)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지판은 활주로중심선에서 60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가?			
5) 표시명은 이륙활주거용거리와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 VOR 체크포인트표지판			
1) VOR 체크포인트표지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은 항공기 조종석에서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3)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4) 표시내용은 VOR체크포인트를 표시하는 약어와 관련 무선주파수 또는 방위각이나 방위각과 DME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가?			
자. 주기장식별표지판			
1) 주기장식별표지는 가능한 주기장식별표지판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3) 항공기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가?			
4) 항공기주기장 지리적좌표가 있는 경우 도, 분, 초, 100분의1초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가?			
차. 공항식별표지판			
1) 표지판은 수평면상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판은 공항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 색상은 주위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문자의 높이는 3m 이상인가?			
표시물 (제59조, 별표 7)			
1. 표시물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2.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시물은 항공기 엔진과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낮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3. 정지로 가장자리표시물			
가. 정지로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정지로 가장자리표시물을 설치하였는가?			
나. 표시물은 활주로 가장자리표시물과 다르게 설치하였는가?			
4. 눈으로 덮인 활주위에 대한 가장자리표시물			
가. 눈으로 덮인 활주위에 활주로 사용한계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지 못한 공항에 표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시물은 10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시물은 활주로 시단 및 종단지역에 충분히 설치되었는가?			
라. 표시물의 높이는 약1.5m의 초록색 나무 또는 가벼운 표시물로서 잘 보이는가?			
마. 눈으로 덮인 활주위에 대한 가장자리표시물은 활주로 중심선에 대칭으로 설치되었는가?			
5. 유도로가장자리표시물			

점검 항목	S	U	N/A or N/I
가. 분류번호 1 또는 2인 경우 유도로중심선등, 유도로등 또는 유도로중심선표시물이 없는 곳에 유도로가장자리표시물이 설치되었는가?			
나. 표시물은 유도로등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표시물은 원통형으로서 청색의 역반사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 표시된 면은 직사각형으로 최소면적은 150㎠ 인가?			
마. 높이는 충분히 낮은가?			
6. 유도로중심선표시물			
가. 분류번호 1 또는 2인 경우 유도로중심선등, 유도로등 또는 유도로가장자리표시물이 없는 곳에 유도로중심선표시물이 설치되었는가?			
나. 분류번호 3 또는 4인 경우 유도로중심선등 표지가 없는 곳에 유도로 중심선 표시물이 설치되었는가?			
다. 표시물은 유도로중심선표지(30cm까지 이격가능) 위에 유도로중심선등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라. 표시물은 원통형으로서 녹색의 역반사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 볼 수 있는 면은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최소면적은 20㎠인가?			
7. 금지구역표시물			
가.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지역에 항공기 이동에는 부적합하지만 항공기가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표시물을 설치하였는가?			
나. 표시물은 조밀하게 설치하였는가?			
다.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으로 구성되었는가?			
라. 깃발			
1) 한 변이 0.5m 이상인 정사각형의 면적인가?			
2) 색상은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이거나 이들 색채 중 한 색채와 백색과의 조합색으로 되어 있는가?			
마. 원추체			
1) 높이는 0.5m 이상인가?			
2) 색상은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이거나 이들 색채 중 한 색채와 백색과의 조합색으로 되어 있는가?			
바. 표지판			
1) 높이는 0.5m 이상, 길이는 0.9m 이상인가?			
2) 색상은 적색과 백색, 오렌지색과 백색으로 번 갈아서 세로 줄무늬로 되어 있는가?			
8. 비포장 활주로 가장자리표시물			
가. 비포장 활주로의 가장자리표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활주로조명이 있을 경우에는 활주로조명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다. 활주로조명이 없을 경우 표시물은 직사각형 또는 원뿔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 직사각형의 표시물은 3m×1m의 크기로 활주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마. 원뿔형 형태의 표시물 높이는 50cm 이하인가?			
9. 비포장 유도로 가장자리표시물			

점검 항목	S	U	N/A or N/I
가. 비포장 유도로에 가장자리표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유도로 조명이 있을 경우에는 유도로조명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가?			
다. 유도로 조명이 없을 경우 표시물은 원뿔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경계표시물			
가. 활주로나 없는 공항에 경계표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나. 표시물의 간격은 200m 이하(단, 각 모서리에 원뿔형 표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0m 이하)인가?			
다. 표시물은 원뿔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 표시물의 베이스 직경은 75cm 이상, 높이는 50cm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마. 색상은 오렌지색, 적색의 단일 색과 오렌지색과 백색, 적색과 백색으로 되어 있는가?			
장애물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10절)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 물체 (제96조, 별표 8)			
다음의 물체에 대하여 표지 및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1. 이동지역에서 사용하는 차량과 기타 이동물체(단,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서비스차량과 장비,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계류장 가장자리선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항공기 주기장과 건물 및 울타리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는 제외)			
2. 이동지역내의 노출형 항공등화			
3.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내에 있는 장애물			
4. 진입표면중 내측 가장자리로부터 3,000m 이내에 진입표면 위로 돌출된 고정 장애물(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5. 장애물외에 진입표면에 인접한 고정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6. 수평표면 위의 고정장애물(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7.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돌출된 고정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8. 고가선, 가공케이블(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9.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7조, 별표 9)			
1. 표지 하여야 할 고정물체는 색채(색채로 표시가 곤란한 물체는 표시물 또는 깃발 설치)로 표시하였는가?			
2. 표지 하여야 할 이동물체는 색채 또는 깃발로 표시하였는가?			
가. 색채			
1) 가로 및 세로의 크기가 각각 4.5m 이상일 경우에 체크무늬 형태로 표시하였는가?			
2) 체크무늬 형태의 표지는 직사각형 한 변이 1.5m ~ 3m로 구성되어 있는가?			
3) 체크무늬 형태의 표지 중 모퉁이는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4) 체크무늬 형태의 색채는 오렌지색/백색 또는 적색/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직사각형 한 변이 1.5m 이상, 다른 변이 4.5m이하의 크기는 줄무늬로 채색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6) 연속적인 표면을 가진 1개의 치수가 수직 또는 수평 중 1.5m 이상의 크기를 갖는 골격형 구조는 줄무늬로 채색되어 있는가?			
7) 줄무늬는 가장 긴 변에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8) 줄무늬의 폭은 긴 변의 약 1/7 또는 30m중에서 작은 쪽의 폭으로 되어 있는가?			
9) 줄무늬의 최상부와 최하단부는 어두운 색으로 되어있는가?			
10) 줄무늬 색상은 오렌지색/백색(적색/백색)으로 되어 있는가?			
11) 수직면상에 물체의 투영크기가 가로, 세로 모두 1.5m 미만인 경우 이 물체는 오렌지색 또는 적색의 단일색으로 되어 있는가?			
12) 응급차량은 눈에 잘 띄는 단일색상으로 하되 가급적 적색 또는 황색을 띠는 녹색인가?			
13) 업무차량은 황색인가?(단,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 등이 계류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장비별도 인정 가능)			
14) 이동물체는 눈에 잘 띄는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는가?			
나. 표시물			
1) 표시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는가?			
2) 표시물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가?			
3) 가공선, 케이블 등에 설치(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된 표시물은 원형으로서 직경은 60cm 이상인가?			
4) 표시물의 색채는 단일색인가?			
5) 표시물을 이중색으로 구성할 경우 백색과 백색 또는 오렌지색과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6) 2개 연속 표시물 또는 표시물과 지지탑사이의 간격은 적정한가? - 표시물 직경이 점점 증가하여 60cm가 되는 곳 : 30m 이하 - 표시물 직경이 80cm 증가 및 점차 증가가 되는 곳 : 35m 이하 - 표시물 직경이 130cm 이상인 곳 : 40m 이하			
다. 깃발			
1) 깃발은 물체의 주위,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가?			
2) 깃발의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3) 고정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의 크기는 한 변이 0.6m이상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가?			
4) 고정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의 색상은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백색, 적색과 백색으로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5) 이동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의 크기는 한 변이 0.9m 이상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가?			
6) 이동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깃발은 각 변이 0.3m 이상의 정방형 체크무늬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7) 정방형 체크무늬형태의 색상은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및 관리 (제98조)			
항공장애 표시등은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11절)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 (제99조)			
1.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폐쇄표지를 설치하였는가?			
2. 제1호의 경우에 그 지역의 표지와 등화는 제거하였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3. 야간에 운항할 경우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 폐쇄지역에 폐쇄표지와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였는가?			
4. 금지구역등은 폐쇄지역 입구에 3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였는가?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 (제100조)			
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만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표면에 포트홀이 있을 경우에 금지구역표시물을 설치하였는가?			
2. 제1호가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였는가?			
3. 금지지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4. 금지구역표시물은 기준에 적합한가?			
5. 금지구역등은 기준에 적합한가?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 설정 (제101조)			
1. 유도로, 대기구역 깃발과 계류장 및 그 외의 지역에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과 항공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표면과의 경계를 따라 줄무늬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되어 있는가?			
3. 표지의 기준은 유도로가장자리표지와 일치한가?			
시단이전 포장구역 (제102조)			
1. 시단 이전지역의 포장길이가 60m 이상이고 항공기가 운항하지 못하는 지역에 갈매기형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2. 표지의 색상은 황색인가?			
3. 갈매기형 표지의 폭은 0.9m 이상인가?			
4. 갈매기형 표지의 배치는 기준에 적합한가?			
전력시설 등 (제12절)			
전원공급 (제103조)			
1. 항행안전시설의 안전한 작동을 위하여 적절한 상용전원을 공급하고 있는가?			
2. 공항의 시각지원시설 및 무선항행보조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은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적·비시각적 안내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는가?			
3. 다음 시설에 대하여 예비전원이 공급되는가? - 지향신호등, 항공장애등(항공기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애등),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중단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중심선등, 정지선등, 주요 유도로등, 기상장비, 필수 보안등, 필수 장비 및 시설, 격리 주기장의 투광조명, 여객이 걸어 다니는 계류장지역 조명			
4. 상용전원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되는가?			
5. 예비전원은 서로 다른 변전소의 전기공급선로(전용선로 또는 공용선로),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Battery)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6. 예비전원 공급시간(Switch-over time)이 기준에 적합한가?			
전기시스템(제104조)			
1. 활주로가시범위(RVR) 550m 미만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전기시스템은 장비의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안내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는가?			
2. 이중선로를 구성하여 예비전원을 공급하는 공항은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을 별도의 모선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3. 표준유도경로를 형성하는 활주로는 활주로조명(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과 유도조명(유도로등, 유도조중심선등)이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되어 있는가?			
감시 (제105조)			
1. 항공등화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가?			
2. 항공기 통제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등화시설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탐지하고, 장애정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중계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였는가?			
3. RVR 550m 미만에서 항공등화 점등비율이 기준보다 미달될 경우 등화시설 감시시설이 자동적으로 감지되어 즉시 유지보수담당자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전달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을 구비하였는가?			
4. 제3호가 발생된 경우 관제탑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배치하였는가?			
5. 감시시스템에 활주로 정지위치에 있는 정지선등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2초 이내로 표시되는가?			
6. 감시시스템에 정지선등 이외의 등화시설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5초 이내로 표시되는가?			
울타리 (제106조)			
1. 이동지역에 동물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또는 적절한 방호벽을 설치하였는가?			
2. 공항의 제한지역에 울타리 또는 적절한 방호벽을 설치하였는가?			
3. 이동지역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요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벽을 설치하였는가?			
4. 공항에서 떨어진 장소에 항행안전시설 또는 민간항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에 허가 민간인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가?			
5. 유지보수와 보안순찰을 위하여 공항 울타리 안쪽에 도로가 있는가?			
보안등 (제107조)			
1. 보안상 필요한 부분에 보안등이 점등되는가 ?			
2. 불빛이 항공기 진입방향으로 비치지 않도록 차폐 되었는가?			
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 (제109조)			
1. 등기구 및 지지물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2.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가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지역, 유도로대의 관리구역 또는 유도로 중심선(Taxilane 제외)과 장애물간 최소이격거리 내에 설치(단, 항행목적상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하지 않았는가?			
3. 공중의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단, 항행목적상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제외)는 개방구역내에 설치하지 않았는가?			
4. 다음 지역에 설치하는 항행용 시설 및 장비는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였는가? 가. 활주로중심선에서 75m 이내의 착륙대 나. 활주로종단안전구역, 유도로대, 유도로 최소이격거리 이내 다. 공중에서 항공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장소나 개방구역			
5. CAT-1, II, III 정밀접근활주로에서 항행 목적용 이외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 활주로중심선 연장선으로부터 60m 폭 이내(분류번호 3, 4)			
6. CAT-1, II, III 정밀접근활주로에서 항행 목적용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지역에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였는가? 가. 분류번호 4이고 분류문자 F : 활주로중심선에서 77.5m이내의 착륙대 지역 나.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 활주로중심선에서 60m 폭 이내(분류번호 3, 4) 다.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또는 착륙복행표면을 침범하는 경우			

점검 항목	S	U	N/A or N/I
7. 항행용 장비 및 시설과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고 운항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되어 있는가?			
8. 착륙대의 비정지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용 시설 및 장비는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되어 있는가?(단, ILS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이 개발 될 때까지 미적용)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 (제13절)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 (제110조)			
1. 위험물 취급과 저장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위험물 취급지역 및 업체에 대하여 안전수칙 및 취급절차를 제공하였는가?			
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 (제111조)			
1. 공항 내에서 위험물 취급 및 저장에 관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 (제112조)			
1.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하는가?			
2.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기록을 12개월 이상 유지관리 하는가?			
3. 연료시설 및 장비 검사의 내용이 적절한가?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제113조)			
1. 위험물 취급업체의 감독자(1인 이상)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2. 위험물질을 공급 또는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감독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았는가?			
교육 및 훈련의 확인 (제114조)			
1. 업체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가?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제14절)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제115조)			
1.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지원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 (제120조)			
1.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정보 확보가 적절한가?			
2. 항공기의 공기 부양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였는가?			
구조 및 소방 (제15절)			
구조·소방등급 결정 (제122조, 별표 11)			
1. 구조·소방등급에 따른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소화제의 유형 (제123조)			
1.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가 준비되어 있는가?			
소화제의 양 (제124조)			
1. 보유한 소화제는 다음의 소화제 요건에 적합한가? 가. 물의 양			

점검 항목	S	U	N/A or N/I
나. 최소한도의 소화제의 양			
다. 차량에 별도로 탑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			
라. 차량에 적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			
마. 사고현장에서 구조소방차량에 대한 물 공급능력			
바. 성능등급 A와B가 함께 사용될 때 포말산출을 위한 물의 양			
분사율 (제125조)			
1. 포말용액의 분사율이 기준을 충족하는가?			
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 (제126조)			
1. 예비소화제(200%)의 양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2. 포말탱크의 상태가 적합한가?(출동 시 가득 채운상태, 단백포말 농축액의 경우 정기적으로 방출하여 정결유지)			
3. 연이은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보관중인 소화제의 농도의 이상유무를 측정(최소 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있는가?			
5. 소화제 보관장소는 적정(온도 및 습도)한가?			
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제127조, 별표 11)			
1. 최소 구조장비를 구조소방차량에 탑재하고 있는가?			
2. 최소 비상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가?			
비상대응요건 (제128조)			
1. 비상대응 시간요건에 충족하는가?			
가. 첫 출동 차량(3분)			
나. 첫 출동차량 외의 주력구조소방차량(최초 출동요청을 받은 후 4분 이내)			
2. 구조·소방차량의 예방정비체계를 구비하고 있는가?			
비상접근도로 (제129조)			
1.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비상접근도로를 구비하고 있는가?			
2. 당해 공항 사용차량의 최대중량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3. 활주로부터 90m 이내의 도로가 표면부식 방지 및 파편 이동 방지처리가 되어있는가?			
4. 장애물이 있는 경우 수직 이격거리가 확보되었는가?			
5. 도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가장자리 표시물이 설치되었는가?			
6. 정기적으로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가?			
통신 및 경보 시스템 (제131조)			
1. 소방대와 관제탑, 공항 내의 다른 소방대 및 구조소방차량을 연결하는 독립적인 통신체계가 구비되어 있는가?			
2. 소방대 및 관제탑 내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3. 구조소방 차량에 다음 교신이 가능한 양방향 무선통신기기를 장착하고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가. 비상 차량과의 교신			
나. 관제탑과의 교신			
다. 기타 관련 부서와의 교신			
차량 준비 요건 (제132조)			
1. 구조소방차량에 대하여 다음요건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가. 항공기 운항 중 구조·소방 차량 대기			
나. 장비 덮개 등 준비(장기간 영하이하의 기온)			
다. 차량 및 설비 사용 불가능 시 전파			
라. 동급능력의 대체 차량 및 관련 설비(48시간 이상 소방차량 기능 상실 시)			
마. 차량보유대수			
2. 구조·소방차량이 최소 성능요건에 충족하는가?			
구조 및 소방직원 (제134조)			
1. 교육훈련 및 경험 등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2. 항공기 운항 중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3. 구조·소방장비(급수관, 사다리 및 기타 장비)의 사용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4. 근무 편조 방식이 적합(최근 12개월 이내 업무경험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한가?			
구조 및 소방직원의 보호장비 (제1435조)			
보호의복 및 호흡장비가 지급되었는가?			
구조 및 소방직원의 교육훈련 (제136조)			
1. 구조·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이 적합한가?			
가. 공항관속			
나. 항공기 관속			
다. 구조·소방직원의 안전			
라. 공항에서의 비상통신시스템			
마. 소방호스 등 장비의 사용			
바. 소화제 유형 및 특성			
사. 항공기 비상탈출 지원			
아. 화재진압절차			
자. 소방구조장비의 사용과 적용			
차. 위험물			
카. 소방대원의 임무			
파. 보호복 및 보호장비의 사용			

점검 항목	S	U	N/A or N/I
2. 모든 구조·소방직원들은 실제 화재훈련에 참가하였는가?			
3. 항공기 운항 시 기초 응급치료 훈련을 받은 자 또는 응급구조사가 최소 1명 포함되어 있는가?			
4. 기초 응급치료 훈련내용 및 훈련시간(40시간)은 적합한가?			
5. 구조소방직원의 비상대응을 위한 사이렌 및 기타 경보장치를 구비하고 있는가?			
6. 구조·소방직원의 훈련프로그램에 인적요인, 팀웍, 인적능력 등을 포함하였는가?			
위험지역 (제137조)			
1. 위험지역은 적절하게 설정(항공기 전장, 동체길이와 폭)되었는가?			
구조 및 소방등급의 조정 (제138조)			
1. 구조 및 소방등급 조정 시 관련절차를 준수하였는가?			
활주로 안전 (제16절)			
활주로 안전팀 구성 (제140조)			
1. 활주로 안전팀에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활주로 침범방지 (제141조)			
1. 활주로 침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활주로 이탈방지 (제141조)			
1. 활주로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활주로 혼동 (제142조)			
1. 활주로 혼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제17절)			
자체 안전점검 (제145조)			
1. 자체 점검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자체 안전점검이 당해 공항의 입주업체를 포함하여 실시되는가?			
3. 자체 검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4. 자체 안전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가.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의 관리·운영			
나.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관리·운영			
다. 계류장 안전관리			
라. 시각지원시설의 관리·운영			
마. 이동지역의 작업안전			
바.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사. 야생동물위험 관리			
아. 장애물			

점검 항목	S	U	N/A or N/I
자. 위험물 관리			
차. 설비관리(동절기에 한함)			
카. 구조·소방			
파. 안전관리시스템			
5.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야생동물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별표 21)			
점검시기 (제146조)			
1. 자체 안전점검이 최소 월 1회 실시되는가? (공항운영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는 제외)			
2. 항공기 사고, 준사고 또는 공항운영분야 항공안전장애 발생 직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가?			
3. 활주로 덧씌우기 공사 및 대규모 공사 또는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였는가?			
점검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사항 (제147조)			
1. 자체 안전점검에 필요한 다음의 구비사항이 적절한가?			
가. 점검장비			
나. 정보교환절차			
다. 점검절차			
라. 보고체계			
점검결과의 확인 (제148조)			
1. 자체 안전점검결과의 보고 및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2. 자체 안전점검보고서에 점검책임자의 서명이 있는가?			
점검기록의 보관 (제149조)			
1. 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의 보관(12개월)이 적절한가?			
제설계획 (제18절)			
일반 (제150조)			
1. 이동지역 제설 우선순위 설정은 적절한가?			
2. 제설목적의 화학약품이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어 사용되고 있는가?			
3. 제설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정보회람(AIC) 발행 요청 및 관련기관 통보를 하였는가?			
4. 제설장비 세부사항을 AIP에 수록하고 있는가?			
공항 제설계획 수립 (제151조)			
1. 제설계획이 동절기(12월~익년 2월)를 기본으로 하여 당해 공항의 계절특성에 맞게 동절기 시작 최소 1개월 전에 수립되었는가?			
2. 제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는가?			
가.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			
나. 제설대책반 운영			
다. 제설관련 부서간의 협조체계 구축(통신망 등)			

점검 항목	S	U	N/A or N/I
라. 제설작업에 이용 가능한 장비			
마. 제설작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대응계획			
바. 설빙고시보(SNOWTAM) 발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항공정보업무기관과의 통 보 방법			
사. 활주로 마찰측정 장비의 사용(마찰계수표 등)			
아. 제설한 눈의 처리 장소 및 수거장소 지정			
자. 모든 관련 부서에 전파할 수 있는 경보체계			
차. 제설장비의 정비인력 운영계획 및 지원절차			
카. 장비의 배치 및 세부 제설 작업방법			
파. 제설작업을 위한 활주로 폐쇄시기 결정 등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절차			
하. 적절한 제설제 확보, 보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제설제 산출근거 포함)			
눈더미의 최소 허용높이 기준 (제152조)			
1. 활주로 인접지역의 눈더미 제거기준 설정은 적절한가?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제153조)			
1.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의 확인·준비 등이 동절기 도래 전에 실시되는가?			
2. 제설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은 실시되는가?			
공항비상계획 (제19절)			
일반 (제154조)			
1. 공항비상계획은 관계직원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2. 공항비상계획이 정기적으로 개정 및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항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155조)			
1. 공항비상계획에 다음의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가. 비상사태의 유형			
나. 비상계획에 포함된 기관 및 업체			
다. 비상유형별 각 기관 및 업체의 역할과 책임			
라.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망			
마. 공항 격자지도			
2. 공항비상계획에 다음의 정보가 적절하게 수록되어 있는가?			
가. 비상지원 협정기관			
나. 비상지원 협정기관의 지원능력			
다. 공항내의 수용시설 또는 인접지역의 수용시설			
라. 일반인 통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마. 기동불능항공기의 처리 책임 부서			

점검 항목	S	U	N/A or N/I
바. 그 밖의 공항비상계획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정보			
사. 수상 또는 늘지의 항공기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절차			
아. 공항 인근에 수상, 늘지 또는 위험지형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구조업무 수 행을 위한 대응계획의 점검 및 평가절차			
비상사태의 유형 (제156조)			
1. 비상사태의 유형(10종)별로 대비하고 있는가?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의 운영 (제157조)			
1.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 운영이 가능한가?			
2. 지휘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3. 비상운영센터의 위치가 적절한가?			
4. 이동지휘소가 비상발생장소까지 신속히 이동 할 수 있는가?			
비상통신시스템 (제158조)			
1. 모든 비상대응관련기관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한가?			
2. 외부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적정 수의 무선통신기기를 확보하고 있는가?			
3. 비상계획과 관련된 모든 통신시스템의 매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가?			
공항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 (제159조)			
1. 공항 비상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항공청, 항공사, 경찰, 구조소방기관과 협 의 되었는가?			
2. 비상계획 관련자의 숙련도가 적절한가?			
3. 공항비상계획 훈련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가?			
가. 종합훈련(2년 1회 이상)			
나. 부분훈련(2년 1회 이상)			
다. 도상훈련(6개월에 1회 이상)			
라. 매년 12월말까지 공항의 인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였는가?			
마. 종합훈련 실시계획을 훈련실시 최소 14일전 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 항공청장에게 알렸는가?			
바. 종합훈련을 공항안전검사관의 배석 하에 실시하였는가?			
사. 종합훈련 및 부분훈련을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 항공청장에게 보고하였는가?			
비상연락망 관리 (제160조)			
1. 비상연락망에 작성일자가 표기되어 있는가?			
2. 비상연락망 전화번호가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전화번호로 제한되었는가?			
3. 점검(월1회) 및 기록유지가 적절한가?			
4. 비상연락망 변경 시 수정사항을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는가?			
공항격자지도 (제161조)			

점검 항목	S	U	N/A or N/I
1. 두 가지 형태(공항내부·외부)의 공항 격자지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2. 공항격자지도 수록내용이 적절한가?			
격리주기위치의 운영 (제162조)			
1. 격리주기위치 또는 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는가?			
2. 격리주기위치 지정(안전거리, 위험지역 회피)은 적절한가?			
3. 격리주기위치가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되었는가?			
공항안전관리시스템 (제5장)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제164조)			
1. 공항 안전관리체계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가. 안전정책 및 목표 나. 안전위험관리 다. 안전보증활동 라. 안전증진활동 마. 경영진(운영자)의 참여 바. 문서화			
공항안전관리시스템 수립 시 준수사항 (제165조)			
1. 조직 구성 및 책임에 대하여 적합하게 부여하였는가?			
2.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협의는 적합하였는가?			
3. 공항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의 형태로 수립·운영하였는가?			
4.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실시하였는가?			
5.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를 적합하게 평가하였는가?			
6. 교육훈련, 커뮤니케이션, 협력적인 안전문화의 진흥에 따라 안전증진활동을 하였는가?			
기타사항 (필요시 추가)			

[별표 4]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제21조 관련)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

점검 항목	S	U	N/A or N/I
공항명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 실시		
공항자료(AOS 제2장)			
필수공항정보양식의 작성 및 관리 (제13조, 별지 1)			
1. 필수공항정보가 별지1의 서식에 의거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2. 필수공항정보(변경사항 포함)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는가?			
공항 상태보고 (제2절)			
공항상태정보의 수집 및 통보 (제16조)			
1. 이동지역의 상태와 관련시설의 운용상태에 관한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는가?			
2. 공항상태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고 있는가?			
공항운영 (AOS 제4장)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을 점검 (제2절)			
점검주기 (제29조)			
1.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비포장지역)를 준수하고 있는가?			
점검방법 (제30조)			
1. 이동지역 점검표를 적절하게 작성·활용하고 있는가?			
2. 점검 방법이 적절한가?			
점검절차 및 점검 (제31조 ~ 제34조)			
1. 잔디지역에 대한 제초작업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2.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 잘려진 풀이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3. 불법적인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4. 불가피하게 허용된 지장물에 대하여 표지 및 장애등이 설치되었는가?			
5. 등화시설, 표지 및 표지판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보고 및 조치 (제35조)			
1. 활주로 점검도중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등기구 파손 및 항공기 부품 발견 등) 발견 시 즉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되고 있는가?			
2. 활주로상의 눈, 진창눈 또는 얼음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히 관리 되는가?			
활주로 상태보고 (제36조)			
1. 활주로 표면상태는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에 따라 활주로 상태부호(RWYCC)와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 및 보고 하고 있는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제37조)			
1. 각 활주로 마찰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이동지역 유지보수 (제38절)			
일반 (제38조)			
1. 포장지역의 표지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포장구역의 관리 (제41조)			
1. 포장면에 포트홀 기준(깊이 7.5cm, 내측면 기울기 45°, 직경 12.5cm)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가?			
2. 포장면이 항공기의 방향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이 변화한 곳은 없는가?			
3. 포장면이 함몰되거나 배수상태 불량으로 물이 고여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항공기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곳은 없는가?			
4. 이륙·착륙가용거리로 공사된 활주로 구간에 물이 고이는 웅덩이(깊이 13mm)는 없는가?			
5. 활주로 또는 활주로 일부부분에서 배수특성이 좋지 않을 경우 마찰측정 실시 및 보수조치 등을 하였는가?			
6. 유도로 갓길에 돌맹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제거되어 있는가?			
7. 항공기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포장면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제42조)			
1. 잠재적으로 위험한 바퀴자국, 언덕, 지표함몰 또는 지면변화가 없는가?			
2. 물 고이는 지역이 없는가?			
3. 불법 장애물이 없는가?			
활주로 포장 덧씌우기 (제43조)			
1. 활주로포장 덧씌우기 작업 시 안전조치 및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였는가?			
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제45조)			
1. 포장(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지역)면에 마찰력에 해로운 오염물질(눈, 얼음, 물웅덩이, 진흙, 모래, 기름, 고무 등)이 없는가?			
2. 포장(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과 그 주변지역)표면에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 등에 해로운 파편(돌, 종이, 모래, 금속, 포장재 조각 등)이 없는가?			
활주로의 고무 제거 (제46조)			
1. 활주로 고무제거 최소주기에 따라 정기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제47조)			
1.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 (제53절)			
일반 (제57조)			
1. 다음의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조치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가. 지상이동차량 통제업무			
나.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점검 항목	S	U	N/A or N/I
다. 주기 중인 항공기의 안전관리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제61조)			
1. 제트분사로부터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제트분사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 환기조치			
나. 차량 및 장비의 방지방법			
다. 파편 등의 제거			
라.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			
마. 기타 공항 특성에 필요한 사항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제61조)			
1. 계류장에서 강풍으로부터 항공기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검토 및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되었는가?			
2. 결박시설의 설치는 적절한가?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제62조)			
1. 계류장에서 항공기 급유 시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2. 항공기와 급유차량간 봉인 또는 봉인과 점지를 병행하고 있는가?			
3. 항공기 지상조업 중에는 연료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계류장의 청결유지 (제63조)			
1. 계류장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2.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 계류장 청결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제64조)			
1. 계류장 내 지상근무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고 있는가?			
2. 차량 통행로 및 주차구역을 준수하고 있는가?			
3. 차량 제한속도 및 정지위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4. 차량, 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및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5. 기타 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은 없는가?			
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의 발생보고 (제65조)			
1. 계류장 내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되었는가?			
시각지원시설 (제9절)			
항행안전시설 보호 (제83조)			
1. 전파 또는 시각적 장애 시설이 없는가?			
2. 파손, 도난, 망실되지 않도록 보호되는가?			
표지의 설치 (제86조,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도로정지위치표지			

점검 항목	S	U	N/A or N/I
가. 차량 운전자들이 활주로 무단침입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정지위치표지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			
차량도로표지			
가. 표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나. 차량도로위에 설치하는 정지위치 표지의 폭은 0.6m로 설치되어 있는가?			
다. 지퍼모양 표지의 폭은 30cm, 길이는 1.3m로 설치되어 있는가?			
접지봉 표지			
가. 계류장에 접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직경 0.45m의 원형으로 접지봉 표지를 설치하였는가?			
나. 표지 색상은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밝은 색 포장의 경우, 5cm 이상의 흑색 윤곽선 설치)			
다. 접지봉 표지에 저항값이 표시되어 있는가?			
맨홀표지			
가. 계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유구, 맨홀 및 결박시설 등에 맨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나. 선의 색상은 적색, 선의 폭은 10c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제87조)			
1. 비행장등대는 운항시간대에 작동하고 있는가?			
2. 시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전력시설 근처에서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일이 없는가?			
장애물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10절)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 물체 (제96조, 별표 8)			
다음의 물체에 대하여 표지 및 조명을 설치하였는가?			
1. 이동지역에서 사용하는 차량과 기타 이동물체(단, 계류장에서만 사용되는 항공기서비스차량과 장비,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계류장 가장자리선 밖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항공기 주기장과 건물 및 울타리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는 제외)			
2. 이동지역내의 노출형 항공등화			
3.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내에 있는 장애물			
4. 진입표면중 내측 가장자리로부터 3,000m 이내에 진입표면 위로 돌출된 고정 장애물(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5. 장애물외에 진입표면에 인접한 고정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6. 수평표면 위의 고정장애물(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7. 장애물 보호표면 위로 돌출된 고정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8. 고가선, 가공케이블(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9.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및 관리 (제98조)			
1. 항공장애 표시등은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지원시설 (제11절)			

점검 항목	S	U	N/A or N/I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 (제100조)			
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분이 공사 중이거나 포장표면에 포트홀이 있을 경우에 금지구역표시물을 설치하였는가?			
2. 제1호가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였는가?			
3. 금지구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 (제13절)			
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 (제111조)			
1.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는가?			
2. 위험물 보관 장소의 소방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가?			
3. 가연성 물질보관 장소에 "FLAMMABLE"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가?			
4. 무기류 및 폭발성위험물 수송시 공항소방대의 호의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5. 항공기 급유시 접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 계류장내 급유전(PIT)이 적절하게 관리되는가?			
7. 계류장 표면에 누유는 없는가?			
구조 및 소방 (제15절)			
2. 구조·소방등급에 따른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소화제의 유형 (제123조)			
1.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가 준비되어 있는가?			
2. 기준에 적합한 주소화제가 확보되었는가?			
3. 기준에 적합한 보조소화제가 확보되었는가?			
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제127조, 별표 11)			
1. 최소 구조장비를 구조소방차량에 탑재하고 있는가?			
2. 최소 비상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가?			
3. 구급의료약품의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가. 첫 출동 차량(3분)			
나. 첫 출동차량 외의 주력구조소방차량(최초 출동요청을 받은 후 4분 이내)			
2. 구조·소방차량의 예방정비체계를 구비하고 있는가?			
차량 준비 요건 (제132조)			
1. 소방·구급차량의 대기 상태가 적절한가?			
2. 소방·구급차량에 격자지도(공항 내외)는 비치되어 있는가?			
3. 구조·소방차량에 탑재되어야 할 최소 구조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차량 표지 및 조명 (제133조)			
1. 구조·소방용 차량의 표지 및 조명이 적합한가?			

점검 항목	S	U	N/A or N/I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제17절)			
자체 안전점검 (제145조)			
1. 자체 검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점검결과의 확인 (제148조)			
1. 자체 안전점검결과의 보고 및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제설계획 (제18절)			
일반 (제150조)			
1. 공항에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활주로 마찰측정장비 작동상태를 확인 하는가?			
2. 제설작업은 적기에 수행되고 있는가?			
3. 항공기 제빙·방빙시 안전조치가 수행되고 있는가?			
4. 제빙·방빙 작업 후 이동지역 정리·정돈상태는 양호한가?			
5. 제빙·방빙 절차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준수하고 있는가?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제153조)			
1.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의 확인·준비 등이 동절기 도래 전에 실시되는가?			
2. 제설장비 정비 및 수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특별 안전관리			
황사 대비			
1. 황사로 인한 FOD(모래적재 등) 발생 지역은 없는가?			
2. 황사발령대비 항공기 및 기타 이동 중인 장비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3. 황사발령 시 특별순찰은 실시되고 있는가?			
하절기 대비			
1. 폭우로 인한 공항시설물의 침수 및 붕괴우려는 없는가?			
2. 폭우종료 후 활주로 마찰주행시험은 실시하였는가?			
3. 폭염 시 장애가 우려되는 시설물(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아스팔트 침하 등)은 없는가?			
4. 악천후(태풍, 호우 등)시 차량 및 장비 고정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타사항 (필요시 추가)			

[별표 5] 공항운영검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절차(제18조 관련)

공항운영검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심의 신청 ⇨	검사기간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 준비 ▼	검사종료 후
② 심의안 마련 ⇨	공항운영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 공항운영자 위규사항 - 관련규정 및 현장사진 첨부 - 공항운영자 의견 첨부 ▼	신청 후, 7일 이내
③ 심의 상정 ⇨	안건 작성 및 회의 개최 계획 알림 (현지시정, 통보 및 시정명령) ▼	신청 후, 14일 이내
④ 회의 개최 ⇨	안건보고 및 설명 ▼	
⑤ 심의 결과 ⇨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내부방침)	신청후, 20일 이내

[별표 6]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34조 관련)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공항시설법 제41조 제1항제1호	증명취소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항시설법 제41조 제1항제3호	
가. 다음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이동지역의 유지보수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2) 시각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3) 이동지역 작업 통제 또는 차량·장비 통제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4) 장애물 통제기준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5)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6)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운영정지(15일)
나. 그 밖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운영정지(7일)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공항시설법 제41조 제1항제4호	운영정지(15일)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항시설법 제41조 제1항제5호	
가.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증명취소 또는 운영정지(180일)
나.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50일)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20일)
라.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90일)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마.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60일)
바.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30일)
사.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운영정지(30일)
아.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20일)
자.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5일)
차.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0일)
카.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5일)

※ 비교

- 위 표의 제4호에 따라 공항운영정지 처분을 할 때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공항운영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별표 7] 공항 자체안전점검 점검표(제40조, 제43조, 제45조 관련)

공항 자체안전점검 정기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주간 검사자/시간 :			야간 검사자/시간 :		비 고		조치사항 (날짜 및 약명)	
							√ 만족 × 불만족			
시 설	상 태	주간	야간	비 고		조치사항 (날짜 및 약명)				
포장지역	7.5cm를 초과한 포장면 가장자리		-							
	직경 12.5cm 깊이 7.5cm 구멍		-							
	갈라진 틈/깨짐/돌출부		-							
	이물질(자갈 및 파편 등)		-							
	고무 퇴적물		-							
	물웅덩이/가장자리 고인 물		-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바퀴자국/돌출부/침식		-							
	배수로/공사		-							
	지원 장비/항공기		-							
	부러지기 쉬운 기초지지대		-							
	불법적인 장애물		-							
표지	명확한 식별/표준									
	활주로 표지									
	유도로 표지									
	정지위치표지									
	유리알 사용		-							
표지판	표준/표지판 계획 충족									
	차폐/정상작동 여부									
	손상/역반사체									
등화	차폐/더러움/정상작동 여부									
	손상/유실									
	불빛 각도/조정		-							
	활주로 등화		-							
	유도로 등화		-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등대									
	풍향 지시기									
	활주로말단식별등/진입각지시기시스템									
장애물	장애물등 작동여부		-							
	크레인/나무		-							

시 설	상 태	주간	야간	비 고		조치사항 (날짜 및 약명)	
항공기 급유	담장/출입문/표지판						
	급유 표지판/라벨 부착						
	소화 장치						
	접지선						
	연료 누유/식물						
제설작업	표면 상태						
	눈 더미 제거						
	등화 및 표지판 차폐						
	항행안전시설						
	소방차량 비상접근로						
이동지역 작업	바리케이드/조명						
	장비 주차						
	비축자재						
	혼란을 초래하는 표지판/표지						
구조 및 소방업무	장비/소방대원 가용성						
	통신/경보시스템						
	비상대응 출동로						
대중 보호	울타리/출입문/표지판						
	제트분사 문제						
야생동물 위험관리	야생동물 출현 위치						
	죽은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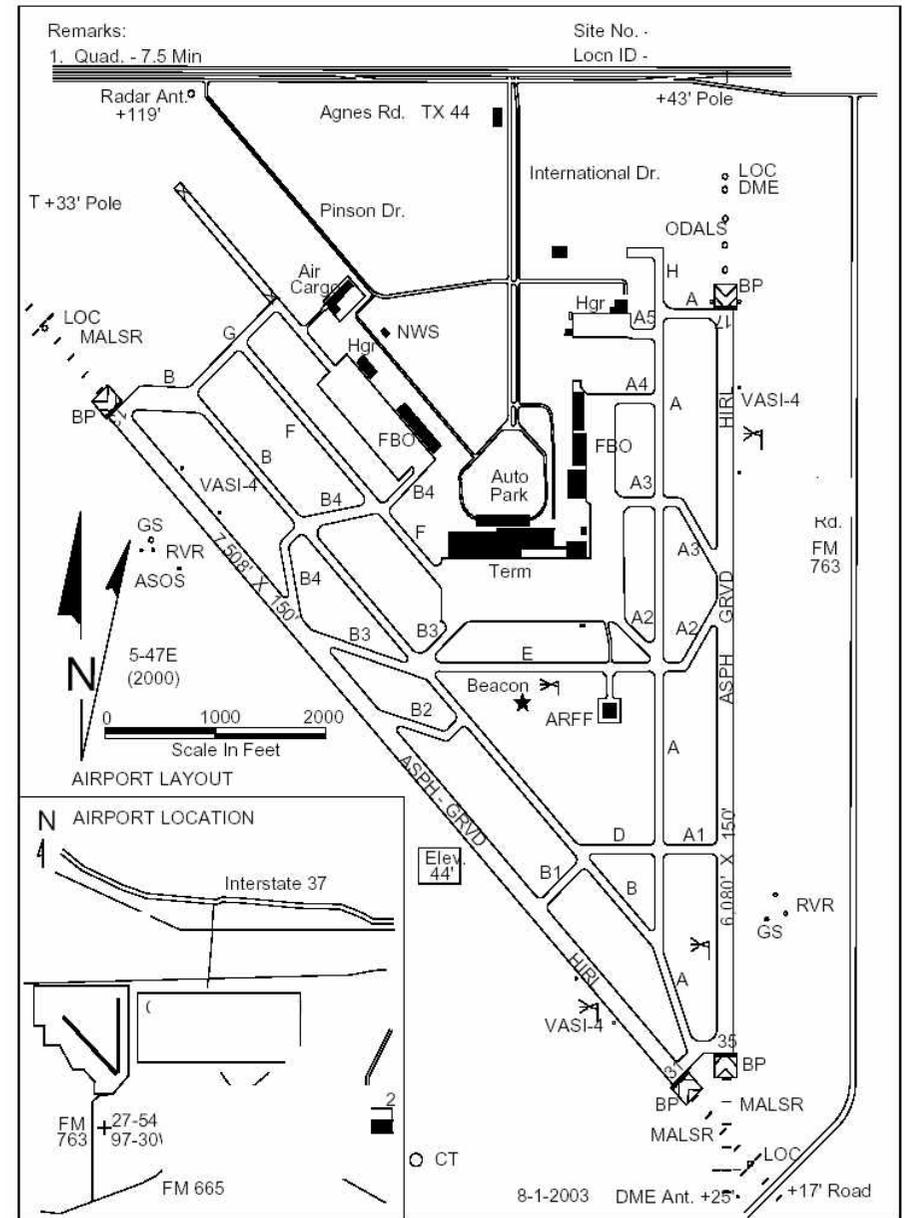
의견/비고 :

[별표 8] 지속적인 감시점검 점검표(제59조 관련)

지속적인 감시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시간 :		검사자 :	V 만족 x 불만족
시 설	상 태	V	비고 / 조치사항
이동지역 차량	규칙 및 절차 준수		
항공기 급유	화재 및 폭발 위험요소		
	표지 및 금연		
제설작업	표면 상태		
이동지역 작업	안전계획		
	활주로 침범		
	활주로 및 유도로 사용		
	이물질(FOD)		
대중 보호	비인가자		
	비인가 차량		
	출입문 상태		
야생동물 위험관리	조류 및 야생동물		
기타	이동지역 보행자		
	승객 승하기		
	이동지역 파편		
비고 추가			

뒷면 : 공항 평면도



※ 비교

1. 적합한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항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는 공항의 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다루어야 한다.
2. 점검표는 공항과 공항운영에 유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일 점검 중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항 평면도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시된 점검표는 페이지 세로줄을 따라 시설 및 장비목록과 점검하여야 할 여러 상태로 이루어진다.
5. 공란은 각 시설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할 상태를 나타낸다. 이란에 체크 표시가 되면 해당 시설과 장비상태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 표시가 있으면 시설 및 장비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발견할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해당하는 각 칸에 “×”를 기입한다.
 - 나. 비교란에 주석을 기입한다.
 - 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발견된 위치는 공항 평면도에 표시한다.
 - 라. 항공고시보(NOTAM)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다.

[별표 9] 주기적인 상태점검 점검표(제67조 관련)

주기적인 상태점검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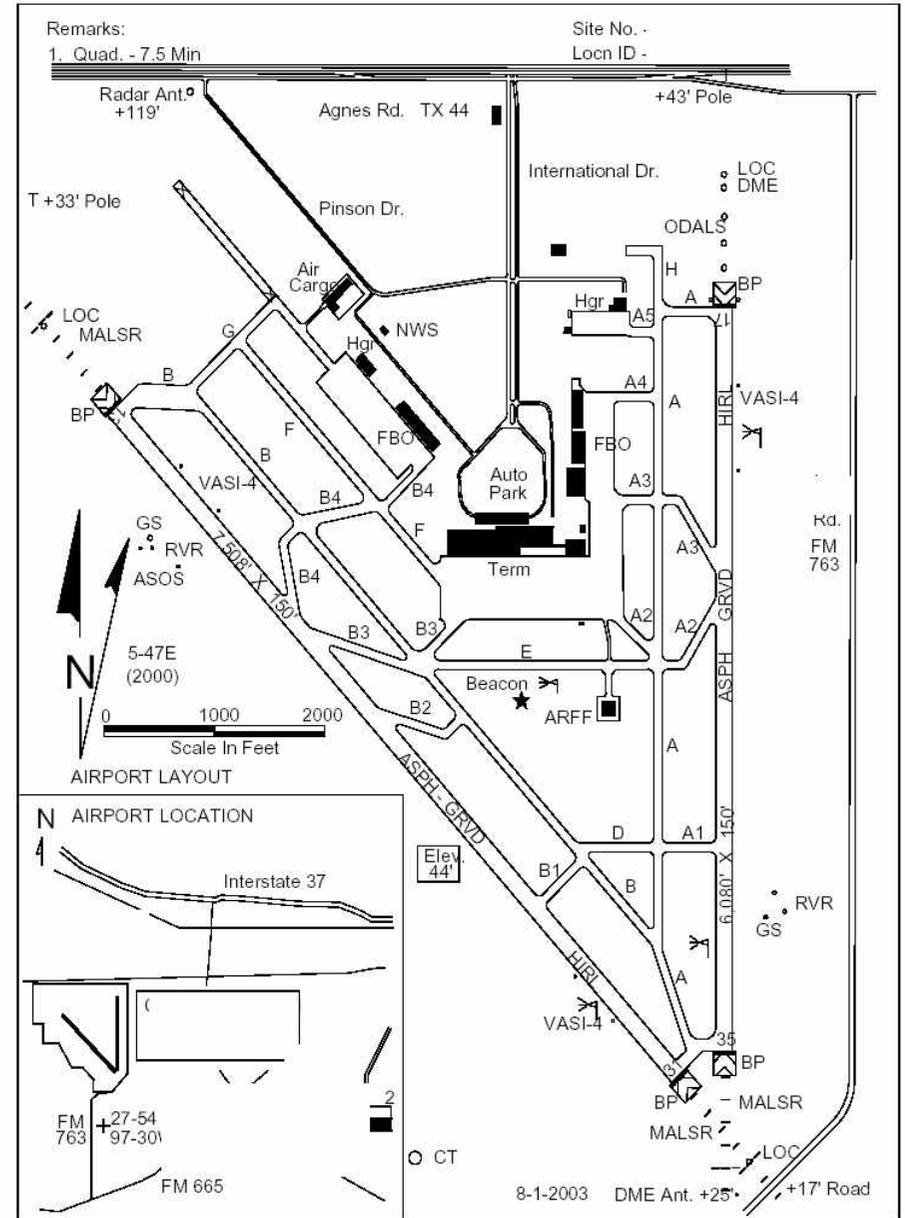
날짜 및 요일 : 시간 :		검사자 :	V 만족 X 불만족
시 설	상 태	V	비고 / 조치사항
포장지역	고무 퇴적물		
	연마 상태		
표지 및 표지판	식별 용이성		
	기준		
항공기 급유	물리적 시설		
	이동 급유차량		
	소화기		
	급유 표지 및 라벨		
	접지선		
항행안전시설	활주로말단식별등 및 진입각지시등		
등화	발전기 점검		
	회로 저항 테스트		
	불빛 각도 및 조정상태		
장애물	나무 및 구조물 조사		
	공중 케이블		
항공기 구조 및 소방	비상대응시간		
	실제 화재훈련		
	교육		
비고 추가 :			

[별표 10] 특별점검 점검표(제76조 관련)

뒷면 : 공항 평면도

특별점검 점검표

날짜 및 요일 : 시간 :		검사자 :		V 만족 X 불만족
시 설	상 태	V	비고 / 조치사항	
포장지역	물웅덩이/가장자리 고인 물			
표지 및 표지판	비온 뒤 식별 용이성			
	공사 후 기준			
착륙대 및 유도로대	배수로			
	활주로 사용 재개			
	유도로 사용 재개			
제설작업	표면 상태			
	눈더미 제거			
	등화 및 표지판 차폐			
	이물질(FOD)			
	제동상태 및 마찰계수 보고			
이동지역 작업	바리케이드			
	공사 조명			
	장비 주차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SMGCS 등화			
비고 추가				



※ 비고

1. 적합한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항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는 공항의 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다루어야 한다.
2. 점검표는 공항과 공항운영에 유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일 점검 중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항 평면도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시된 점검표는 페이지 세로줄을 따라 시설 및 장비목록과 점검하여야 할 여러 상태로 이루어진다.
5. 공란은 각 시설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할 상태를 나타낸다. 이란에 체크 표시가 되면 해당 시설과 장비상태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 표시가 있으면 시설 및 장비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발견할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해당하는 각 칸에 “×”를 기입한다.
 나. 비고란에 주석을 기입한다.
 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발견된 위치는 공항 평면도에 표시한다.
 라. 항공고시보(NOTAM)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다.

[별표 11] 분기별 점검표(급유차량)(제53조, 제71조 관련)

분기별 점검표(급유차량)

검사자 :	업체명 :	일자 :							
S - 만족 U - 불만족 R - 아래 비고	Jet A 급유차량		100LL 급유차량			기타 급유차량			
	S	U	R	S	U	R	S	U	R
금연표지판									
가연성 표지판/위험물질 플래카드(양측)									
본딩 케이블 및 클립 기능									
데드맨 통제장비의 노즐									
2개의 소화기									
비상차단장치 표지 및 작동여부									
연료 누유(호스 및 밸브 등)									
차량 배기가스 시스템									
금연 증거(차량의 재떨이)									
차량주차(건물 15m, 차량 3m)									
폭발성 증거									
인화성 물질(의복, 신발, 성냥)									
								이동급유차량 보유대수	
적절한 급유절차 관측							Jet A : 100LL : 기 타 :		
급유원의 교육요건 충족여부									
급유원의 교육기록 관리상태									
비고 :									

※ 비교

1. 적합한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항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는 공항의 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다루어야 한다.
2. 점검표는 공항과 공항운영에 유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일 점검 중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항 평면도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시된 점검표는 페이지 세로줄을 따라 시설 및 장비목록과 점검하여야 할 여러 상태로 이루어진다.
5. 공란은 각 시설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할 상태를 나타낸다. 이 란에 체크 표시가 되면 해당 시설과 장비상태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 표시가 있으면 시설 및 장비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발견할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해당하는 각 칸에 “×”를 기입한다.
 나. 비교란에 주석을 기입한다.
 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발견된 위치는 공항 평면도에 표시한다.
 라. 항공고시보(NOTAM)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다.

[별표 12] 분기별 점검표(항공유 저장시설)(제53조 관련)

분기별 점검표(항공유 저장시설)

검사자 :		업체명 :			일자 :					
S - 만족 U - 불만족 R - 아래 비교	Jet A 지역			100LL 지역			기 타			
	S	U	R	S	U	R	S	U	R	
울타리/잠금장치/표지판										
차량으로부터의 배관 보호										
금연표지판 부착										
저장소의 데드맨 통제										
2개의 소화기										
선명하게 표시된 비상차단장치(위치)										
연료 누유										
분당 접속선/클립										
배관 및 펌프										
화재원(식물 및 물질)										
금연 증거										
호스상태										
폭발성 증거										
비교 :										

※ 비고

1. 적합한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항 자체 안전점검 점검표는 공항의 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다루어야 한다.
2. 점검표는 공항과 공항운영에 유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일 점검 중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공항 평면도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시된 점검표는 페이지 세로줄을 따라 시설 및 장비목록과 점검하여야 할 여러 상태로 이루어진다.
5. 공란은 각 시설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할 상태를 나타낸다. 이 란에 체크 표시가 되면 해당 시설과 장비상태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 표시가 있으면 시설 및 장비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발견할 때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해당하는 각 칸에 “×”를 기입한다.
 - 나. 비고란에 주석을 기입한다.
 - 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발견된 위치는 공항 평면도에 표시한다.
 - 라. 항공고시보(NOTAM)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다.

[별지 1] 항공안전감독관증(제7조 관련)

(앞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항공안전감독관증 (CIVIL AVIATION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사 진 3cm × 4cm	성명(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속(Employed by):	
	직무(Occupation):	
	증명서 번호(Certi. No.):	
	유효기간(Date of Expire):	년(y) 월(m) 일(d)
서명(Signature of Holder):		

(뒤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p>이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에 의거 사무소, 항공시설, 비행장, 항공기 등에 제한없이 출입하여 항공기, 항공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또한 공항시설법 제40조에 따라 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종사자의 업무를 일시정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항공안전감독관임을 증명함</p> <p>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delegated to exercise the power under the Article 132 of Aviation safety Act to free uninterrupted access to offices, aeronautical facilities, aerodromes, aircrafts, etc., to perform inspections of aircraft, aeronautical facilities, documents, records, data, etc. and to ask questions to concerned personnel, and is also delegated to exercise the power under the Article 40 of Airport facilities Act to correct identified deficiencies immediately and to prohibit any person from exercising the privileges of any aviation licence, certificate or document for just cause.</p>	
발행일자(Issued date):	국토교통부장관 (인)
발행장소(Issued at):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80mm×50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2] 자료제출 요구서(제10조 관련)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요청번호 :
	발행일자 :
	수신(참조):
1. 제목 :	
2. 내용 :	
<p>「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공항업무에 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p>	
<p>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확인서(제16조 관련)

확 인 서	
1. 건명 :	
2. 내용 :	
<p>위 사실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확인자 소속 :</p> <p>직위 :</p> <p>성명 :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검사결과 보고서(제17조 관련)

검사결과 보고서

공항명		검사일자				
검사팀장 (검사관)	(서명 또는 인)	공항운영 검사팀원	(서명 또는 인) * 검사팀원 전원(해당되는 경우)			
검사(감독) 결과						
순번	검사(감독) 분야	행정 처분		조치할 사항	검사자	근거 (증빙자료)
		제목	내용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 시정결과 확인서(제19조 관련)

명령서(문서)번호	시정결과 확인서	
공 항 명		
확 인 사 항	시 정 명 령	
	조 치 결 과	
	확 인 결 과	
점검일시 및 장소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점 검 장 소	
「공항시설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공항운영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8] 교육훈련 실적기록부(제6조 관련)

교육훈련 실적기록부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일		현보직일	직무구분	
교육훈련과정 명칭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장소)	교육훈련기간	비고
기본 교육				
기타 교육 훈련				
* 비고란에는 교육훈련당시 근무처, 직급 등을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9] 공항운영증명 기록부(제37조 관련)

공항운영증명서 기록부						
공항명	공항운영자	증명서번호	신청일자	교부일	참여검사관	면제 또는 예외사항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0] 공항운영증명 정기(수시)검사 기록부(제37조 관련)

공항별 공항운영증명 정기(수시)검사 기록부

(공항명)

(공항증명번호)

공항운영증명 정기검사 처리내역					
검사기간	참여검사관	주요지적내용	개선조치		특기사항
			요구일자	완료일자	

공항운영증명 수시검사 처리내역					
검사기간	참여검사관	주요지적내용	개선조치		특기사항
			요구일자	완료일자	

민군합동안전점검 처리내역					
검사기간	참여검사관	주요지적내용	개선조치		특기사항
			요구일자	완료일자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1] 공항운영증명 변경(신고) 처리 기록부(제37조 관련)

공항별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 처리 기록부

(공항명)

(공항증명번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내역					
변경 차수 번호	변경 신청일	주요 변경내용	변경 인가		특기사항
			문서번호	인가일자	
최초 원본					

공항운영규정 신고처리 내역					
변경 차수 번호	변경 신청일	주요 변경내용	신고 수리		특기사항
			문서번호	수리 일자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